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이학석사 학위논문

행정기본법 제20조 자동적 처분을 소송절차에 응용한 알고리즘 구현 사례에 관한 연구

2023년 2월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수리정보과학과 정보보호 및 디지털포렌식학 전공

최 봉 희

행정기본법 제20조 자동적 처분을 소송절차에 응용한 알고리즘 구현 사례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이 광 근

이 논문을 이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12월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수리정보과학과 정보보호 및 디지털포렌식학 전공

최 봉 희

최봉희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3년 1월

위 원 장 이병영 (인)

부 위 원 장 박상철 (인)

위 원 이광근 (인)

국 문 초 록

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의 자동화 기반을 전제로, 행정청에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한 처분을 허용한 행정기본법 제20조의 자동적 처분을 민사소송 절차에 응용하여 자동화될 수 있는 소송절차와 자동화된 소송절차를 구현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송달, 기일지정, 중복된 주장의 정리 등에 대한 민사소송 절차의 자동화는 소장 접수 단계에서 소장 접수 순서에 따라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를 반영할 수 있고, 보다 신속하게 기일을 지정할 수 있으며, 보다 효율적으로 주장의 중복과 판단누락을 방지할 수 있어, 민사소송의 이상인 신속, 경제, 공정 및 적정을 달성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

전자소송 제도는 당사자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분쟁 해결의 효율성을 높이며 전자소송 관련 산업의 발전 등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므로, 민사소송 절차의 자동화에 대하여 적극적인 법적·기술적 분석을 통하여 민사소송 절차의 자동화 제도가 법률적으로 도입되기를 바란다.

주요어: 민사소송의 이상, 소송절차 자동화, 자동적 처분, 알고리즘, 구현, 응용

학 번: 2021-22041

<본문 차례>

Ⅰ. 서론 1 ····· 1
1. 행정기본법 제20조 자동적 처분의 제정 의의 ····· 1
2. 컴퓨터과학과 행정기본법 제20조 자동적 처분 ····· 3
3. 전자소송 제도와 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 구축사업 ····· 5
4. 전자소송 제도와 행정기본법 제20조 자동적 처분 ····· 10
5. 연구의 목적 및 범위 ····· 12
Ⅱ. 행정기본법 제20조 자동적 처분 요건 ····· 13
1. 행정기본법 제20조 자동적 처분의 개념 ····· 13
가. 자동적 처분의 주체 - 행정청 ····· 13
나. 자동적 처분의 방식 -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 ····· 14
다. 자동적 처분 허용 근거 법률 제정 필요 ····· 16
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의 대상 ····· 17
2. 행정기본법 제20조 자동적 처분의 구조화 정도 ····· 19
3. 행정기본법 제20조 자동적 처분에 대한 통제 ····· 20
가. 안전성, 신뢰성, 공정성 확보 ····· 20
나. 설명요구권 보장 ····· 24
다. 정보공개 ····· 26
라. 사법통제 ····· 27
Ⅲ. 민사소송 기본절차와 법원 사건관리방식 ····· 28
1. 민사소송의 기본절차 ····· 28
가. 송달 ····· 28
1) 송달의 의의 ····· 28
2) 송달기관 ····· 28
3) 송달대상 ····· 29
4) 전자소송 송달방식 ····· 29
5) 송달사유통지 ····· 31

나. 소의 제기 ····· 32
1) 소장 기재 사항 및 첨부 서류 ····· 33
2) 송달료 예납 및 인지 납부 ····· 34
다. 관할 ····· 35
라. 전산입력 및 기록의 편성 ····· 36
마. 사건번호 및 사건명 부여 ····· 39
바. 사건배당 ····· 39
사. 소장심사 ····· 40
아. 소장부본의 송달 ····· 40
자. 기일의 지정 ····· 41
차. 무변론판결 선고기일의 통지와 취소 ····· 44
카. 당사자의 기일지정 및 변경 신청 ····· 45
타. 당사자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 48
2. 법원 사건관리방식 ····· 49
가. 표준 사건관리방식 ····· 49
나. 사건관리 개요도 및 진행단계별 사건현황표 ····· 53
Ⅳ. 민사소송 절차의 자동화 기반(인프라) ····· 55
1. 전자소송 자동화 단계 ····· 55
가. 소송당사자 사용 전자소송홈페이지 구성 ····· 55
1)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개요도 ····· 55
2) 전자소송사건등록과 사건열람 등의 관계 ····· 55
3) 소장 제출 ····· 55
가) 소장 제출 완료 기본 과정 ····· 55
나) 전자소송동의 ····· 55
다) 문서작성 ····· 56
(1) 사건기본정보 ····· 56
(2) 제출법원 ····· 57

(3) 당사자정보 ····· 58
(4)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입력 ····· 58
(5) 입증/첨부서류 ····· 59
라) 전자서명 및 작성완료 ····· 60
마) 소송비용납부 ····· 61
바) 문서제출 ····· 62
4) 답변서 제출 ····· 62
5) 주소보정서 제출 ····· 63
6) 알림서비스 ····· 64
7) 열람 ····· 65
나. 접수사무관등의 소장 전자 접수 및 소장심사 ····· 66
다. 참여사무관등의 소장심사 등 업무 ····· 66
1) 소장심사 ····· 66
2) 전자적 송달 ····· 67
3) 전자송달부 ····· 68
4) e-Post 연계 송달 ····· 68
5) 기일 입력 ····· 69
6) 무변론판결 선고기일 ····· 69
7) 기일 통지서 송달 ····· 69
8) 진행단계별 사건 관리 ····· 69
라. 전자소송 기록뷰어 ····· 70
마. 전자기록 목록 창 - 찾기(문자열 검색) ····· 70
바. 판결문작성관리시스템 ····· 71
2. 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 구축사업 ····· 72
가. 법무부 2022. 3. 8. 입법 예고 ····· 72
나. 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 72
1) 사업 추진 배경 및 목표 ····· 73

2) 민사소송 절차 자동화 관련 개선 예정 사항·····74
Ⅴ. 민사소송 절차 중 자동화 가능 절차·····80
1. 민사소송 절차의 자동화 전제·····80
2. 행정소송법 제20조 자동적 처분 요건 응용·····81
3. 법원의 재량과 관련된 민사소송 절차·····81
가. 법원에 재량이 없는 절차·····81
나.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를 위한 법원 재량권 행사·····82
4. 변론의 집중과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자동화 절차·····83
5. 자동화가 가능한 민사소송 절차·····84
가. 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의 자동화 절차·····84
나. 전자소송홈페이지 - 의견반영배너·····85
다. 소송절차자동화시스템 구축·····85
1) 재판부의 선택 가능 및 재판사무시스템 연동·····86
2) 사법전자서명 기능·····86
3) 소장부본 자동 송달실시 및 송달결과 자동 통지·····86
4) 자동 기일지정 및 통지·····87
5) 변론절차 및 판결서 작성 절차·····87
6) 소송절차자동화시스템 캐비넷에 의한 관리·····87
6. 소송절차자동화시스템 활용 영역·····88
가. 주소보정명령 절차·····88
나. 항소심 절차 ·····88
다. 행정소송 절차·····88
라. 판결 등에 대한 송달 절차·····89
마. 빅데이터 분석·····89
7. 자동화 대상 민사소송 절차 구조화·····89
가. 자동화 대상 민사소송 절차 구조화 모형·····89
1) 소장부본 송달 및 기일지정 절차·····89

2) 주장 중복 확인 및 판결문 연동·····90
나. 자동화 소송절차 모형의 구조화 정도·····91
Ⅵ. 소송절차자동화시스템 알고리즘 구현 사례·····91
1. 원고 의사 반영·····91
가. 소장 접수 단계·····91
1) 원고 무변론판결 및 조정기일 선택·····91
가) 피고 답변서 미제출·····92
나) 피고 답변서 제출·····92
2) 원고 무변론판결 및 변론기일 선택·····92
가) 피고 답변서 미제출·····93
나) 피고 답변서 제출·····93
3) 원고 무변론판결 선고 미선택·····94
가) 원칙 - 변론기일 지정·····94
나) 원고 조정기일 선택·····94
나. 피고 답변서 제출 단계·····94
1) 원고 조정기일 선택·····95
2) 원고 조정기일 미선택·····95
2. 소송절차자동화시스템 기일 지정 예시·····95
가. 기일지정기준·····95
나. 원고 의사 소장 접수 단계 반영 설정·····96
1) 원고가 무변론판결을 선택한 경우·····96
2) 원고가 무변론판결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96
다. 원고 의사 답변서 제출 단계 반영 설정·····96
3. 소송절차자동화시스템 캐비넷·····97
가. 소송절차자동화시스템 실시간 상황 반영·····97
나. 소장심사 자동적 통과 여부 및 수동 심사 반영·····97
다. 수동 소장심사 후 보정명령 반영·····97

라. 원고의 선택 사항 및 반영 내역 ····· 97
마. 기일지정 내역 ····· 97
4. 소장부본 등이 송달불능된 경우 ····· 98
가. 원고에 대한 자동 통지 ····· 98
나. 주소보정명령 이행 상황 ····· 98
5. 주장의 중복 확인 및 판단 누락 방지 자동화 ····· 98
가. 주장의 중복 확인 ····· 98
1) 준비서면 중복 활용 방안 ····· 98
2) 키워드 검색 기능 활용 방안 ····· 99
3) 당사자 의사 활용 방안 - 카테고리 ····· 99
4) 전자기록뷰어의 주장의 중복 표시 ····· 99
나. 판단누락 방지 ····· 99
다. 주장정리배너 예시 ····· 100
1) 준비서면 중복 활용 방안 ····· 100
가) 중복 정도 30% 문단 주장정리배너 ····· 100
나) 중복정도 30% 미만 문단 주장정리배너 ····· 100
2) 키워드 검색 기능 활용 주장정리배너 ····· 100
3) 당사자 의사 활용 주장정리배너 ····· 100
Ⅶ. 소송절차자동화시스템 오작동 통제 ····· 100
1. 오작동에 대한 기술적 통제 ····· 100
가. 정적 분석 ····· 100
나. 보안과 윤리 ····· 102
2. 오작동으로 진행된 소송절차에 대한 통제 ····· 104
가. 재판부의 오작동 점검과 통제 ····· 104
나. 당사자에 의한 통제 ····· 105
다. 상소심에 의한 통제 ····· 105
Ⅷ. 전자독촉절차 중 자동화 대상 절차 ····· 107

1. 독촉절차의 개요 ····· 108
가. 독촉절차의 의의 ····· 108
나. 지급명령 ····· 108
다. 지급명령서가 송달불능된 경우 ····· 110
라. 지급명령서가 송달된 경우 ····· 110
1)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 ····· 110
2)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 112
2. 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 구축사업 ····· 112
가. 워크플로우 기본구성 ····· 112
나. 워크플로우 진행단계 표시 ····· 113
다. 단계 이동 ····· 113
3. 전자독촉절차 자동화 절차 방안 ····· 114
가. 전자독촉절차 중 채권자의 절차적 권리 ····· 114
1) 지급명령서 송달불능 - 채권자 소송이행 선택 ····· 114
2) 채무자 이의신청서 제출 - 채권자 조정절차 선택 ····· 114
나. 채권자의 절차적 권리 반영 자동화 모형 ····· 115
다. 전자독촉절차자동화시스템 오작동 점검 ····· 116
Ⅸ. 소송절차 자동화에 대한 비판과 반론 ····· 116
1. 소장심사에 대한 자동흠결체크의 불완전성 ····· 116
2. 소송절차자동화시스템의 비효율성 ····· 117
3. 당사자의 권리 침해 및 재판장의 집중심리 저해 ····· 119
4. 판단누락 위험성 증가 ····· 120
Ⅹ. 결론 ····· 120

참고문헌

Abstract

Ⅰ. 서론

1. 행정기본법 제20조 자동적 처분의 제정 의의

모든 행정 분야에 적용되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행정 실체법을 체계화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행정 관련 법령의 제정 및 개정의 척도로서 행정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2021. 3. 23. 행정기본법이 제정·시행되었다.[1)2)3)]

행정기본법 제20조는 '자동적 처분'을 "행정청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한다)으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비교법적으로는 독일 행정절차법 제35a조 완전 자동화된 행정 행위 발행[Verwaltungsverfahrensgesetz (VwVfG) § 35a Vollständig automatisierter Erlass eines Verwaltungsaktes][4)] 등이 있다.[5)]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6)7)]의 발전을 행정영역에 반영한 행정기본법 제20조는 인공지능 기

---

1) 행정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법제처는 2021. 12. 행정기본법 해석 및 집행의 참고자료로 학설, 판례, 법적 쟁점 및 국내외 입법례를 담은 「행정기본법 해설서」를 발간하였다.

3) 정남철, 행정기본법의 제정 의미와 주요 내용, 법제 통권 제693호, 법제처 (2021. 6.), 46-52.

4) Verwaltungsverfahrensgesetz (VwVfG) § 35a Vollständig automatisierter Erlass eines Verwaltungsaktes
Ein Verwaltungsakt kann vollständig durch automatische Einrichtungen erlassen werden, sofern dies durch Rechtsvorschrift zugelassen ist und weder ein Ermessen noch ein Beurteilungsspielraum besteht.
[https://www.gesetze-im-internet.de/vwvfg/__35a.html] (2022. 12. 17. 확인)

5) 관련 외국 입법례는 법제처, 행정기본법 해설서, 한결엠 (2021. 12.), 211-212.

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한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을 통한 처분이 허용되고 적용될 수 있는 근거와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개별법에 무분별하게 자동적 처분이 도입되지 않도록 입법적 통제를 가능하게 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한편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하여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을 활용한 자동적 처분에 관한 입법적·기술적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8)]

행정기본법 제20조 자동적 처분은 ① 행정청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결과물을 만들어 내어 행정처분을 자신이 발하는 경우처럼, 행정처분의 형성과정의 일부 단계를 자동화하는 행정행위인 부분 자동

---

6) “ICT”란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의 약자로서 정보 기술(Information Technology, IT)과 통신 기술(Communication Technology, CT)의 합성어로서, 전기통신설비 또는 컴퓨터 등을 이용하거나 활용한 정보의 수집·가공·저장·처리·검색·송신·수신 및 서비스 제공 등과 관련되는 기술을 말한다.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338&ccfNo=1&cciNo=1&cnpClsNo=1] (2023. 1. 22. 확인)

7)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또는 컴퓨터 등을 이용하거나 활용한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처리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서비스 제공 등과 관련되는 기기ㆍ기술ㆍ서비스 및 산업 등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방송통신서비스
다.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디지털콘텐츠의 제작ㆍ유통 등과 관련된 기술ㆍ서비스 및 산업
마. 양자역학적 효과를 기반으로 하는 양자암호 및 통신, 양자센서 및 소자, 양자컴퓨터 등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하 "양자정보통신기술"이라 한다)

8) 제21대 국회 2021. 2. 24. 제384회(임시)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에서 법제처 차장은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의 예(例)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답변을 하였다[제21대 제384회 법제사법소위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2호” (2021. 2. 24.), 34.].
“과속단속카메라에 의해서 과속 차량이 체크가 되고 그것이 현재는 공무원이 보는 단말기에 들어와서 확인하고 그것에 의해서 고지서가 발송되는 이런 사람의 판단 작용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속한 경우에 일률적으로 기계에 의해서 이것은 과속 위반이고 그래서 과태료는 5만 원이고 이런 것이 자동적으로 시스템에 의해서 고지서까지 발송되어 버리는 이런 것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행정행위와 구별되고, ② 처분의 내용이 자동적으로 결정될 뿐 상대방 등에 대한 처분의 통지는 행정청(공무원)에 의해 이루어지는 처분, 즉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처분[9]과도 구별되는 행위이다.[10]

행정청은 현재 위택스(wⓔtax,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 국세청홈텍스(Hometax, 국세 신고·납부 서비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자동차등록신청 등 서비스) 등으로 부분 자동행정행위 또는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처분을 하고 있다.[11]

2. 컴퓨터과학과 행정기본법 제20조 자동적 처분

행정기본법 제20조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은 컴퓨터를 의미하므로[12] 행정기본법 제20조의 제정으로 알란 튜링[Alan Turing, 영국(United Kingdom)]이 1936년 런던 수리학회(London Mathematical Society)에 발표한 「계산가능한 수에 대해서, 수리명제 자동생성 문제에 응용하면서[On Computable Numbers, with an Application to the Entscheidungsproblem]」논문에서 고안한 "보편만능의 기계(universal computing machine)", 즉 "튜링기계(Turing Machine)"로부터 시작된 컴퓨터에 의하여 구현되는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처분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컴퓨터의 설계, 프로그래밍, 정보 처리, 알고리즘에 의한 문제 해

---

9) 홍정선, 행정기본법해설, ㈜박영사 (2021. 5. 25.), 157.

10) 자동화행정의 발전모형에 관하여는 윤상호·정필운·이해원·박소영, 인공지능 기반 자동화행정의 주요 쟁점에 관한 연구, 한국공공관리학보 제34권 제3호, 한국공공관리학회 (2020. 9.), 109-132.

11) ① 전자고지, ② 업무처리 자동화(Robotic Process Automation, RPA)를 이용한 행정, ③ 채봇(ChatBot)을 이용한 행정, ④ 의사결정 지원 인공지능을 이용한 행정 등 자동적 행정행위의 현황에 관하여는 박가람, 자동적 행정행위의 현황과 전망, 행정법연구 제68호, 사단법인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22. 8.), 121-147.

12) '컴퓨터로'='자동으로'='기계적으로'; '풀 수 있는'='계산 가능한'='돌릴 수 있는'='실행하는'; '컴퓨터로 풀 수 있는'='자동으로 계산가능한'='기계적으로 돌릴 수 있는'이 모두 같은 말이다[이광근, 컴퓨터과학이 여는 세계, 인사이트 (2021년), 96 주1)].

결, 알고리즘 등을 연구하는 컴퓨터과학(Computer Science)은 알고리즘 과학으로 확립되어 있다. 컴퓨터과학의 가장 근본적인 개념인 알고리즘(algorithm)은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을 정의하는 단계들의 집합으로서, 모호하지 않고 실행 가능한 단계들의 집합이며, 단계들에는 순서가 정해져 있고 종료되는 프로세스를 정의한다.”로 정의된다. 현재 컴퓨터 운영체제(operating system)에서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실행 활동을 구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개념 중의 하나인데, 명령들의 정적인 집합인 프로그램(program)은 알고리즘의 표현이며,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활동인 프로세스(process)는 알고리즘 실행 활동이다. 프로그램들과 이들이 나타내는 알고리즘을 함께 묶어 소프트웨어(software)라고 한다.[13]

컴퓨터에서의 알고리즘은 풀어야 할 문제를 단위 작업으로 나누고,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한 처리 순서를 정하는 과정으로서, 대표적인 알고리즘의 종류에는 정열(Sort), 검색(Search), 문자열 패턴 매칭(SPM, String Pattern Matching), 계산(Calculation)이 있고, 컴퓨터 관련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알고리즘에는 웹 검색 알고리즘, 매칭 알고리즘, 랭킹 알고리즘, 오류정정 알고리즘, 데이터 압축 알고리즘, 인공지능(머신러닝, 인공신경망, 딥러닝)과 패턴 인식(인접 이웃 분류자 알고리즘, K 인접 이웃 분류 알고리즘, 의사결정 나무 알고리즘, 인공 신경망 알고리즘), 데이터베이스 및 암호학 알고리즘 등이 있다.[14]

컴퓨터인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처분을 한다는 것은 ① 컴퓨터에 의하여 처분을 할 수 있는 알고리즘(문제풀이)을 찾고 그 해법이 맞는지 확인한 후 그 알고리즘대로 작동하여 처분을 할 수 있

---

13) J.Glenn.Brookshear·Dennis.Brylow(이광수, 윤영기 공역), 컴퓨터 과학 총론(Computer Science An Overview 13th Edition), 휴먼사이언스 (2019. 1. 7.), 2, 12, 153, 235, 237.

14) 조민호, 그림으로 정리한 알고리즘과 자료구조, 정보문화사 (2018. 8. 5.), 32, 136-137.

는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어야 하고, ② 알고리즘이 풀어야 하는 "자동적 처분의 구현"이라는 문제가 그 알고리즘을 실행에 옮길 때 드는 비용(시간 또는 메모리)[알고리즘 복잡도(complexity)]이 현실적인 비용으로 풀 수 있는 'p클래스' 문제[다항(polynomial) 알고리즘이 있는 문제]이어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한 처분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15]

3. 전자소송 제도와 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 구축사업

대등한 주체 사이의 생활관계에 관한 법률상의 쟁송[16]을 대상으로 하는 민사사건을 해결하는 절차에는 소송절차인 민사소송과 조정제도 등이 있고, 민사소송에는 통상절차인 판결절차와 간이소송절차인 지급명령 신청에 따른 독촉절차 등이 있다.

모든 국민은 기본권으로서 적정(진실에 합치하는 사실인정과 정당한 법규의 해석·적용에 의한 올바른 재판)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평등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고,[17][18][19][20] 법원은 공정, 신속, 경제적인 소송절차를 진행하도록 노

---

15) 이광근, 전게서, 94-104.

16) 법원조직법 제2조(법원의 권한)
① 법원은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법률상의 쟁송을 심판하고,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법원에 속하는 권한을 가진다.

17) 헌법 제27조
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8) 헌법재판소 2009. 12. 29. 선고 2008헌바124 전원재판부 결정

19)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0)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1981. 1. 29. 법률 제3361호) 제6조 제1항 중 "다만, 국가를 상대로 하는 재산권의 청구에 관하여는 가집행의 선고를 할 수 없다"라는 부분은 재산권과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 없이 소송당사자를 차별하여 국가를 우대하고 있는 것이므로 헌법 제11조 제1항에

력하여야 한다.[21]

민사소송 절차의 이상(理想)인 적정, 공정, 신속 및 경제의 상호관계는 상대적인 것이나, 민사소송제도의 존재 의의는 재판의 적정·공정에 있으므로 민사소송 절차는 적정·공정의 이상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신속과 경제의 이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22] 그런데 생활관계가 복잡해지면서 그에 따라 사건의 내용이 복잡하고 사건의 수도 폭증하고 있어, 민사소송 절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과제는 민사소송 절차의 지연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있다.[23][24][25]

2006. 10. 27. 법률 제8057호로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전산정보처리

위반된다(헌법재판소 1989. 1. 25. 선고 88헌가7 전원재판부 결정).

21) 민사소송법 제1조(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① 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2) 헌법은 제27조에서 국민의 권리구제 및 분쟁해결 수단으로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는바,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위해서는 우선 재판의 공정성과 적법절차가 확보되어야 하고, 아울러 적절한 기간 내에 권리구제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판의 신속성도 요청된다. 아무리 공정하고 적정한 재판이라 하더라도 그 재판의 종결이 지나치게 지연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재판에서 종국적으로 승소하더라도 권리구제의 실효를 거둘 수 없게 되거나 또는 그 의미가 반감될 수 있다. 나아가 상당한 정도를 넘는 재판의 지연은 당사자의 법적 지위를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하여 미래의 삶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에 처하게 하며, 일상적인 생활에서 정신적·신체적 활동을 제약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비용의 증가 등 재산적 손해도 발생하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헌법 제27조 제3항은 사법절차상 기본권 중의 하나로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헌법 제27조에 의하여 국민에게 보장된 재판청구권에는 법치주의의 이념상 본질적 요소인 동시에 효과적 권리구제를 위한 필수적 요소인 재판의 공정 및 적법절차의 요청이 내재되어 있으므로, 재판의 신속 내지 효율성만을 강조하여 재판의 공정 내지 적정을 훼손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여기에서 '신속한 재판'이라 함은 공정하고 적정한 재판을 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넘어 부당하게 지연됨이 없는 재판을 말한다(헌법재판소 2015. 7. 30. 선고 2013헌바120 전원재판부 결정).

23) "법원 요즘 왜 이래요?" 사건적체에 불만·한숨, 법률신문 (2022. 6. 20.), 1.

24)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신속처리절차 대상 사건의 유형과 분류방식, 신속처리절차의 구체적인 행태 등을 연구할 계획이라고 한다[법원, 장기미제사건 적체 해법 찾기 나섰다, 법률신문 (2022. 7. 25.), 1-2.].

25) 재산분할 처분 등 간이·신속해야 할 '비송사건' 10개월 이상 걸리기도, 법률신문 (2022. 12. 15.), 1, 5.

조직에 의한 독촉절차를 규정한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었고,[26][27] 2010. 3. 24.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민사소송등[28]에 필요한 전자문서를 작성・제출・송달하거나 관리하는 소송방식인 전자소송 제도가 마련되었다.[29][30]

---

26) 구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2006. 10. 27. 법률 제8057호로 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문서"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를 말한다.
2. "전산정보처리조직"이라 함은 독촉절차에 필요한 전자문서를 작성·제출·송달하는 데에 이용되는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전자서명"이라 함은「전자서명법」제2조 제3호의 공인전자서명을 말한다.

27)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2014. 5. 20. 법률 제 12586호로 제정되고 2014. 12. 1. 시행된 것)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폐지한다.

28) 구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2010. 3. 24. 법률 제10183호로 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거나 변환되어 송신、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를 말한다.
2.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른 절차(이하 “민사소송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전자문서를 작성、제출、송달하거나 관리하는 데에 이용되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전자서명”이란「전자서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과「전자정부법」제2조 제9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을 말한다.

29) 구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2010. 3. 24. 법률 제10183호로 제정된 것)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절차에 적용한다.
1.「민사소송법」(제5편은 제외한다)
2.「가사소송법」
3.「행정소송법」
4.「특허법」(제9장에 한정한다)
5.「민사집행법」
6.「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7.「비송사건절차법」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법률을 적용하거나 준용하는 법률

30) 구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2014. 5. 20. 법률 제12586호로 개정된 것) 제3조(적용 범위)

2010. 4. 26. 특허사건을 시작으로, 2011. 5. 2. 민사사건, 2013. 1. 21. 가사사건 및 행정사건, 2013. 9. 16. 보전처분(민사신청)사건, 2014. 4. 28. 도산사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사건), 2015. 3. 23. 민사집행사건, 비송사건, 2016. 11. 21. 독촉절차 전면 전자화 시범실시 등으로 순차적으로 민사소송등에 전자소송 제도가 실시되었다.[31]

대법원은 2017년 사법정보화전략위원회에서 "전자소송 미래시스템 구체화"를 채택하여, 2024년 시행 예정으로 2020. 9. 28.부터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 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다.[3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행정청 등 전자소송의무자[33]가 아닌 당사자는 대법원전자소송홈페이지(https://ecfs.scourt.go.kr, 이하 '전자소송홈페이지)[34]에 사용자등록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절차에 적용한다.
1.「민사소송법」

31) 한편 2010. 1. 25. 법률 제9943호로「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형사소송법 제448조에 따라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사건에 관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의한 절차가 마련되었고, 2021. 10. 19. 법률 제18485호로「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4. 10. 20.부터 형사사법절차에 있어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전자소송이 시행될 예정이다.

32) 유아람, 전자소송의 현황과 과제(전자소송 10년, 회고와 전망), 사법정책연구원(2021. 9. 3.)

33)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전자적 송달·통지를 받을 기관 등)
① 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를 받을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행정사건, 특허사건과 관련된 행정청
3의2. 가사사건, 비송(과태료 포함)사건과 관련된 검사
3의3. 가사사건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장
3의4. 회생·파산사건의 절차관계인
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및「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중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여 전자소송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기관

34)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소송등의 진행에 동의하는 전자소송 동의를 하여야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35][36][37]

2021년 사법연감에 의하면, 2021년 접수 사건 중 ① 민사본안(특허사건, 도산사건 포함) 제1심 사건은 814,664건인데, 그 중 전자소송은 792,702건으로서 전자소송 비율이 97.3%이고, ㉮ 제1심 민사본안 사건 중 민사소송 사건은 ㉠ 합의부 사건 43,240건(동일인에 의한 과다 소송 제기 사건 수 제외), ㉡ 단독 사건 212,131건이고, ㉯ 민사소송 사건 중 전자소송은 ㉠ 합의부 사건 43,145건(쌍방 동의 24,620건), ㉡ 단독 사건 210,321건(쌍방 동의 56,594건)이며, ② 민사

---

1. "전자소송시스템"이란 법원행정처가 법 제3조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른 절차(다음부터 "민사소송 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전자문서를 작성ㆍ제출ㆍ송달하거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ㆍ데이터베이스ㆍ네트워크ㆍ보안요소 등을 결합시켜 구축ㆍ운영하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서 법 제2조 제2호 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한다.
2. "전자소송홈페이지"란 이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전자소송시스템에 의하여 구축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35)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사용자등록)
①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려는 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36)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문서제출방법)
등록사용자로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등의 진행에 동의한 자는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장애가 있는 경우
2.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7)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
① 법원사무관등은 송달이나 통지를 받을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송달하거나 통지할 수 있다.
1. 미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등의 진행에 동의한 등록사용자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인 경우
2. 전자문서를 출력한 서면이나 그 밖의 서류를 송달받은 후 등록사용자로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등의 진행에 동의한 자인 경우
3. 등록사용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그에 준하는 자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인 경우

독촉 사건은 65,153건이고, 전자독촉 사건은 1,036,616건이다.

4. 전자소송 제도와 행정기본법 제20조 자동적 처분

전자소송은 종이문서 제출·관리 비용과 부담을 감소시키고, 민사소송등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신속성, 투명성을 높여 당사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분쟁해결의 효율성을 높여 국민의 권리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되었다.[38]

전자소송의 범주에는 전자적 소송서류 관리(e-filing), 전자적 사건관리(e-case management), 전자적 법정변론(e-courtroom)[39][40][41][42]

---

38)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민사소송 등에서 전자문서 이용에 대한 기본 원칙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민사소송 등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신속성, 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권리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9) 구 민사소송법(2021. 8. 17. 법률 제18396호로 개정된 것) 제287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기일)
① 재판장·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거나 동의를 얻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변론준비기일 또는 심문기일을 열 수 있다.
② 법원은 교통의 불편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당사자가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거나 동의를 얻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변론기일을 열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심리의 공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일에 관하여는 제327조의2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40) 구 민사소송법(2016. 3. 29. 법률 제1410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327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할 수 있다.
1. 증인이 멀리 떨어진 곳 또는 교통이 불편한 곳에 살고 있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2. 증인이 나이, 심신상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과의 관계, 신문사항의 내용, 그 밖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법정에서 당사자 등과 대면하여 진술하면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증인신문은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루어진 증인신문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증인신문의 절차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등이 해당한다.

그런데 현재의 전자소송에 대하여 당사자는 전자소송을 소송서류를 전자적으로 제출하고 전자적으로 송달받는 사건으로 이해하고, 법원은 사건기록을 종이서류가 아닌 전자문서로 관리하는 사건으로 이해하고 있다.

즉, 하드웨어・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네트워크・보안요소 등을 결합시켜 구축・운영하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전자소송은 종이 기반 업무절차 및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의 전자소송시스템 관련 법규에는 행정기본법 제20조와 같은 “완전히 자동

---

41) 구 민사소송법(2016. 3. 29. 법률 제1410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339조의3(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감정인신문)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감정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신문할 수 있다.
1. 감정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2. 감정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감정인신문에 관하여는 제327조의2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42) 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판예규 제1802호(재일 2021-2)]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상재판"이라 함은 재판부 및 소송관계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절차를 말한다.
2. "영상기일"이라 함은「민사소송법」제287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일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일을 말한다.
3. "영상신문"이라 함은 영상재판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증인·감정인에 대한 신문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를 말한다.
4. "중계시설"이라 함은 법원이 직접 구비하거나 관공서나 그 밖의 공사단체에 요청하여 이용하는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로서 통신망을 통해 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 시설을 말한다.
5. "화상장치"라 함은 참석자가 구비한 인터넷 화상장치로서 인터넷망을 통해 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6. "수소법원"이라 함은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을 말한다.
7. "출석장소"라 함은 수소법원에 출석하지 않는 소송관계인이 실제로 출석하는 장소를 말한다.
8. "출석법원"이라 함은 출석장소를 관할하는 법원을 말한다.
9. "재판장등"이라 함은 사건이 계속 중인 재판부의 재판장, 수명법관, 수탁판사를 말한다.

화된 시스템”에 의하여 할 수 있는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어, 현재의 전자소송은 “부분 자동행정행위” 또는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처분”에 대응하는 “부분 자동소송절차” 또는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절차”에 해당된다.

법원이 발달된 정보통신기술로 민사소송 절차 중 자동화가 가능한 영역을 발굴하여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해당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하면, 소송 당사자에게 절차적 편의를 제공하고 절차적 기본권[43]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줄 수 있고, 법원의 인적·물적 제도를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어 소송 경제적으로도 바람직하며, 궁극적으로는 민사소송의 신속 및 경제의 이상을 실현하면서도 적정 및 공정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보다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5. 연구의 목적 및 범위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한 행정을 허용한 행정기본법 제20조의 자동적 처분을 응용하여 민사소송 절차 중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절차 및 그 절차에 관한 알고리즘 구현[44] 사례를 연구하여 민사소송 절차에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영역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행정기본법 제20조가 정하는 자동적 처분이 갖추어야 할 요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다음으로 민사소송의 기본절차와 법원의 사건관리방식을 살펴보고, 전자소송시스템과 차세대전자

---

43) 헌법은 제27조 제1항에서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공정한 재판절차를 어떠한 내용으로 구체화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입법부에게 입법형성의 자유를 부여하고 있다. 재판청구권과 같은 절차적 기본권은 원칙적으로 제도적 보장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자유권적 기본권 등 다른 기본권의 경우와 비교하여 볼 때 상대적으로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인정된다(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10헌바403 전원재판부 결정).

44) 구현(implementation)은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데이터 파일을 만들고,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하는 작업들을 포함한다[J.Glenn.Brookshear·Dennis.Brylow(이광수, 윤영기 공역), 전게서, 371.].

소송 시스템 중 민사소송 절차를 자동화할 수 있는 기반(인프라)에 관하여 살펴본 다음, 행정기본법 제20조의 자동적 처분이 갖추어야 할 요건을 응용하여 민사소송 절차 중 자동화할 수 있는 영역을 제안하고자 한다. 끝으로 자동화 대상 민사소송 절차를 수행하는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의 알고리즘을 구현하고자 한다.

Ⅱ. 행정기본법 제20조 자동적 처분 요건

1. 행정기본법 제20조 자동적 처분의 개념

가. 자동적 처분의 주체 - 행정청

행정기관은 행정권한을 행사하는 행정조직의 구성단위로서 행정기관의 구성자인 공무원과는 구별되고, 대외적으로 행정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행정기관을 행정청이라 한다.[45][46]

국가 등 행정주체를 대표하여 의사를 결정하고 표시할 수 있는 행정권한이 없는 행정청이 한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의 피고는 권한 없이 한 행정청이 된다.[47][48][49]

---

45) 박균성, 행정법강의, ㈜박영사 (2021. 2. 1.), 926-928.

46) 행정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행정청"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나. 그 밖에 법령등에 따라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사인

47) 행정소송법 제3조(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은 다음의 네가지로 구분한다.
1. 항고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48) 행정소송법 제4조(항고소송)
항고소송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취소소송: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2. 무효등 확인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

49)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행정기본법 제20조는 자동적 처분의 주체를 행정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기본법 제20조의 자동적 처분은 행정청이 그 행정권한을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에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제도가 아니다.[50][51]

나. 자동적 처분의 방식 -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

행정기본법 제20조 자동적 처분의 방식은 행정청의 구성자인 사람이 아닌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 즉 처음부터 완결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진 시스템이다. 행정청이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행정기본법 제20조는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이 발령한 처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행정청의 구성자인 공무원이 발령한 처분에 대한 법적 평가와 다르지 아니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52]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은 다양한 처분을 발급하는 시스템이 아

없는 한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하며, 행정처분을 행할 적법한 권한있는 상급행정청으로부터 내부위임을 받은데 불과한 하급행정청이 권한없이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도 실제로 그 처분을 행한 하급행정청을 피고로 할 것이지 그 상급행정청을 피고로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9. 11. 14. 선고 89누4765 판결).

50) 행정권한의 위임은 행정관청이 법률에 따라 특정한 권한을 다른 행정관청에 이전하여 수임관청의 권한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권한의 법적인 귀속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법률의 위임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에 반하여 행정권한의 내부위임은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행정관청의 내부적인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의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그의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게 하는 것이므로, 권한위임의 경우에는 수임관청이 자기의 이름으로 그 권한행사를 할 수 있지만 내부위임의 경우에는 수임관청은 위임관청의 이름으로만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자기의 이름으로는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누5792 판결).

51)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3004호)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임"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52) 법제처, 전게서, 209.

니라 특정 처분을 발급하기 위한 알고리즘(특정 처분 발급 문제를 해결하는 알고리즘)으로 설계된 독립된 시스템이므로, 알고리즘 단위의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이 특정 처분의 형식과 내용을 구성한다.[53]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에 적용될 수 있는 기술은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기술을 포함하고 있는데, 과학기술기본법 제27조[54]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8-10호)는 인공물 분야 과학기술의 대분류 EE. 정보/통신 분야 중 중분류 EE01. 정보이론(Information Processing Theory)[55]의 소분류로 EE0108.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을 분류하고,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해설서는 EE0108. 인공지능을 "인간의 인식체계를 모방하여 컴퓨터가 마치 인간의 지능을 갖는 것처럼 사물을 인식하고 반응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별표 7]은 인공지능을 지능정보로

---

53) 권은정, 자동적 처분의 행정법적 제 문제- 처분의 형식·절차 및 구제에 관한 쟁점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제38권 제3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9. 30.), 95.

54) 과학기술기본법 제27조(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확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 관련 정보ㆍ인력ㆍ연구개발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과학기술에 관한 국가표준분류체계를 세우고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를 만들어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를 널리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를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발전시키도록 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의 제정 절차 및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5)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해설서는 EE01. 정보이론을 "정보를 수집하고 가공하여 사용자의 필요에 적합한 형태로 제공하기 위한 장치, 방법, 절차 및 이를 위한 소프트웨어작인 도구들을 모두 포괄하는 기술분야로서 컴퓨터관련 기술, 운영체계, 실시간 처리 시스템, 프로그래밍관련 언어, 컴파일러 등이 장치 기술로서 존재하며,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절차에 대하여 제시함. 또한 알고리즘, 자연어 처리, 인공지능 human computer interface, cloud computing/grid computing 등이 방법론으로 기능하게 됨."으로 정의하고 있다.

서 신성장・원천기술로 분류하고 있다.[56][57]

다. 자동적 처분 허용 근거 법률 제정 필요

행정기본법 제20조는 자동적 처분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행정기본법 제20조에 의하여 자동적 처분이 전면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처분의 방식을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할 수 있음을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에 자동적 처분이 허용된다.

법치행정의 원칙[58]에 의하여 처분의 근거는 원칙적으로 법률에

---

56)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https://stdict.korean.go.kr)은 인공지능을 "『정보·통신』 인간의 지능이 가지는 학습, 추리, 적응, 논증 따위의 기능을 갖춘 컴퓨터 시스템. 전문가 시스템, 자연 언어의 이해, 음성 번역, 로봇 공학, 인공 시각, 문제 해결, 학습과 지식 획득, 인지 과학 따위에 응용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2022. 12. 22. 확인)

5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② 법 제10조 제1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별표 7에 따른 기술(이하 "신성장ㆍ원천기술"이라 한다)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 <개정 2022. 2. 15.>

신성장・원천기술의 범위(제9조 제2항 관련)

구분	분야	신성장·원천기술
2.지능정보	가.인공지능	1) 학습 및 추론 기술: 다양한 기계학습 알고리즘(algorithm), 딥러닝(deep learning), 지식베이스(knowledge base) 구축, 지식추론 등 학습 알고리즘과 모델링(modeling) 조합을 통해 지능의 정확도와 속도를 향상시키는 소프트웨어 기술
		2) 언어이해 기술: 텍스트(text), 음성에서 언어를 인지·이해하고 사람처럼 응대할 수 있는 자연어 처리, 정보검색, 질의응답, 언어의미 이해, 형태소・구문 분석 등 언어 관련 소프트웨어 기술
		3) 시각이해 기술: 비디오(video), 이미지(image) 등에서 객체를 구분하고 움직임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한 컴퓨터 비전(computer vision), 행동 인식, 내용기반 영상검색, 영상 이해, 영상 생성 등 사람의 시각지능을 모사한 소프트웨어 기술
		4) 상황이해 기술: 다양한 센서(sensor)를 통해 수집된 환경정보를 이해하거나, 대화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고 주변상황과 연결한 자신의 상태를 이해하는 등 자신이 포함된 세계나 환경을 이해하여 적절한 행동을 결정짓는 소프트웨어 기술
		5) 인지컴퓨팅 기술: 저전력・고효율로 지능정보 학습을 수행할 수 있도록 컴퓨터 시스템 구조를 재설계하거나, 인공지능 알고리즘(algorithm) 처리가 용이하도록 초고성능 연산 플랫폼(Platform)을 제공하는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술

비고
위 표에 따른 신성장.원천기술의 유효기한은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근거가 있어야 하고, 행정기본법 제20조는 그 처분을 행정청의 구성자인 사람이 아닌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이 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로 정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59]

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의 대상

행정기본법 제2조 제4호[60]의 처분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청의 행위,[61]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청의 행위,[62] 국민의 법적 불이익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구제수단의 필요성이 있는 행정청의 행위[63] 등이 해당한다.[64]

---

58) 헌법 제96조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59) 제21대 국회 2021. 2. 24. 제384회(임시)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에서 법제처 차장은 “위원님, 지금 여기에서 자동적 처분이 소위 강학상의 행정행위를 말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처분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그것은 법률에 근거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요. 저희들이 이 자동적 처분은 법률에 이미 처분의 근거는 있다는 전제하에 이 처분의 방식을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규정이 있다고 해 가지고 법률에 어떤 처분의 근거도 없이, 행정행위의 근거 없이 새로운 처분을 하위법령에 의해서 만들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라고 답변하였다[21대 제384회 법제사법소위 제2차, 전게 회의록, 36.].

60) 행정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처분"이란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행하는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61) 갑 주식회사가 조달청과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요구받은 제품을 수요기관에 납품하였는데, 조달청이 계약이행내역 점검 결과 일부 제품이 계약 규격과 다르다는 이유로 물품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 규정에 따라 갑 회사에 대하여 6개월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조치를 한 사안에서 거래정지 조치의 처분성 인정(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5두52395 판결).

6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갑 등에게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및 자격변동 안내’ 통보 및 ‘사업장 직권탈퇴에 따른 가입자 자격상실 안내’ 통보를 한 사안에서 각 통보의 처분성을 불인정한 사례(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두41729 판결).

63) 행정청의 건축신고 반려행위 또는 수리거부행위의 처분성을 인정한 사례(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64)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 사이의 실질적 견련성, 법치행정의 원리와 그 행위에 관련된 행정청이나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

처분(행정행위)은 행정청에게 행정목적에 적합한 행위를 결정하거나 선택할 수 있는 재량권의 유무에 따라 기속행위(羈束行爲)와 재량행위(裁量行爲)로 나누어진다.[65][66]

기속행위는 행정권의 행사의 요건과 효과가 법령에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행정청에게 법령에 정해진 행위를 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행위이고, 재량행위는 행위의 요건이나 효과의 선택에 관하여 법령이 행정권에 재량권을 인정한 행위이며,[67] 한편 기속재량행위는 원칙적으로는 기속행위이나 중대한 공익을 이유로 행정청이 거부할 수 있는 행정청의 행위이다.[68]

행정기본법 제20조는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 그 처분은 자동적 처분의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므로,[69][70] 행정청은 완전히 자동화된

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행정청의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불복방법 선택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상대방의 인식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두60748 판결).

65) 하명호, 행정법, ㈜박영사 (2022. 1. 10.), 114.

66) 행정기본법 제21조(재량행사의 기준)
행정청은 재량이 있는 처분을 할 때에는 관련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하며, 그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67) 행정행위가 재량성의 유무 및 범위와 관련하여 이른바 기속행위 내지 기속재량행위와 재량행위 내지 자유재량행위로 구분된다고 할 때, 그 구분은 당해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재·형식과 문언, 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해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렇게 구분되는 양자에 대한 사법심사는, 전자의 경우 그 법규에 대한 원칙적인 기속성으로 인하여 법원이 사실인정과 관련 법규의 해석·적용을 통하여 일정한 결론을 도출한 후 그 결론에 비추어 행정청이 한 판단의 적법 여부를 독자의 입장에서 판정하는 방식에 의하게 된다. 후자의 경우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고,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당해 행위의 목적 위반이나 동기의 부정 유무 등을 판단 대상으로 한다(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4두37702 판결).

68)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같은 법령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11. 22. 선고 2010두22962 전원합의체 판결).

69) 기속행위의 경우에는 하나의 바른 결정만이 고려될 수 있어 자동적 처분을 도입

시스템으로 재량행위를 할 수 없다.

법제처는 행정기본법 제20조 입법 당시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할 수 있는 처분으로 시험 채점, 지능형 교통신호, 과세부과, 자동차등록결정 등을 예정하였다.[71][72]

2. 행정기본법 제20조 자동적 처분의 구조화 정도

구조화란 "정보를 쉽게 인출(引出)할 수 있도록 한 편성 방식"[73] 인데, 발견된 문제에 대하여 수집한 정보를 기초로 문제의 핵심과 관련된 요인을 추출하여 그들 간의 관계를 모델화하는 문제구조화(problem structure)를 통하여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74][75] 알고리즘 구조화는 "전체를 부분으로 나누어 구조화한 후에 알고리즘을 구성하는 요령"으로서 알고리즘 구조화로 전체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76]

문제를 푸는 알고리즘이 설계 단계에서 정교하게 구조화되면 분석구조가 정형화되고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나타나지만, 알고리즘 설계 단계에서 알고리즘이 잘못 구조화된 경우에는 분석구조의 정형화가 어렵고,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설명되지 아니하며, 알고리즘을 통한 결과의 도출을 예측하기 어려워지므로, 알고리즘의 구조화 정도에 따라 문제해결능력이 결정된다.[77]

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나,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처분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법제처, 전게서(행정기본법해설서), 210.].

70) 자동적 재량행위로의 확장에 관하여는 유동훈, 자동적 재량행위 가능성에 관한 시론적 연구, 법제 통권 제697호, 법제처 (2022년)

71) 법제사법위원회, 행정기본법안심사보고서 (2021. 2.), 34.

72) 법제처, 전게서(행정기본법해설서), 209.

73) 컴퓨터인터넷IT용어대사전(naver.com, 2022. 12. 25. 확인)

74) 박동진·이재신, 문제구조화 지원을 위한 통합적 프레임워크, 경영교육연구 제37집, 한국경영교육학회 (2005. 3.), 179-180.

75) Rajiv Sabherwal·Varun Grover, Computer Support for Strategic Decision-Making Processes: Review and Analysis, Decision Sciences Vol. 20 No 1, Decision Sciences Institution (March 1989), 54-76.

76) 조민호, 전게서, 44.

구조화가 잘된 문제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사례에는 식료품 점인 아마존고(Amazongo), 출판 플랫폼인 인키트(Inkitt), 온라인 기반의 숙의민주주의(熟議民主主義, deliberative democracy)를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인 폴리스(Pol.is)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구조화가 잘된 문제의 특징은 수집할 정보의 범위가 확정적이거나 안정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얻거나 평가할 수 있어 ① 데이터의 생산자와 사용자가 동일하여, 자기 완결적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개발된 알고리즘은 해당 세계의 내부에서 활용되므로,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등장할 수 없으며 자기 완결적 세계 내에서 최적화를 통하여 편리를 도모할 수 있고, ② 인공지능이 인식하는 세계(학습한 데이터)와 풀어야 할 실재 세계의 문제 상황이 일치하기 때문에 오류의 가능성이 없으며, ③ 문제 상황이 변화할 가능성이 낮아 구조적으로 안정되어 있어 알고리즘이 변용될 가능성이 낮다고 한다.[78]

행정청이 행정기본법 제20조에 의하여 자동적 처분을 하려면, 그 처분이 구조화가 잘된 문제에 해당하고,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의 알고리즘이 자기 완결적으로서 변용될 가능성이 낮고 정교하게 구조화되어야 한다.[79]

3. 행정기본법 제20조 자동적 처분에 대한 통제

가. 안전성, 신뢰성, 공정성 확보

77) 김재선, 알고리즘 자동행정결정에 대한 행정법적 해석방안에 관한 연구-미국 행정법상 입법방안 논의를 중심으로-, 법학논총 제45권 제3호,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9.), 90.

78) 은종환·황성수, 인공지능을 활용한 정책의사결정에 관한 탐색적 연구: 문제구조화 유형으로 살펴 본 성공과 실패 사례 분석, 정보화정책 제27권 제4호, 한국정보화진흥원 (2020. 12.), 55.

79) (단순)자동행정결정은 인공지능기반 자동행정에 비하여, 의사결정 구조가 정형적, 구조적이고 비교적 단순하며, 자동결정의 기준이 되는 프로그램은 비교적 결과 예측이 가능하다는 견해[김도승, 인공지능 기반 자동행정과 법치주의, 미국헌법연구 제30권 제1호, 미국헌법학회 (2019. 4.), 117-118.]

「지능정보화 기본법」은 국가기관등에게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에 관하여 안전성·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책무 및 지능정보사회윤리 확보를 위한 시책 마련 책무 등을 부과하고 있고,[80][81][82][83]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2조 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통

---

80)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지능정보기술"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 또는 그 결합 및 활용 기술을 말한다.
가. 전자적 방법으로 학습·추론·판단 등을 구현하는 기술
나. 데이터(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를 전자적 방법으로 수집·분석·가공 등 처리하는 기술
다. 물건 상호간 또는 사람과 물건 사이에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물건을 이용·제어 또는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라.「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기술
마. 무선 또는 유·무선이 결합된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기술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
7. "지능정보서비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가.「전기통신사업법」제2조 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와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것
나.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다. 그 밖에 지능정보화를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

81)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고려하여 지능정보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기술의 개발·고도화 및 활용을 제약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지능정보기술을 개발·활용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이용할 때 안전성·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화로 발생·심화될 수 있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노동환경 변화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82)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0조(안전성 보호조치)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필요한 최소한도의 보호조치의 내용과 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지능정보기술과 지능정보서비스의 오작동 방지에 관한 사항
2.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에 대한 권한 없는 자의 접근, 조작 등 전자적 침해행위의 방지에 관한 사항
3.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접속기록, 운용·활용기록의 저장·관리 및 제공 등에 관한 사항
4. 지능정보기술의 동작 및 지능정보서비스 제공을 외부에서 긴급하게 정지하는 것(이하 "비상정지"라 한다)과 비상정지에 필요한 알고리즘의 제공에 관한 사

신부는 2020. 12. 23. 3대 기본원칙(인간 존엄성 원칙, 사회의 공공선 원칙, 기술의 합목적성 원칙)과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 전과정에서 ① 인권 보장, ② 프라이버시 보호, ③ 다양성 존중, ④ 침해금지, ⑤ 공공성, ⑥ 연대성, ⑦ 데이터 관리, ⑧ 책임성, ⑨ 안전성, ⑩ 투명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10대 핵심원칙을 내용으로 한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공지능[AI]윤리기준」"을 제정하였다.[84][85][86]

항

5. 기타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83)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2조(지능정보사회윤리)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기술을 개발ㆍ활용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ㆍ이용할 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공공성ㆍ책무성ㆍ통제성ㆍ투명성 등의 윤리원칙을 담은 지능정보사회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지능정보사회윤리 확립을 위한 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홍보
2. 지능정보사회윤리 교육 콘텐츠 개발ㆍ보급
3. 지능정보사회윤리 관련 연구 및 개발
4. 지능정보사회윤리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④ 정부는 지능정보기술 또는 지능정보서비스 개발자ㆍ공급자ㆍ이용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한 지능정보사회윤리준칙을 제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84) 안전성

-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 전 과정에 걸쳐 잠재적 위험을 방지하고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인공지능 활용 과정에서 명백한 오류 또는 침해가 발생할 때 사용자가 그 작동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85) 투명성

- 사회적 신뢰 형성을 위해 타 원칙과의 상충관계를 고려하여 인공지능 활용 상황에 적합한 수준의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인공지능기반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인공지능의 활용 내용과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의 유의사항을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86)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인공지능 고위 전문가 집단(High-Level Expert Group on Artificial Intelligence)은 2019. 4. 8.「신뢰할 수 있는 AI 윤리 가이드라인」(Ethics Guidelines for Trustworthy AI)을 발표하여,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은 합법성(적용가능한 모든 법과 규율을 존중함), 윤리성(윤리적 원칙과 가치를 존중함), 견고성(기술적 관점과 사회적 환경의 동시적 고려)의 속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The aim of the Guidelines is to promote Trustworthy AI. Trustworthy AI has three components, which should be met throughout the system's entire life cycle: (1) it should be lawful, complying with all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2) it should be ethical, ensuring adherence to ethical principles and values and (3) it should be robust, both from a technical and social perspective since, even with good intentions, AI systems can cause unintentional harm. Each component

개인정보처리자인 공공기관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 생성 등으로 처리함에 있어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으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87][88][89]

행정기본법 제20조의 자동적 처분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 정하는 지능정보기술이 적용된 지능정보서비스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의 알고리즘 설계단계에서 안전성, 신뢰성,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개인정보처리자인 행정청은 처분의 상대방인 당사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에 관하

---

in itself is necessary but not sufficient for the achievement of Trustworthy AI. Ideally, all three components work in harmony and overlap in their operation. If, in practice, tensions arise between these components, society should endeavour to align them. [https://op.europa.eu/en/publication-detail/-/publication/d3988569-0434-11ea-8c1f-01aa75ed71a1] (2023. 1. 21. 확인)

87)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2.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나. 그 밖의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88)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89) 정보보안의 법적 규율에 관하여는 박상철, 정보보안의 법적 규율: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중심으로, 개인정보 보호의 법과 정책, 박영사 (2016년)

여 안정성 확보에 관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설명요구권 보장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개인신용평가회사등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만으로 개인신용정보 등을 처리하여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평가하는 자동화평가를 허용하면서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에게 개인신용평가회사등에 대한 자동화평가 결과에 관한 설명요구권 및 이의제기권을 인정하고 있다.[90][91][92][93]

---

90)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용정보"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2. "개인신용정보"란 기업 및 법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신용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3. "신용정보주체"란 처리된 신용정보로 알아볼 수 있는 자로서 그 신용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를 말한다.
13. "처리"란 신용정보의 수집(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결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14. "자동화평가"란 제15조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등의 종사자가 평가 업무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만 개인신용정보 및 그 밖의 정보를 처리하여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평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9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수집 및 처리의 원칙)
①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이하 "신용정보회사등"이라 한다)는 신용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법 또는 정관으로 정한 업무 범위에서 수집 및 처리의 목적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이 법 및「개인정보 보호법」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단을 사용하여 신용정보를 수집 및 처리하여야 한다.

9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및 이의제기 등)
①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이하 이 조에서 "개인신용평가회사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행위에 자동화평가를 하는지 여부
가. 개인신용평가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거래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내용의 결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 한정한다)
다. 그 밖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만 처리하면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21대 국회 제400회(정기) 제15회 정무위원회는 2022. 12. 5. 정무위원회의결안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4조 제6호, 제37조의2에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에 따른 결정을 거부하거나 그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였다.[94][95][96]

---

2. 자동화평가를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자동화평가의 결과
나. 자동화평가의 주요 기준
다. 자동화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이하 이 조에서 "기초정보"라 한다)의 개요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유사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평가회사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자동화평가 결과의 산출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정보의 제출
2. 자동화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의 내용이 정확하지 아니하거나 최신의 정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기초정보를 정정하거나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나. 자동화평가 결과를 다시 산출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93) 알고리즘 투명성의 개념은 “사람의 권리 또는 중대한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알고리즘에 기한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의무/설명요구권”을 위한 개념으로서 머신러닝 알고리즘 자체는 개발자가 완벽하게 이해 가능하므로 개발자 입장에서는 알고리즘 투명성이 아닌 모델해석가능성(model interpretability)이 문제라는 견해[박상철, 알고리듬 투명성의 역설, 서울대학교 AI 콜로퀴엄, 서울대학교 AI 연구원 (2020. 11. 6.)].

94) 제21대 국회 2022. 12. 5. 제400회국회(정기회) 정무위원회회의록(제15호), 18.

95)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6. 완전히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에 따른 결정을 거부하거나 그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할 권리

96) 제37조의2(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
① 정보주체는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한다)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이루어지는 결정이 자신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해당 결정을 거부하거나 해당 결정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개인정보가 제15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가 자동화된 결정을 거부하거나 이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화된 결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인적 개입에 의한 재처리ㆍ설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자동화된 결정의 기준과 절차를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행정청에 의하여 행정기본법 제20조의 자동적 처분을 받은 당사자에게 자동적 처분에 관하여 행정청에 대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이 개인신용주체에게 보장하는 개인신용평가회사등에 대한 자동화평가 결과에 관한 설명요구권 등과 같은 설명요구권 등이 법령으로 보장되어야 한다.[97]

다. 정보공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대상이 되므로,[98][99]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권 행사에 국민의 참여와 행

수 있도록 공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동화된 결정의 기준ㆍ절차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7) 금융AI에 대한 설명요구권의 설명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알고리즘이 아니라 (데이터로 훈련된) 모델이어야 한다는 견해[박상철, 금융AI의 활용과 금융소비자 보호: 차별금지, 설명요구권, 6대 판매규제 준수를 중심으로, BFL(Business Finance Law) 제107호,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21. 5.), 46.].

9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9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

정권 행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본법 제20조 자동적 처분의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의 알고리즘도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해당된다면 공개대상이 될 수 있다.[100][101]

라. 사법통제

행정기본법 제20조의 자동적 처분도 처분이므로 자동적 처분의 당사자는 행정청을 상대로 자동적 처분의 하자(瑕疵)에 대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자동적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의 알고리즘 시스템의 정확성에 대한 적

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00) 미국 연방정부의 행정결정 중 알고리즘을 활용한 주요 유형 및 미국에서의 알고리즘 공개에 관한 논의는 김재선, 앞의 글.

101) 알고리즘 정보공개에 관한 미국 법원의 판결 사례에 관하여는 임성훈, 인공지능 행정이 행정절차·행정소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시론적 고찰, 행정법연구 제62호, 사단법인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20. 8.), 145-146.

법성 통제를 알고리즘의 결과(처분)와는 별도로 알고리즘 시스템 문제로 인하여 잘못된 처분에 이르렀는지, 즉 알고리즘이 처분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작동하였는지에 대하여도 법원에 의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도록 하여, 자동적 처분에 대한 사법통제뿐만 아니라 당해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의 폐기 등으로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 자체에 대한 사법통제도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102]

Ⅲ. 민사소송 기본절차와 법원 사건관리방식

1. 민사소송의 기본절차

가. 송달

1) 송달의 의의

송달은 법원이 재판에 관한 서류를 법정된 방식에 따라 당사자 기타 소송관계인에게 교부하여 그 내용을 알리거나 알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공증하는 행위, 즉 재판권의 작용으로 행하는 명령적・공증적 통지행위이다.

송달은 소송절차의 진행 및 종료에 관계되므로, 민사소송 절차의 안정 및 확실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은 송달을 신속・적정・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직권송달주의를 취하고 있다.[103]

2) 송달기관

송달사무처리기관은 송달실시 이외의 송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여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법원사무관등이고,[104] 송달실시기관은 송달

---

102) 임성훈, 앞의 글, 160-161.

103) 민사소송법 제174조(직권송달의 원칙)
송달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한다.

104) 민사소송법 제175조(송달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① 송달에 관한 사무는 법원사무관등이 처리한다.
② 법원사무관등은 송달하는 곳의 지방법원에 속한 법원사무관등 또는 집행관

사무처리기관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송달을 의뢰받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우편집배원, 집행관 등이다.[105] 집행관에 의한 송달실시는 실무상 우편에 의한 송달로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경우 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보충적으로 실시된다.

3) 송달대상

법원이 당사자에게 송달하는 서류로는 ① 법원이 작성한 기일통지서(원본), 판결(정본) 등이고, ② 상대방 당사자가 작성한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이다.

4) 전자소송 송달방식

전자소송시스템에서는 전자소송 동의자에 대하여는 전자적 송달을 하고, 전자소송 비동의자에 대하여는 우편송달을 한다.

우편송달은 송달사무처리기관이 전자문서를 출력한 서면을 우편봉투에 봉합한 후 우편송달부를 출력하여 우체국에 접수하는 방식이고,[106] 전자적 송달은 송달사무처리기관이 전자우편과 문자메시지

에게 제1항의 사무를 촉탁할 수 있다.

105) 민사소송법 제176조(송달기관)
① 송달은 우편 또는 집행관에 의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② 우편에 의한 송달은 우편집배원이 한다.
③ 송달기관이 송달하는 데 필요한 때에는 경찰공무원에게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106)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전자문서를 출력한 서면에 의한 송달)
① 법원사무관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출력하여 그 출력한 서면을 「민사소송법」에 따라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를 제출한 등록사용자에게 전자문서의 출력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송달을 받을 자가 「민사소송법」 제181조, 제182조 또는 제192조에 해당하는 경우
2. 송달을 받을 자가 제1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장애나 그 밖의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법원사무관등이 등재된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그 출력서면을 당사자에게 송

를 통해 전자적으로 통지하는 방식이다.[107]

우편송달은 우편송달부를 출력하는 시점에 송달처리가 이루어지고, 전자적 송달처리는 송달할 전자문서를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하는 것과 동시에 송달받을 자에게 그에 관한 통지를 모두 지칭하는 것으로 송달처리 버튼을 누름으로써 동시에 이루어지게 된다.

송달사무처리기관이 전자소송 비동의자에 대하여 우편송달방법으로 송달하여야 하는 전자문서(판결정본 등 제외)의 출력 및 송달 업무를 우정사업본부(한국우편사업진흥원)에서 대행하는 e-Post 서비스를 이용하여 송달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108][109][110][111]

달한 때에는 그 출력서면은 등재된 전자문서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출력하는 절차와 방법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되, 전자문서와 동일성이 확보되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107)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

③ 제1항에 따른 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전자문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고 그 사실을 송달받을 자에게 전자적으로 통지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송달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108)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9조(출력서면의 송달 등)

④ 법원사무관등은 법 제12조 제1항 에 따라 전자문서를 출력한 서면을 송달하는 경우「우편법」제15조 제3항,「우편법 시행규칙」제25조 제1항 제12호에서 정한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109) 우편법 제15조(선택적 우편역무의 제공)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고객의 필요에 따라 제14조에 따른 보편적 우편역무 외의 우편역무(이하 "선택적 우편역무"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통상우편물
2. 2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소포우편물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우편물의 기록취급 등 특수취급우편물
4. 우편과 다른 기술 또는 역무가 결합된 역무
5. 우편시설, 우표, 우편엽서, 우편요금 표시 인영이 인쇄된 봉투 또는 우편차량 장비 등을 이용하는 역무
6. 우편 이용과 관련된 용품의 제조 및 판매
7. 그 밖에 우편역무에 부가하거나 부수하여 제공하는 역무

③ 선택적 우편역무의 종류와 그 이용조건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110)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선택적 우편역무의 종류 및 이용조건 등)

5) 송달사유통지

송달한 기관은 송달이 어떻게 실시되었는지를 공증하는 송달에 관한 사유를 법원에 알려야 하는데,[112][113] 우편에 의한 송달에 있어서 송달에 관한 사유의 통지는 전자송달통지서에 의하고,[114] 송달불능된 때에는 송달에 관한 사유에 송달서류·명의인의 성명 외에 송달을 실시하기 위하여 갔던 장소, 그 연월일시, 실시하지 못한 사실과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우편집배원이 송달한 송달물의 송달결과는 휴대하는 전자통신기기의 송달결과 입력 프로그램에 우편송달통지서 작성요령[전산양식 A1402]과 같이 송달에 관한 사유와 결과를 입력하고 우정사업본부의 주전산기를 통하여 전송되어 자동적으로 법원의 재판사무시스템에 송달결과가 전송되어 등록된다.

즉 우편집배원이 송달을 완료하고 나서 법원에 제출하는 송달사유의 통지는 재판사무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입력되어 전산으로 처리・보존되므로 재판사무시스템에서 송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

① 법 제15조 제3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2. 전자우편 우체국 창구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로 접수된 통신문 등을 발송인이 의뢰한 형태로 출력·봉함하여 수취인에게 배달하는 제도

111) 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 구축사업은 판결정본 등 제외 전자문서도 e-Post 서비스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인데, 2022. 11. 18.부터 서울서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판결정본 등 제외 서면의 e-Post 서비스 시범실시를 하고 있다.

112) 민사소송법 제193조(송달통지)
송달한 기관은 송달에 관한 사유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법원에 알려야 한다.

113) 민사소송규칙 제53조(송달통지)
송달한 기관은 송달에 관한 사유를 서면으로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통지로 서면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114) 송달통지서 전산화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재판예규 제1719호(재일 2006-2)]
① 민사소송법 제176조 제2항에서 정한 우편에 의한 송달에 있어서 송달에 관한 사유의 통지는 전자송달통지서에 의한다.

나. 소의 제기

민사사건의 소송절차는 소의 제기에 의하여 개시되는데, 소제기 방식은 ①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115] ② 구술로써 또는 임의출석에 의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식,[116][117] ③ 지급명령,[118][119]) 제소전화해,[120][121] 및 조정[122] 등 다른 절차에 의하여 소송절차로 이행되는 방식이 있다.

---

115) 민사소송법 제248조(소제기의 방식)
소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제기한다.

116) 소액사건심판법 제4조(구술에 의한 소의 제기)
① 소는 구술로써 이를 제기할 수 있다.

117)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임의출석에 의한 소의 제기)
① 당사자쌍방은 임의로 법원에 출석하여 소송에 관하여 변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소의 제기는 구술에 의한 진술로써 행한다.

118) 민사소송법 472조(소송으로의 이행)
① 채권자가 제4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제기신청을 한 경우, 또는 법원이 제46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명령신청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②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119) 민사소송법 제466조(지급명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 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받은 경우에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지급명령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송달할 수 없거나 외국으로 송달하여야 할 때에는 법원은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다.

120) 민사소송법 제388조(소제기신청)
① 제387조의 경우에 당사자는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적법한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에 보내야 한다.

121) 민사소송법 제387조(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①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그 사유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
②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들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22) 민사조정법 제36조(이의신청에 의한 소송으로의 이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1. 제26조에 따라 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
2. 제27조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
3. 제30조 또는 제32조에 따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제34조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1) 소장 기재 사항 및 첨부 서류

원고는 소장에 소송의 주체인 당사자, 심판의 대상인 청구를 특정할 수 있도록 청구의 취지와 원인, 당사자의 주소 등을 적어야 하는데,[123][124] ① 당사자는 원고 및 피고가 누구인지 다른 사람과 구별할 수 있어야 하고, ② 판결의 주문 내용으로 소의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청구취지는 명확하고, 확정적이며, 간결하여야 하고, ③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성립원인인 사실에 해당하는 청구원인은 당해 소송의 청구를 다른 청구와 식별할 수 있도록 특정되어야 하며, 혼동 또는 오인을 일으키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소장에는 ① 사물관할[125][126], 인지액 등을 결정하는 기준인 소송목적의 값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 ② 기본적 서증 및 그 사본, ③

---

123) 민사소송법 제249조(소장의 기재사항)
①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
② 소장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24) 민사소송규칙 제2조(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의 기재사항)
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2. 서면을 제출하는 당사자와 대리인의 이름ㆍ주소와 연락처〔전화번호ㆍ팩시밀리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다음부터 같다〕
3. 덧붙인 서류의 표시
4. 작성한 날짜
5. 법원의 표시
②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제출한 서면에 적은 주소 또는 연락처에 변동사항이 없는 때에는 그 이후에 제출하는 서면에는 주소 또는 연락처를 적지 아니하여도 된다.

125) 민사소송법 제26조(소송목적의 값의 산정)
① 법원조직법에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관할을 정하는 경우 그 값은 소로 주장하는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값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값은 민사소송등인지법의 규정에 따른다.

126) 민사소송법 제27조(청구를 병합한 경우의 소송목적의 값)
①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여러 청구의 값을 모두 합하여 소송목적의 값을 정한다.
② 과실ㆍ손해배상ㆍ위약금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목적)이 되는 경우에는 그 값은 소송목적의 값에 넣지 아니한다.

송달료납부서, ④ 소장의 부본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송달료 예납 및 인지 납부

법원은 당사자에게 비용을 필요로 하는 소송행위에 대하여 그 비용을 미리 내게 할 수 있고, 당사자가 비용을 미리 내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소송행위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127] 상대방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는 소송서류를 제출하는 당사자는 법원에 송달료를 예납하여야 한다.

송달료의 예납절차는 송달료규칙 및「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판예규 제1824호(재일 87-4)]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① 수납은행에 현금 또는 송달료납부대행기관을 통한 신용카드 등에 의한 송달료를 납부하고, ② 관할법원에 송달료납부서를 제출하는 절차에 의한다.[128]

소장에는 인지를 붙이거나 소장에 인지를 붙이는 대신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고 관할 법원에 영수필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29][130][131]

---

127) 민사소송법 제116조(비용의 예납)
① 비용을 필요로 하는 소송행위에 대하여 법원은 당사자에게 그 비용을 미리 내게 할 수 있다.
② 비용을 미리 내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그 소송행위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28)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13조(납부서 등의 제출)
소장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납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모사전송ㆍ전산망으로 수령한 경우 포함) 송달료납부서를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항소장, 상고장, 항고(준항고 포함)장, 재항고(특별항고 포함)장(이하 "상소장 등" 이라 한다)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송달료납부서를 첨부하여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29)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5조(수입인지에 의한 세입금 납부)
② 국가에 납부할 수수료, 벌금, 과료, 과태료, 형사추징금, 소송비용 및 비송사건의 비용은 수입인지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30)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조(인지의 부착)
민사소송절차, 행정소송절차, 그 밖에 법원에서의 소송절차 또는 비송사건절차에서 소장이나 신청서 또는 신청의 취지를 적은 조서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이 법에서 정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다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지를 붙이는 대신 그 인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되, 신용카드

인지액의 산정기준은 소가,[132] 즉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일정한 비율 등으로 정해지는데,[133] 소송목적의 값은 청구취지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전부 승소할 경우에 직접 받게 될 경제적인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금액을 의미하고,[134] 민사소송법 제26조 제1항 및 제27조에 따라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하되,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에 의하여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135]

다. 관할

법원은 사건에 관하여 관할이 있어야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법원의 관할은 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때를 표준으로 정한다.[136]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는 경우 인지납부일,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과 납부대행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131)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9조(납부절차)

① 신청인등은 현금납부 또는 신용카드등에 의한 납부의 경우에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양식의 납부서, 영수증, 영수필확인서에 의하여 납부하고, 수납은행이나 인지납부대행기관은 그 중 영수증, 영수필확인서에 해당사항을 기입하여 신청인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하는 때에는 수납은행이나 인지납부대행기관은 영수증, 영수필확인서의 해당사항을 기재한 정보를 인터넷으로 제공하여 신청인등이 출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등은 제1항에 따라 수납은행이나 인지납부대행기관으로부터 교부받거나 출력한 영수필확인서를 소장등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32)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조(인지의 확인 등)

③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소장등의 첩부인지액 또는 현금이나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이하 "납부액"이라 한다)의 상당여부를 조사하여 소송목적의 값(이하 "소가"라 한다), 첩부하여야 할 인지액과 첩부한 인지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며, 제5조에 따른 조치를 한 후 첩부된 인지에 소인하여야 한다.

133)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소장)

① 소장[반소장 및 대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은 제외한다]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③ 소송목적의 값은「민사소송법」제26조 제1항 및 제27조에 따라 산정하되, 대법원규칙으로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134)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6조(소가산정의 원칙)

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가는 원고가 청구취지로써 구하는 범위내에서 원고의 입장에서 보아 전부 승소할 경우에 직접 받게 될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금액으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135) 소가산정의 기준은「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제2장 참조.

136) 민사소송법 제33조(관할의 표준이 되는 시기)

관할은 ① 관할 결정의 근거를 기준으로 법정관할(직분관할, 사물관할 및 토지관할)·지정(재정)·합의관할·변론관할로 분류되고, ② 관할의 성질, 효력의 강도에 따라 특정 법원만이 배타적으로 관할을 가지는 전속관할과 당사자 사이의 편의와 공평을 위하여 정해진 임의관할로 분류된다.

라. 전산입력 및 기록의 편성

법원은 재판사무에 관한 서류가 접수되면 재판사무시스템에 의하여 각 진행단계별로 일정한 사항을 전산입력하고, 재판사무에 관하여 작성되거나 제출된 관계서류 등의 총체를 의미하는 사건기록을 편성한다. 사건기록은 기록표지, 소송비용계산서, 기록목록 및 증거목록으로 구성된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소송절차에서는 법관, 사법보좌관 또는 법원사무관등이 모든 재판서와 조서 등을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하거나 그 서류를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전자문서가 아닌 형태로 제출한 서류를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137]

사건의 기록 전체를 전자문서화한다는 것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법원의 관할은 소를 제기한 때를 표준으로 정한다.

137)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사건기록의 전자문서화)

① 법관·사법보좌관 또는 법원사무관등은 민사소송등에서 재판서, 조서 등을 전자문서로 작성하거나 그 서류를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 법원사무관등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없으면 전자문서가 아닌 형태로 제출된 서류를 전자문서로 변환하고 사법전자서명을 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변환되어 등재된 전자문서는 원래의 서류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④ 전자문서가 아닌 형태로 제출된 서류를 전자문서로 변환·등재하는 절차와 방법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되, 원래의 서류와 동일성이 확보되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이로 된 일반적인 소송기록 대신에 전자기록을 만들어 사건기록을 전자기록으로 관리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를 전자기록화라 하고,[138] 이와 같이 사건기록이 전자기록으로 관리되는 사건을 전자기록사건이라 한다.[139]

민사소송에서의 전자기록화의 기준은 ① 제1심 소송사건 중 제1회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이 진행된 다음날까지 당사자 중 한 명이라도 전자소송 동의를 한 경우(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전자소송 동의가 간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조정신청사건이 제1심 소송사건으로 이행된 경우, ③ 전자독촉사건이 제1심 소송사건으로 이행된 경우[140] 등이다.[141]

---

138)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판예규 제1837호(재일 2012-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화"라 함은 전자장비를 이용하여 종이서류를 전자문서로 변환하는 작업을 말한다.
2. "전자기록화"라 함은 규칙 제2조 제3호에 정한 전자기록을 조제하는 작업을 말한다.
3. "전산등재"라 함은 재판사무시스템 또는 전자소송시스템에 정보를 전자적으로 등재하는 것을 말한다.
4. "아이디"라 함은 전자소송시스템에 사용자등록 시 본인 식별의 부호로서 사용자가 스스로 설정하고 법원행정처가 승인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한다.

139)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소송시스템"이란 법원행정처가 법 제3조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른 절차(다음부터 "민사소송 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전자문서를 작성ㆍ제출ㆍ송달하거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ㆍ데이터베이스ㆍ네트워크ㆍ보안요소 등을 결합시켜 구축ㆍ운영하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서 법 제2조 제2호 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한다.
2. "전자소송홈페이지"란 이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전자소송시스템에 의하여 구축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3. "전자기록"이란 법 제10조 및 이 규칙 제19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전자문서화 되는 사건의 기록을 말하고, 사건기록이 전자기록으로 관리되는 사건을 "전자기록사건"이라 한다.
4. "정보통신망"이란「전기통신기본법」제2조 제2호에 의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140)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판예규 제1837호

전자소송 사용자등록과 전자소송 동의를 한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는데,[142]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빈칸 채우기 방식(e-Form 양식)으로 입력하거나 미리 작성된 전자문서를 첨부하여 등재하는 방식으로 소송서류를 작성·제출할 수 있고, 전자문서가 아닌 서류는 스캔 등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43]

(재일 2012-1)] 제26조(전자독촉의 소송이행)

① 전자독촉사건에 대하여 채권자의 소제기신청, 법원의 소송절차회부결정 또는 채무자의 지급명령에 대한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고 인지가 보정된 경우, 전자독촉 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전자독촉 담당 사법보좌관의 완결공람을 거쳐 전자독촉기록을 본안의 관할법원에 전자적으로 송부한다. 다만 「민사조정법」 제5조의2 제1항에 따른 조정으로의 이행을 신청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 에 따른 관할법원에 송부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기록을 송부받을 법원이 전자적으로 사건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자독촉사건기록을 서면으로 출력·조제한 후 송부한다. 이 때 채무자가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기록에 가철한다.

141)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판예규 제1837호 (재일 2012-1)] 제27조(사건기록의 전자문서화 범위)

① 규칙 제19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전자기록화의 대상이 아닌 사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사자, 소송대리인, 규칙 제3조 제1호 내지 제4호 에서 정한 자 및 제출대행권이 있는 법무사 중 어느 누구도 다음 각목에서 정한 시기까지 전자소송 동의(다만 규칙 제25조 제1항 각 호의 자는 전자소송 동의를 한 것으로 본다)를 하지 아니한 사건

가. 제1심 소송사건: 제1회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이 진행된 다음날(소송도중 반소나 중간확인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본소나 본래의 소에서의 제1회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 전자소송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전자기록사건으로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민사조정법·가사소송법에 따른 조정신청 사건(조정신청 사건이 소송 또는 심판으로 이행된 경우를 포함한다)

142)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문서제출방법)

등록사용자로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등의 진행에 동의한 자는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장애가 있는 경우
2.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143)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전자문서의 작성·제출)

① 등록사용자는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빈칸 채우기 방식으

법원은 전자기록사건에서 전자소송에 동의하지 않은 당사자가 제출하는 종이서류는 접수사무관등이 전자화 작업을 하며,[144] 전자화 작업은 통상 접수사무관등이 재판사무시스템 내에서 전자화 요청을 하고 종이서류를 해철한 후 스캐너를 사용하여 스캔함으로써 종이서류를 전자문서로 변환하면, 이를 인수한 재판부의 법원사무관등이 전자화된 문서를 주장, 서증, 첨부로 분류하고 서증목록화 작업(서증번호와 서증명을 입력하는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완료된다.

마. 사건번호 및 사건명 부여

소장이 접수되면 사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부여하는데, 사건번호는「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판예규 제1824호(재일 87-4)] 제4장의 규정에 따라 부여되고, 사건명은 법원사무관등이 소장에 당사자가 표시하여온 사건명을 참조하여 부여한다.

바. 사건배당

사건배당은 원칙적으로 매일 접수를 마감한 즉시 또는 다음날 업무시작 즉시 실시하는데, 사무분담을 기초로 하여 담당재판부와 주심 판사를 동시에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145]

로 입력한 후, 나머지 사항을 해당란에 직접 입력하거나 전자문서를 등재하는 방식으로 소송서류를 작성·제출할 수 있다.

144)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판예규 제1837호(재일 2012-1)] 제28조(전자화 대상 및 담당자)

①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종이 형태로 제출된 때에는 전자화 작업을 한 다음 전자소송시스템에 전산등재한다.

1. 전자기록사건에서 전자소송 동의를 하지 아니한 당사자 또는 사건관계인이 제출하는 서류

4. 당사자의 전자소송 동의 또는 재판장 등의 전환명령에 의하여 전자기록사건이 된 경우, 그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서류

② 제1항 제1호의 서류는 접수사무관등(전자화담당자가 별도로 있는 법원은 전자화담당자)이 전자화작업을 한다.

③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서류 기타 기일접수 문건 및 교부영수증, 신청사건결정문(본안기록 등본 편철시), 소송계속 중에 제출하는 소송계속증명원 등은 담당재판부 법원사무관등이 전자화작업을 한다.

145)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재판예규 제1809호(재일 2003-4)]

사. 소장심사

소장에 법정의 인지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송달료를 예납하지 아니한 경우, 주소의 기재가 없는 등으로 피고에게 송달할 수 없는 경우 재판장 또는 재판장의 위임을 받은 법원사무관 등은 기간을 정하여 보정명령을 할 수 있고, 재판장은 원고의 인지보정명령 불이행, 송달료예납명령 불이행, 주소보정명령 불이행에 대하여 소장각하명령을 하여야 한다.[146][147][148]

아. 소장부본의 송달

법원은 소장심사 결과 소장에 소장각하명령의 대상이 있는 경우 외에는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바로" 송달하여야 한다.[149]

제10조(배당실시의 시기 등)

① 사건배당은 매일 접수를 마감한 즉시 또는 다음 날 업무시작 즉시 실시한다. 다만, 사건접수가 많은 법원에서는 오전·오후로 나누어 2차례 배당을 실시할 수 있다. 관계되는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협의가 종료된 후 즉시 실시한다.

② 사건배당은 사무분담에서 정한 바를 기초로 하여 담당재판부와 주심판사를 동시에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46) 민사소송법 제254조(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

① 소장이 제249조 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와 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위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원고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147) 민사소송에서 청구취지는 그 내용 및 범위가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그 특정 여부 역시 직권조사사항이다. 따라서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법원은 피고가 이의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직권으로 그 보정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7다233849 판결).

148) 소장 또는 상소장에 관한 재판장의 인지보정명령은 민사소송법에서 일반적으로 항고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같은 법 제409조 소정의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나 명령"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 이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특별규정도 없으므로, 인지보정명령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이의신청이나 항고를 할 수 없고 다만 보정명령에 따른 인지를 보정하지 아니하여 소장이나 상소장이 각하되면 그 각하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로 다툴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5. 6. 30.자 94다39086, 94다39093(참가) 결정].

149) 민사소송규칙 제64조(소장부본의 송달시기)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이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등으로 송달불능된 경우, 재판장 또는 재판장의 위임을 받은 법원사무관등은 원고에게 송달불능사유를 표시한 주소보정명령서를 송달하여야 하고,[150] 원고가 주소보정명령을 불이행하면 재판장은 원고에게 소장각하명령을 하여야 한다.[151]

자. 기일의 지정

법원은 당사자 기타 소송관계인과 법정 등 일정한 장소에 모여 소송행위를 함께 하기 위하여 미리 기일을 정하는데, 기일에는 소송행위의 목적에 따라 조정기일, 변론준비기일,[152] 변론기일(증인신문기일 등 증거조사기일 포함), 판결선고기일 등이 있다.

제1심법원은 필요한 경우 판결 선고 전까지 소송이 계속중인 사

---

① 소장의 부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바로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반소와 중간확인의 소의 소장,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참가·피고의 경정·청구의 변경 신청서 등 소장에 준하는 서면이 제출된 때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50) 송달사무처리의 효율화와 업무상 유의사항에 관한 예규[[재판예규 제1102호(재일 2003-9)] 제6조(소장 등의 송달시 유의사항)
② 소장 등의 소송서류가 송달불능되어 주소보정명령을 발하는 경우에는 주소보정명령서(전산양식 A1133, A1134)에 송달불능사유를 표시하여 송달하여야 한다. 변론기일에 법정에서 주소보정명령을 발하는 경우에도 당사자에게 송달불능사유를 알려 주어야 한다.

151) 민사소송법 제255조(소장부본의 송달)
① 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54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52) 민사소송법 제282조(변론준비기일)
① 재판장등은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하는 동안에 주장 및 증거를 정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변론준비기일을 열어 당사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② 사건이 변론준비절차에 부쳐진 뒤 변론준비기일이 지정됨이 없이 4월이 지난 때에는 재판장등은 즉시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하거나 변론준비절차를 끝내야 한다.
③ 당사자는 재판장등의 허가를 얻어 변론준비기일에 제3자와 함께 출석할 수 있다.
④ 당사자는 변론준비기일이 끝날 때까지 변론의 준비에 필요한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재판장등은 변론준비기일이 끝날 때까지 변론의 준비를 위한 모든 처분을 할 수 있다.

건을 결정으로 조정에 회부하여 조정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153][154]

판결은 원칙적으로 법원이 변론기일에 법정에서 당사자가 말로 판결의 기초가 될 소송자료(사실과 증거)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건을 심리하는 절차인 변론이 종결되어야 선고할 수 있고, 판결선고기일은 재판장이 변론을 종결하는 변론기일에 지정한다.[155]

피고가 ①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고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 ②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하여 무변론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156][157]

---

153) 민사조정법 제6조(조정 회부)
수소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을 결정으로 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154) 민사조정법 제15조(조정기일)
① 조정기일은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조정기일의 통지는 소환장을 송달하는 방법이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양쪽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신청일을 조정기일로 한다.

155) 민사소송법 제207조(선고기일)
① 판결은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선고하여야 하며, 복잡한 사건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도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4주를 넘겨서는 아니 된다.
② 판결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선고할 수 있다.

156) 민사소송법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①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의 취지를 피고에게 알려야 한다.
③ 법원은 답변서의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답변서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57) 민사소송법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① 법원은 피고가 제256조 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판장은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 외에는 “바로” 변론기일을 정하여야 하고,[158] 답변서가 제출되면 “바로” 사건을 검토하여 각 사건의 변론 개정시간을 구분하여 가능한 최단기간 안의 날로 제1회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159][160]

재판장의 변론기일지정은 ① 소장 또는 답변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태도, 주장과 쟁점의 난이도, 재판부의 업무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가장 빠른 시기에 시행되어야 하고, ②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에 비추어 실질적 변론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가장 이른 시기에 시행되어야 한다.[161]

피고에게 공시송달로 소장부본을 송달한 경우,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소송요건의 존부 등)이 있는 경우, 법률상 또는 성질상 무변론 판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하고, 답변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사건 중 피고가 명백히 다툴 가능성이 높은 사건(의료과오소송, 해고무효확인소송, 국제거래소송, 피고가 보험회사인 손해배상청구소송 등)과 같은 특정유형의 사건은 신속하게 변론기일을 지정함으로써 피고로 하여금 응소준비를 하게 할 필요가 있다.

재판장은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후 30일 이내에 피고로부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기일을 함께 통지할 수 있다.

158) 민사소송법 제258조(변론기일의 지정)
① 재판장은 제25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 외에는 바로 변론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재판장은 변론준비절차가 끝난 경우에는 바로 변론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159) 민사소송규칙 제39조(변론 개정시간의 지정)
재판장은 사건의 변론 개정시간을 구분하여 지정 하여야 한다.

160) 민사소송규칙 제69조(변론기일의 지정 등)
① 재판장은 답변서가 제출되면 바로 사건을 검토하여 가능한 최단기간 안의 날로 제1회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변론이 집중되도록 함으로써 변론이 가능한 한 속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당사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161) 편집대표 민일영, 김능환, 주석 민사소송법(1), 한국사법행학회 (2012. 3. 15.), 92-93.

터 답변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나 무변론판결을 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하여 제1회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함에 있어 제1회 변론기일과 선고기일을 일괄 지정할 수 있다.[162]

차. 무변론판결 선고기일의 통지와 취소

재판장은 피고에게 무변론판결 선고기일을 통지하였다 하더라도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무변론판결을 선고할 수 없으며, 지정된 무변론판결 선고기일을 취소하여야 한다.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부본을 송달할 때에 무변론판결의 선고기일을 함께 통지하는 방식(소장부본병행송달통지방식) 또는 답변서 제출기한인 소장부본 송달일로부터 30일이 지난 후에 따로 선고기일을 지정하여 통지하는 방식(답변서제출기한경과통지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소장부본병행송달통지방식의 ① 장점은 ㉠ 무변론판결의 선고기일을 최단 기간 내에 지정할 수 있고, ㉡ 선고기일을 별도로 통지하지 아니하여도 되며, ㉢ 다투는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로 하여금 조기에 소송준비에 착수하게 함으로써 소송절차의 진행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이고, ② 단점은 소장부본이 송달불능되거나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할 경우, 재판장이 기록을 심사한 결과 무변론판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 등으로 지정된 선고기일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답변서제출기한경과통지방식의 ① 장점은 송달불능이나 답변서

---

162) 제1회 변론기일 및 선고기일 일괄 지정에 관한 예규[재판예규 제921호(재민 98-10)] 제2조(변론기일 및 선고기일의 일괄지정)
재판장은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후 30일 이내에 피고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지 아니 하였으나(또는 피고가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사건 포함)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판결을 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하여 제1회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함에 있어 제1회 변론기일과 선고기일을 일괄 지정하여 당사자에게 [전산양식 A1603]과 같은 기일통지서를 송달할 수 있다. 다만, 소장에 보정하지 않으면 소장 각하의 대상이 되거나 자백간주 판결을 할 수 없는 등의 중대한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원고에게 먼저 그 흠결을 보정시킨 후 당사자에게 기일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출에 따라 선고기일 지정이 취소되는 문제점이 크게 줄어들고(이 방식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무변론판결 선고기일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답변서 제출 단계에서 재판장이 무변론판결 대상사건의 선별과 그에 대한 선고기일의 지정을 일괄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절차상 간명하다는 것이고, ② 단점은 무변론판결의 선고기일이 늦어지는 등 절차진행의 신속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것이다.

카. 당사자의 기일지정 및 변경 신청

당사자는 법원에 기일지정신청 및 기일변경신청을 할 수 있으나, 기일의 지정은 소송의 진행과 직접 관련되고, 소송의 진행에 관하여는 직권주의가 적용되므로 ① 2회 불출석 후 1개월 내에 하는 기일지정신청,[163] ② 소의 취하 또는 취하간주의 효력을 다투는 기일지정신청[164] 등을 제외한 당사자의 기일지정신청 및 기일변경신청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만 있다.

재판장은 직권발동 촉구의 의미만 있는 기일지정신청 및 기일변경신청에 대하여 기일지정 또는 기일변경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

---

163) 민사소송법 제268조(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① 양 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다시 변론기일을 정하여 양 쪽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새 변론기일 또는 그 뒤에 열린 변론기일에 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기일지정신청에 따라 정한 변론기일 또는 그 뒤의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④ 상소심의 소송절차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소심에서는 상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164) 민사소송규칙 제67조(소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
① 소의 취하가 부존재 또는 무효라는 것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기일지정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을 열어 신청사유에 관하여 심리하여야 한다.

정이 되면 적절한 기일을 지정하면 되나,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면 응답할 필요 없이 그대로 두면 된다.

한편 일본은 2022. 5. 25.[令和 4年 5月 25日] 법률 제48호로 민사소송법(民事訴訟法)을 개정하였는데, 제381조의2 내지 제381조의8로 민사소송이 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기간이 법정되는 심리절차인 법정심리기간소송절차(法定審理期間訴訟手続) 제도를 신설하여(令和 8年 5月 24日 시행 예정) ① 당사자에게 법정심리기간소송절차의 심리 및 재판을 법원에 신청할 권리, ② 신청기한, ③ 대상사건, ④ 방식, ⑤ 변론기일 등 지정(법정심리기간소송절차의 결정일로부터 2주 이내에 구두변론기일 등 지정, 구두변론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구두변론 종결일 지정, 구두변론 종결일로부터 1월 이내에 선고기일 지정 등) 등을 규정하고 있다.[165][166][167]

---

165) 일본 민사소송법 제381조의2 내지 제381조의8에 대한 해설은 垣内秀介, 民事訴訟法における手続の簡易化に関する覚書-法定審理期間訴訟手続の創設を契機として, 法曹時報(第74巻 第6号, 令和 4年 6月 1日), 法曹会, 1203-1236.

166) 第七編　法定審理期間訴訟手続に関する特則

（法定審理期間訴訟手続の要件）

第三百八十一条の二　当事者は、裁判所に対し、法定審理期間訴訟手続による審理及び裁判を求める旨の申出を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次に掲げる訴えに関しては、この限りでない。

一　消費者契約に関する訴え

二　個別労働関係民事紛争に関する訴え

2　当事者の双方が前項の申出をした場合には、裁判所は、事案の性質、訴訟追行による当事者の負担の程度その他の事情に鑑み、法定審理期間訴訟手続により審理及び裁判をすることが当事者間の衡平を害し、又は適正な審理の実現を妨げると認めるときを除き、訴訟を法定審理期間訴訟手続により審理及び裁判をする旨の決定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当事者の一方が同項の申出をした場合において、相手方がその法定審理期間訴訟手続による審理及び裁判をすることに同意したときも、同様とする。

3　第一項の申出及び前項後段の同意は、書面で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口頭弁論又は弁論準備手続の期日においては、口頭ですることを妨げない。

4　訴訟が法定審理期間訴訟手続に移行したときは、通常の手続のために既に指定した期日は、法定審理期間訴訟手続のために指定したものとみなす。

（法定審理期間訴訟手続の審理）

第三百八十一条の三　前条第二項の決定があったときは、裁判長は、当該決定の

日から二週間以内の間において口頭弁論又は弁論準備手続の期日を指定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裁判長は、前項の期日において、当該期日から六月以内の間において当該事件に係る口頭弁論を終結する期日を指定するとともに、口頭弁論を終結する日から一月以内の間において判決言渡しをする期日を指定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前条第二項の決定があったときは、当事者は、第一項の期日から五月（裁判所が当事者双方の意見を聴いて、これより短い期間を定めた場合には、その期間）以内に、攻撃又は防御の方法を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4　裁判所は、前項の期間が満了するまでに、当事者双方との間で、争点及び証拠の整理の結果に基づいて、法定審理期間訴訟手続の判決において判断すべき事項を確認するものとする。

5　法定審理期間訴訟手続における証拠調べは、第一項の期日から六月（裁判所が当事者双方の意見を聴いて、これより短い期間を定めた場合には、その期間）以内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6　法定審理期間訴訟手続における期日の変更は、第九十三条第三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やむを得ない事由がある場合でなければ、許すことができない。

（通常の手続への移行）

第三百八十一条の四　次に掲げる場合には、裁判所は、訴訟を通常の手続により審理及び裁判をする旨の決定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一　当事者の双方又は一方が訴訟を通常の手続に移行させる旨の申出をしたとき。

二　提出された攻撃又は防御の方法及び審理の現状に照らして法定審理期間訴訟手続により審理及び裁判をするのが困難であると認めるとき。

2　前項の決定に対しては、不服を申し立てることができない。

3　訴訟が通常の手続に移行したときは、法定審理期間訴訟手続のため既に指定した期日は、通常の手続のために指定したものとみなす。

（法定審理期間訴訟手続の電子判決書）

第三百八十一条の五　法定審理期間訴訟手続の電子判決書には、事実として、請求の趣旨及び原因並びにその他の攻撃又は防御の方法の要旨を記録するものとし、理由として、第三百八十一条の三第四項の規定により当事者双方との間で確認した事項に係る判断の内容を記録するものとする。

（控訴の禁止）

第三百八十一条の六　法定審理期間訴訟手続の終局判決に対しては、控訴をすることができない。ただし、訴えを却下した判決に対しては、この限りでない。

（異議）

第三百八十一条の七　法定審理期間訴訟手続の終局判決に対しては、訴えを却下した判決を除き、電子判決書の送達を受けた日から二週間の不変期間内に、その判決をした裁判所に異議を申し立て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その期間前に申し立てた異議の効力を妨げない。

2　第三百五十八条から第三百六十条まで及び第三百六十四条の規定は、前項の異議について準用する。

（異議後の審理及び裁判）

第三百八十一条の八　適法な異議があったときは、訴訟は、口頭弁論の終結前の程度に復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は、通常の手続によりその審理及び裁判をす

타. 당사자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당사자는 소장과 답변서를 제출하는 외에 변론을 서면으로 준비하여야 하고,[168][169] 준비서면에는 ①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② 상대방의 청구와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에 대한 진술 등을 적어야 하고, 재판장은 당사자의 공격방어방법의 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쟁점과 주장을 정리한 요약준비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170]

법원은 심리를 마치고 나면 판결을 하여야 하는데,[171] 판결서에는

る。
2 前項の異議の申立ては、執行停止の効力を有する。
3 裁判所は、異議後の判決があるまで、法定審理期間訴訟手続の終局判決の執行の停止その他必要な処分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4 第三百六十二条及び第三百六十三条の規定は、第一項の審理及び裁判について準用する。

167) 전휴재·김성화·서용성, 민사전자소송 시행 10년, 그 성과와 전망-민사 본안소송을 중심으로, 사법정책연구원 (2022년), 99.

168) 민사소송법 제272조(변론의 집중과 준비)
① 변론은 집중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변론을 서면으로 준비하여야 한다.
② 단독사건의 변론은 서면으로 준비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준비하지 아니하면 진술할 수 없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69) 민사소송법 제274조(준비서면의 기재사항)
① 준비서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1. 당사자의 성명ㆍ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2.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3. 사건의 표시
4.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5. 상대방의 청구와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에 대한 진술
6. 덧붙인 서류의 표시
7. 작성한 날짜
8. 법원의 표시
②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사실상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방법과 상대방의 증거방법에 대한 의견을 함께 적어야 한다.

170) 민사소송법 제278조(요약준비서면)
재판장은 당사자의 공격방어방법의 요지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변론을 종결하기에 앞서 당사자에게 쟁점과 증거의 정리 결과를 요약한 준비서면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71) 민사소송법 제198조(종국판결)
법원은 소송의 심리를 마치고 나면 종국판결을 한다.

① 당사자(주소), ② 주문, ③ 청구의 취지, ④ 이유, ⑤ 변론종결일, ⑥ 판결선고일 등을 기재하고,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여야 한다.[172]

2. 법원 사건관리방식

가. 표준 사건관리방식

「사건관리방식에 관한 예규」 [재판예규 제1646호(재일 2001-2)]는, 법원에 소장이 접수되어 제1심판결이 선고되는 절차에 관하여 ① 소장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이하 '접수사무관등')의 소장 심사, ② 재판부 소속 법원사무관등(이하 '참여사무관등')의 소장 심사와 심사 후 조치, ③ 참여사무관등의 재판장에 대한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의 신속한 보고, ④ 참여사무관등의 소장부본의 송달, ⑤ 참여사무관등의 공시송달 사건의 처리, ⑥ 참여사무관등의 답변서 미제출 사건의 처리, ⑦ 참여사무관등의 답변서가 제출된 경우의 조치, ⑧ 재판장의 사건처리방향 결정, ⑨ 재판장과 참여사무관등의 변론의 준비, ⑩ 재판장의 기록 검토, ⑪ 재판장의 변론기일의 운영, ⑫ 증거 신청 및 제출 기회 부여, ⑬ 변론기일의 증거조사, ⑭ 선고기일의 운영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접수사무관등은 ① 소장 심사 및 보정 촉구에 있어서 소송목적의

---

172) 민사소송법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① 판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주문
3.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
4. 이유
5. 변론을 종결한 날짜. 다만,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는 날짜
6. 법원
②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

값 산정과 인지액의 적정 여부, 송달료, 관할 및 필수적 기재사항과 연락처의 기재, 기본적 서증 및 그 사본의 첨부 여부에 유의하여 소장을 심사하고, 흠결사항이 있을 때에는 제출자에게 보정을 촉구하여야 한다.

참여사무관등은 ② 소장 심사와 심사 후 조치에 있어서 ㉮ 소장 심사는 ㉠ 당사자표시의 적정 여부, ㉡ 필수 첨부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소송위임장 등 각종 자격증명서류)의 첨부 여부, ㉢ 소송목적의 값 산정과 인지액의 적정 여부, ㉣ 사물관할, 토지관할, 전속관할의 유무, ㉤ 청구취지 중 누락 부분(지연손해금 기산일 또는 별지 등) 유무, ㉥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의 부합 여부, ㉦ 기본적 서증의 첨부 여부, ㉧ 소장에 기재된 당사자표시와 전산시스템에 입력된 내용의 일치 여부, ㉨ 사건유형별 요건사실 등 기타 재판부에서 협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하여야 하고, ㉯ 소장 심사 결과, ㉠ 관할위반이 분명한 경우 즉시 이송결정 초안을 작성하여 기록과 함께 재판장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 소장에 흠결이 있는 경우 참여사무관등 또는 재판장의 명의로 보정명령을 발하되, 소장각하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참여사무관등 명의로 보정권고를 하며,[173] ㉢ 소장의 흠결을 보정할 수 없거나 보정명령을 하였음에도 보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즉시 재판장에게 소장각하명령 초안과 함께 기록을 인계한다.

참여사무관등이 ④ 소장부본의 송달을 함에 있어서 ㉠ 소장의 형식적 기재사항에 관한 보정을 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이 배당되는 즉시 소장부본, 소송절차안내서(전산양식 A1176)와 답변서요

173) 민사소송규칙 제5조(소송서류의 접수와 보정권고)
① 당사자, 그 밖의 소송관계인이 제출하는 소송서류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접수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소송서류를 접수한 공무원은 소송서류를 제출한 사람이 요청한 때에는 바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법원사무관 등은 접수된 소송서류의 보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적하고 보정을 권고할 수 있다.

약표(전산양식 A1510)[174]를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 송달불능 사건의 경우 참여사무관등의 명의로 주소보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참여사무관등이 ⑥ 답변서 미제출 사건의 처리를 함에 있어서 ㉠ 답변서가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의 제출기간 안에 제출되었는지

---

174)

<답변서 요약표>

사건번호 : 20　　가단

구분	피고의 의견 요약 (해당 란에 ☑ 표시)
1.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 전부 인정 ☐ 일부 다툼 (답변의 요지 :　　) ☐ 전부 다툼 (답변의 요지 :　　)
2. 화해[1]·조정[2]	☐ 희망함 ☐ 희망 않음
3. 소송요건 흠결 유무	☐ 관할 위반 주장 ☐ 이송 신청 ☐ 기타 소송요건 흠결(　　) ☐ 해당 없음
20 .　.　.	
작성자　　(서명 또는 ㊞)	
(연락처　　)	

※ 사건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서 요약표>의 1항 내지 3항의 해당 항목에 ☑ 표시를 한 다음, 답변서의 표지 다음 장(표지가 없는 경우에는 맨 앞장)에 붙여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소송상 화해라 함은 소송의 계속 중에 수소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 앞에서 당사자가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상호 그 주장을 양보함에 의하여 다툼을 해결하는 소송상 합의를 말합니다.

2) 민사조정제도란 민사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중립적인 제3자가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당사자가 쉽게 협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쟁해결방법으로서,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툼 있는 사건에 대하여 소송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든 1회 이상 조정에 회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고, ㉡ 답변서가 제출기간 안에 제출되지 아니한 사건(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한 사건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무변론판결 선고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 후 바로 재판장에게 그 검토결과를 보고하고 기록을 인계하여야 한다.

참여사무관등이 ⑦ 답변서가 제출된 경우의 조치를 함에 있어서 ㉮ 답변서의 심사 범위는 ㉠ 민사소송법과 민사소송규칙에 규정된 기재사항이 있는지 여부(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답변이 적혀 있는지 여부 포함), ㉡ 관할위반의 항변 유무, ㉢ 당사자의 조정의사 유무를 포함하여 조정회부가 상당한지 여부, ㉣ 관련 사건에 관한 기재가 있는지 여부, ㉤ 기타 재판부에서 협의된 검토사항이 되고, ㉯ 심사 후 조치로는 ㉠ 형식적 답변서만 제출된 경우 실질적 답변서의 제출을 촉구하는 보정권고를 하고, ㉡ 답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면 바로 답변서를 기록과 함께 재판장에게 인계하고, 사건분류에 대한 의견(이송, 조기조정회부, 변론기일지정 등)을 포함하여 답변서 심사와 관련된 사항을 재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 답변서 심사 후 당해 사건에 필수적인 증거신청이 누락된 경우 직접 보정권고를 하거나 석명준비명령[175][176] 초안을 작성하여 기록과 함께 인계할 수 있다.

재판장은 ⑧ 사건처리방향 결정을 함에 있어서 ㉮ 기록을 검토한

---

175) 민사소송법 제136조(석명권ㆍ구문권 등)
① 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고, 증명을 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
② 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알리고 제1항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재판장에게 상대방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법원은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76) 민사소송법 제137조(석명준비명령)
재판장은 제136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에게 설명 또는 증명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사항을 지적하고 변론기일 이전에 이를 준비하도록 명할 수 있다.

후 가능한 최단기간 안의 날로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 화해적 분쟁해결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의 경우 변론기일 지정 전 조정에 회부할 수 있으며, ㉰ ㉠ 쟁점과 주장내용이 복잡하거나 방대한 사건, ㉡ 전문적인 분야나 새로운 형태의 법률관계에 관한 사건, ㉢ 주장 자체가 불분명하거나 서로 모순되는 사건, ㉣ 증거가 많고 복잡하여 입증계획 등을 사전에 협의할 필요가 있는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할 수 있다.

재판장은 ⑪ 변론기일의 운영에 있어서 ㉠ 변론기일은 가능한 한 시간대를 세분하여 시차를 두고 기일을 지정하되, 충분한 변론시간이 확보되어야 하고, ㉡ 제1회 변론기일에서 기록을 통해 파악한 사안의 개요를 제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이를 보충하게 하는 방법 등으로 쟁점을 정리하며, ㉢ 원활한 절차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변론기일의 횟수 및 시간, 준비서면의 형식 및 제출기간, 증거의 신청기간 및 조사방법 등에 관한 절차협의를 할 수 있다.

재판장은 ⑭ 선고기일의 운영에 있어 ㉠ 이미 정한 선고기일에 판결 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에 선고기일을 변경하여야 하고, ㉡ 선고기일을 변경하는 경우, 참여사무관등에게 바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나. 사건관리 개요도 및 진행단계별 사건현황표

민사소송법 및 「사건관리방식에 관한 예규」에 따른 표준적인 사건관리 및 심리구조의 개요는 아래 [사건관리 개요도]와 같고, 법관 및 참여사무관등이 사용하는 전산시스템에 표시되는 사건진행단계의 구분은 아래 [진행단계별 사건현황표]와 같다(사건관리 개요도에 표시된 A 내지 D의 영문표시는 진행단계별 사건현황표에 기재된 각 진행단계의 표시부호에 상응한다).[177]

177)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Ⅱ], 법원행정처 (2017년), 1060.

[사건관리 개요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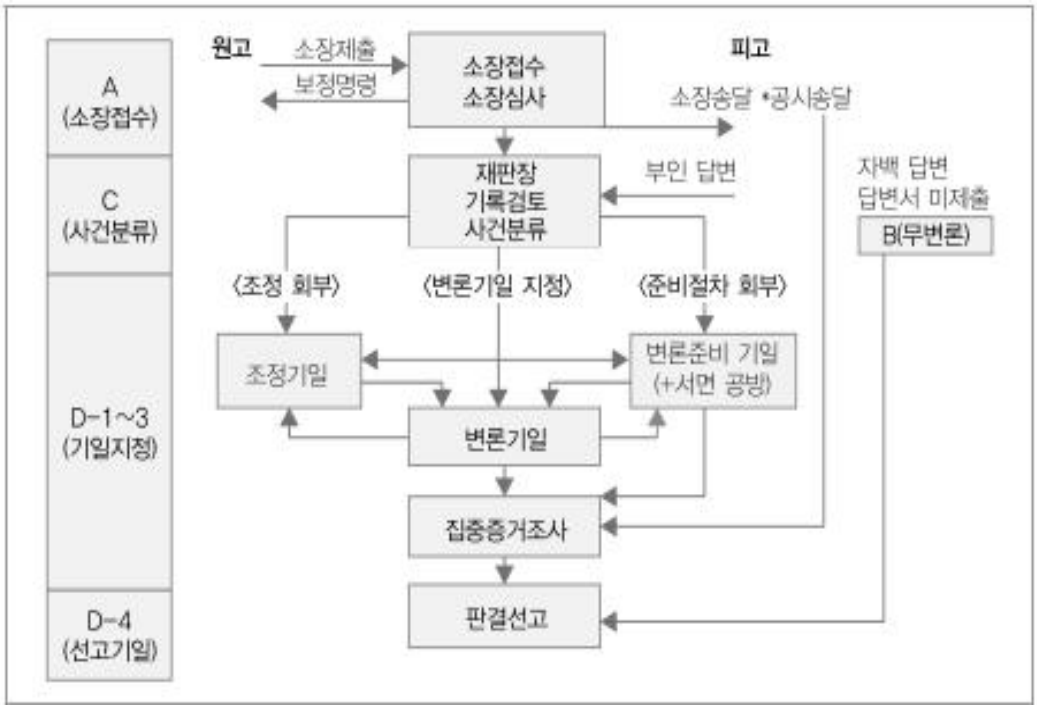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Ⅱ] 제1061면, 법원행정처 (2017년)]

[진행단계별 사건현황표]

진행단계		사건수
A. 소장부본 송달중	A-1. 소장접수 사건	
	A-2. 소장부본 송달중 사건	
	A-3. 주소보정중 사건	
	A-4. 답변서 대기중 사건(소장송달된 사건)	
B. 답변서 미제출	B-1. 무변론선고 대상사건	
	B-2. 보정중 사건	
C. 재판장검토 대상사건	C-1. 답변서 제출 사건	
	C-2. 공시송달 진행사건	
D. 기일이 지정된 사건	D-1. 변론기일(공시송달, 증인, 일반 사건)지정사건	
	D-2. 조정기일(조정/검증/감정기일 지정사건)	
	D-3. 변론준비기일	
	D-4. 선고기일(무변론판결 대상사건 제외)	
E. 기일지정 대기사건	E-1. 서면공방	
	E-4. 결정, 명령, 소취하 등 확정/이의 대기	
총계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Ⅱ] 제1061면, 법원행정처 (2017년)]

Ⅳ. 민사소송 절차의 자동화 기반(인프라)

1. 전자소송 자동화 단계

가. 소송당사자 사용 전자소송홈페이지 구성

1)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개요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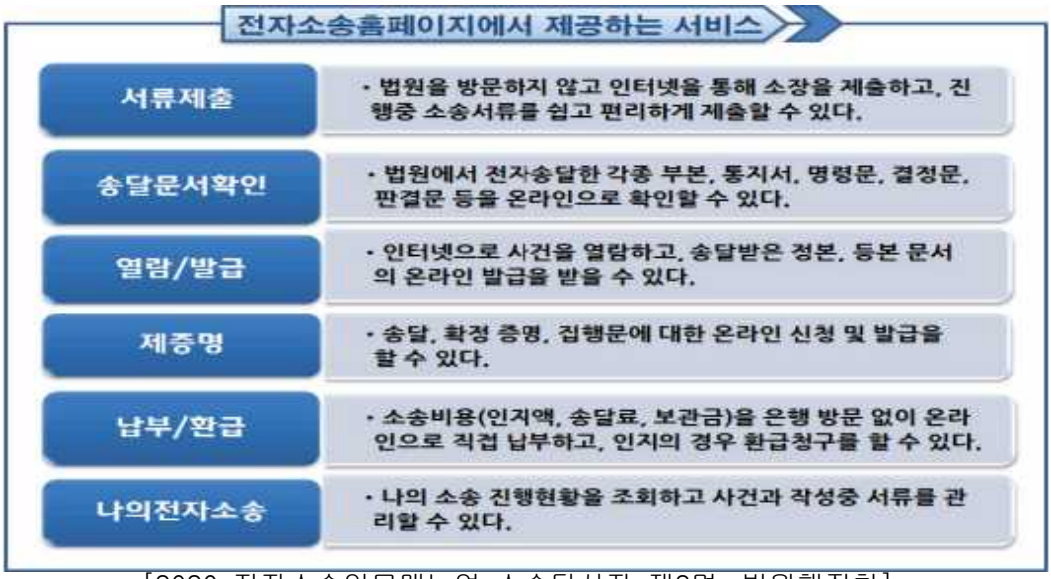

[2020 전자소송업무매뉴얼 소송당사자 제2면, 법원행정처]

2) 전자소송사건등록과 사건열람 등의 관계

전자소송인증번호로 사건등록을 하면 전자소송홈페이지>나의전자소송>'나의사건관리' 메뉴의 '진행중 사건'으로 등록되고, 사건기록열람, 전자문서제출, 소송비용납부, 전자송달 확인 등이 가능하다.

3) 소장 제출

가) 소장 제출 완료 기본 과정

소장은 전자소송홈페이지 > 서류제출 > 민사서류 - 소장 선택을 선택하고, ① 전자소송동의, ② 문서작성 - 전자서명 - 소송비용납부 - 문서제출 과정으로 제출된다.

나) 전자소송동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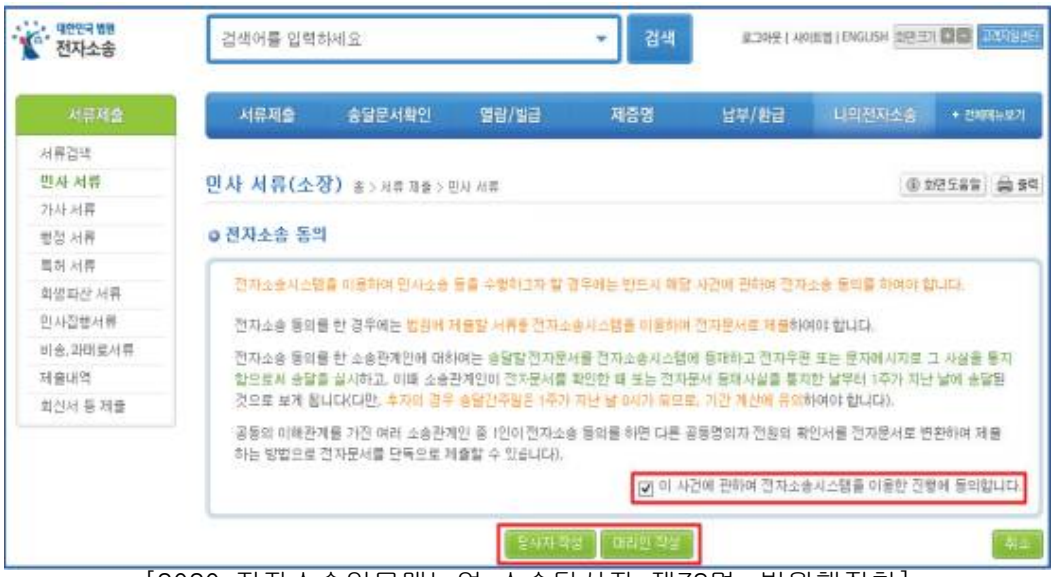

[2020 전자소송업무매뉴얼 소송당사자 제78면, 법원행정처]

다) 문서작성

(1) 사건기본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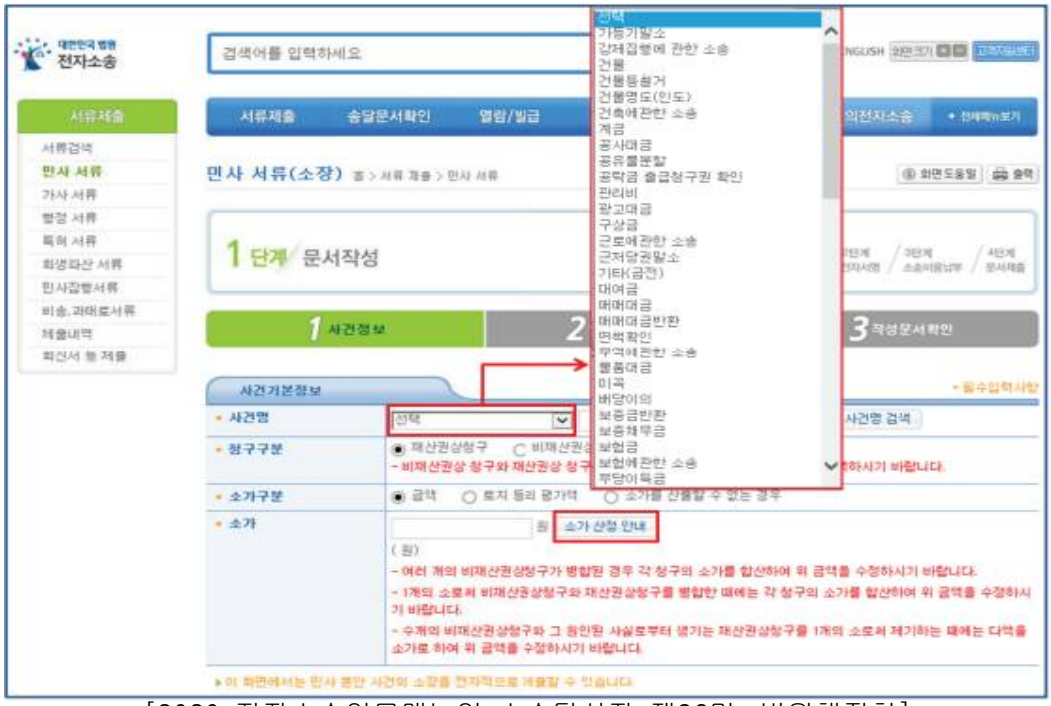

[2020 전자소송업무매뉴얼 소송당사자 제96면, 법원행정처]

사건정보기본란에 입력된 정보에 따라 자동적으로 사물관할과 사건번호가 부여된다. 사건기본정보 화면에서 '사건명, 청구구분, 소가

구분'을 선택하고, 소가를 직접 입력한다. [소가산정안내]를 클릭하면 '소송비용계산'에서 소가산정, 인지액 및 송달료 계산을 할 수 있다.

'소송비용계산 > 소가산정' 탭 선택 - 소의 종류 선택 - 금액 입력 - [소가적용]을 클릭하면 소가란에 소가가 자동으로 입력된다.

[2020 전자소송업무매뉴얼 소송당사자 제97면, 법원행정처]

(2) 제출법원

[관할법원 찾기]에서 상대방 주소지의 시/구/군 명칭으로 관할 법원을 검색하고, [관할법원안내]에서 관할법원 안내 내용이 보인다.

[2020 전자소송업무매뉴얼 소송당사자 제102면, 법원행정처]

[전자소송홈페이지 사용자설명서 제1543면, 법원행정처]

(3) 당사자정보

[당사자입력]을 클릭하면 보이는 화면에 당사자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저장]을 클릭하면 당사자가 등록된다.

당사자 구분에서 원고 또는 피고를 선택하고 당사자 기본 정보(필수입력 사항)를 입력하면 된다.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는 필수입력사항이 아니고, 피고의 주소는 필수 입력사항이나 피고의 주소를 모르면 "□피고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 체크하세요"에 체크하면 된다.

(4)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입력

[작성예시]를 클릭하면 사건 유형에 따라 청구취지 작성예시문을 확인할 수 있고, [요건사실]을 클릭하면 청구원인 예시문을 확인할

수 있어 각 작성예시문을 참고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작성할 수 있다. 청구취지는 빈칸에 내용을 입력하여야 하고, 청구원인은 '직접입력'과 '내용파일첨부하기' 중 선택하여 작성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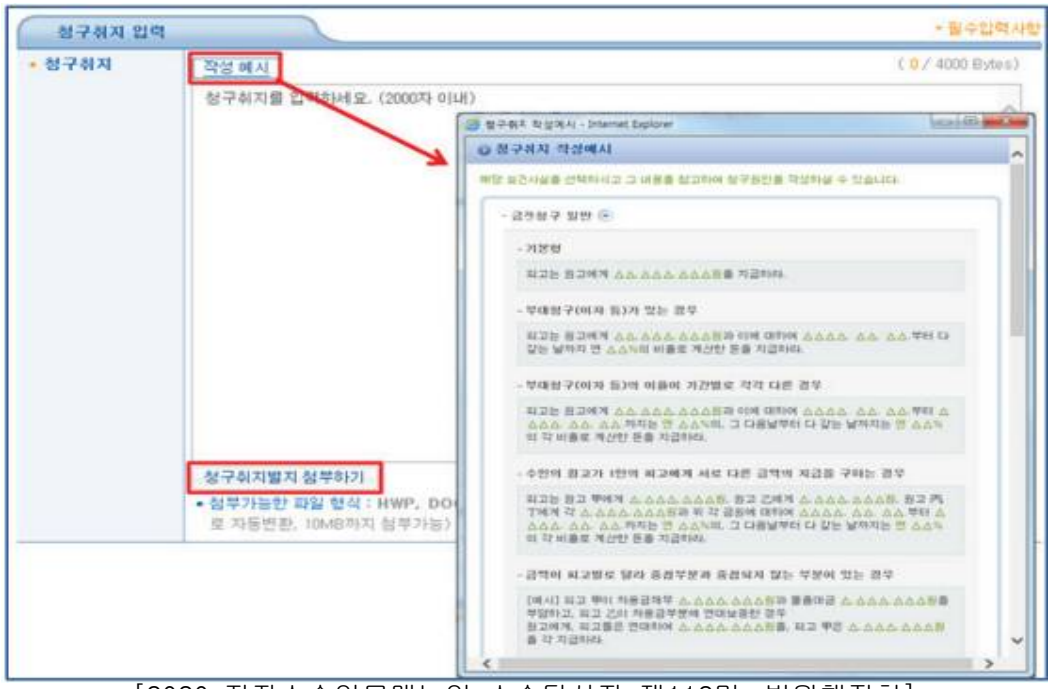

[2020 전자소송업무매뉴얼 소송당사자 제112면, 법원행정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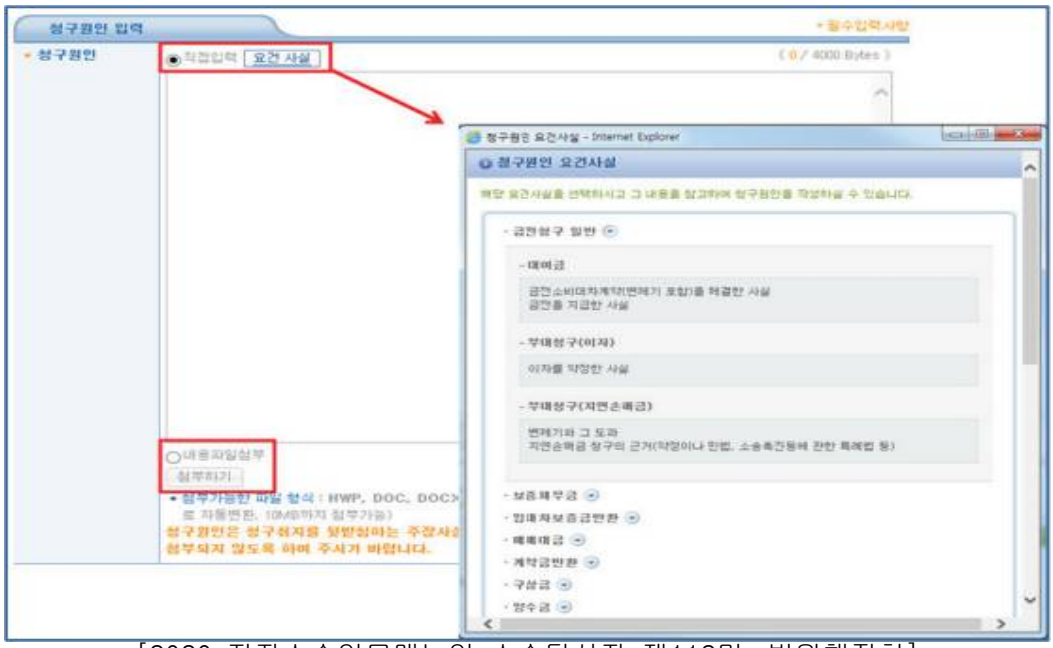

[2020 전자소송업무매뉴얼 소송당사자 제113면, 법원행정처]

(5) 입증/첨부서류

입증서류는 [입증서류제출] - [파일첨부] - [등록]의, 첨부서류는 [첨부서류] - [파일첨부] - [등록]의 각 과정으로 등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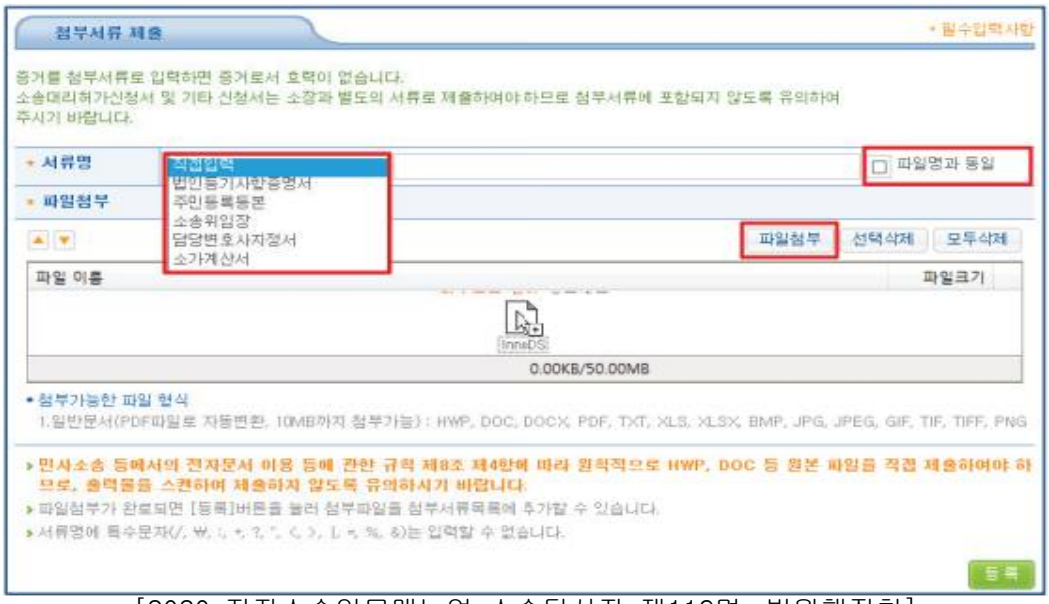

[2020 전자소송업무매뉴얼 소송당사자 제119면, 법원행정처]

라) 전자서명 및 작성완료

문서의 작성이 완성되면 소송문서, 입증서류 및 첨부서류에 전자서명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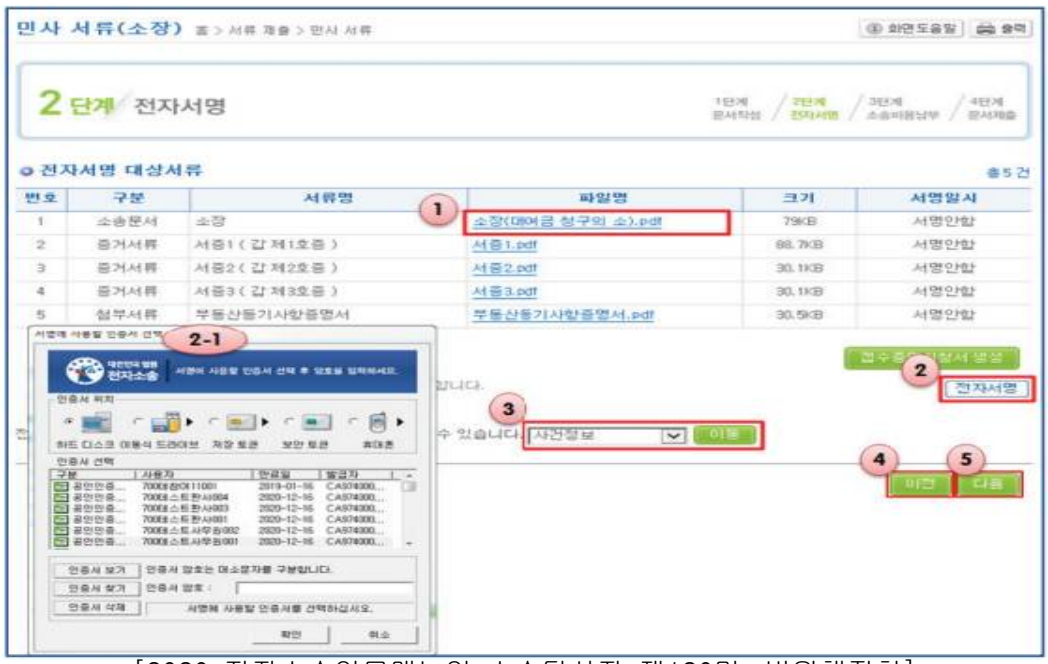

[2020 전자소송업무매뉴얼 소송당사자 제120면, 법원행정처]

① 전자서명 대상서류에서 선택한 파일을 소송문서뷰어를 통하여 미리 볼 수 있고, ② [전자서명]을 클릭하면 나타나는 전자서명창(②-1)에 전자서명을 하며, ③ [이동]을 클릭하여 다음 화면으로 이동하여 [작성완료]를 클릭하여야 문서작성이 완료되고, ⑤ [다음]을 누르면 소송비용납부 또는 문서제출 화면으로 이동한다.

마) 소송비용납부

[2020 전자소송업무매뉴얼 소송당사자 제135면, 법원행정처]

소장작성 단계에서는 소장에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자동으로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이 계산되고, 소송비용을 납부할 수 있다.

바) 문서제출

문서제출 화면에서 [제출]을 클릭하면 전자서명 창이 뜨고, 전자서명을 수행하면 소장이 제출된다.

[2020 전자소송업무매뉴얼 소송당사자 제143면, 법원행정처]

4) 답변서 제출

전자소송진행 동의와 사건등록을 한 다음, 전자소송홈페이지 > 서류제출 > 민사서류 > 민사본안 - 답변서를 선택하고 답변서는 파일첨부하기 방식으로 작성한다.

전자소송진행에 동의하지 아니한 사건은 전자소송진행 동의와 사건등록을 먼저 하여야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제출할 수 있다. 전자

서명과 문서제출은 소장의 경우와 같다.

[출처: 2020 전자소송업무매뉴얼 소송당사자 제147면, 법원행정처]

5) 주소보정서 제출

전자소송홈페이지 > 서류제출 > 민사서류 > 민사본안 - 주소보정서를 선택하고, 주소보정서는 빈칸채우기 방식으로 작성한다.

주소보정서는 주소보정명령을 받고 제출하거나 전자소송홈페이지 > 나의전자소송 > 나의사건관리에서 전자송달(송달불능)을 확인하여 주소보정명령을 받기 전에도 제출할 수 있다.

주소변동이 있는 경우 변동된 주소를 입력하지 않고 '주소변동 있음'과 '주민정보요청동의'를 체크하고 보정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실명확인을 거쳐 행정안전부 주민정보망에 주민등록정보 조회가 요청되고 기록뷰어에서 주민등록표가 조회되어 주소보정서와 함께 제출된다. 행정안전부 주민정보 연계방식의 주소보정서는 반드시 주소보정명령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이 가능하다.[178][179] 다만,

---

178) 주민등록법 제29조(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②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179)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②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신청은 구술·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무인민원발급기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

피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정확하지 않으면 주민등록정보가 조회되지 않을 수 있으며, 원고가 주소보정서를 제출하여야만 행정안전부 연계시스템에 주민정보조회요청이 되므로 주소보정서를 제출하기 전에 미리 주민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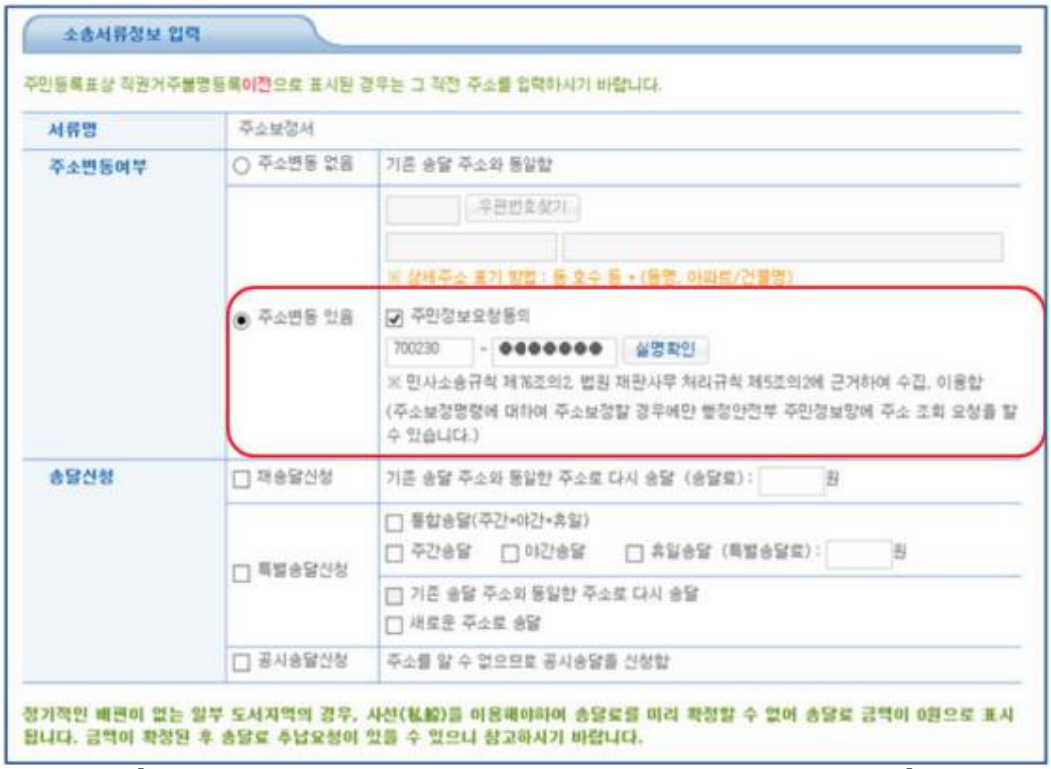

[2020 전자소송업무매뉴얼 소송당사자 제150면, 법원행정처]

6) 알림서비스

전자소송홈페이지 > 나의전자소송 > 알림서비스 메뉴 선택으로 신청한다. 알림서비스 신청을 하면 송달과 문건 접수시 휴대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로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이 자동으로 발송된다.

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신청하려면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기관 명의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 소속의 사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그 사유를 적은 신청서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 등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으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첨부서류 등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2021 민사 참여관 전자소송 업무매뉴얼 제6면, 법원행정처]

7) 열람

전자소송홈페이지 > 나의전자소송 - 열람/발급 - 나의사건열람에서 [열람]을 클릭하여 전자소송기록뷰어로 기록을 열람하고, [진행내역]을 클릭하면 대법원 사건검색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사건진행내역을 알 수 있다.

[2020 전자소송업무매뉴얼 소송당사자 제210면, 법원행정처]

나. 접수사무관등의 소장 전자 접수 및 소장심사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소장이 제출되면 접수사무관등은 재판사무시스템 [ERC100 전자접수확인]에서 소장을 클릭하여 소송문서뷰어와 [CV105. 소장심사체크리스트(접수)] 화면으로 소장심사를 한다.

[2021 민사 참여관 전자소송 업무매뉴얼 제10면, 법원행정처]

[CV105. 소장심사체크리스트(접수)] 화면에서 [심사완료]를 클릭하면 '소장'의 색상이 청색에서 적색으로 변하고, [소장접수확인]을 클릭하면 사건은 배당요청 절차로 진입하고, 배당된 사건은 재판부확인 상태로 진입한다.

다. 참여사무관등의 소장심사 등 업무

1) 소장심사

전자기록뷰어와 [CV215.소장심사체크리스트(참여)] 화면이 팝업이 되어 소장 내용을 확인하며 소장 심사를 진행한다.

[2021 민사 참여관 전자소송 업무매뉴얼 제13면, 법원행정처]

[CV427 사건메모등록] 화면에 메모 구분 코드로 '(9C)소가산정내역'을 추가하여 소가산정내역을 메모내용 창에 입력한다.

[2021 민사 참여관 전자소송 업무매뉴얼 제19면, 법원행정처]

인지, 송달료 등 소송비용 납부 내역은 전자기록뷰어 상단 [재판사무] - [지불내역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ERC200 소송비용지불내역 조회] 화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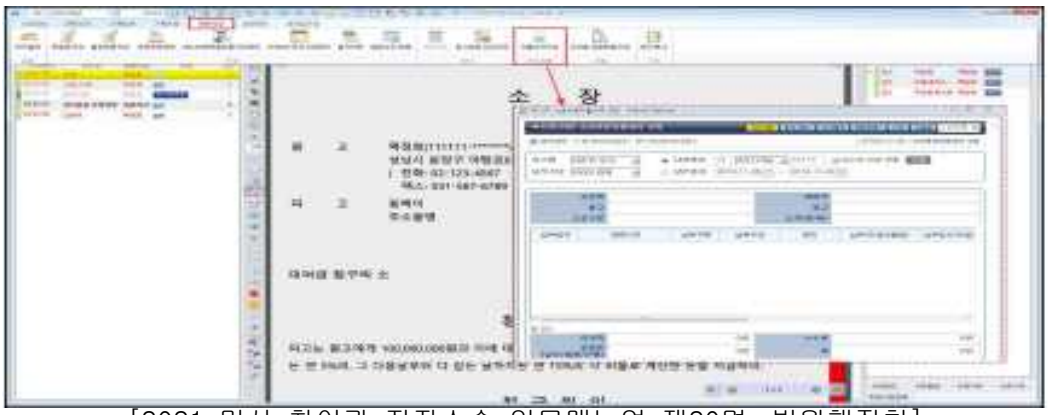

[2021 민사 참여관 전자소송 업무매뉴얼 제20면, 법원행정처]

2) 전자적 송달

전자송달이 실시되면 당사자에게 E-MAIL과 SMS(40글자, 신청자에 한함)로 아래와 같이 통지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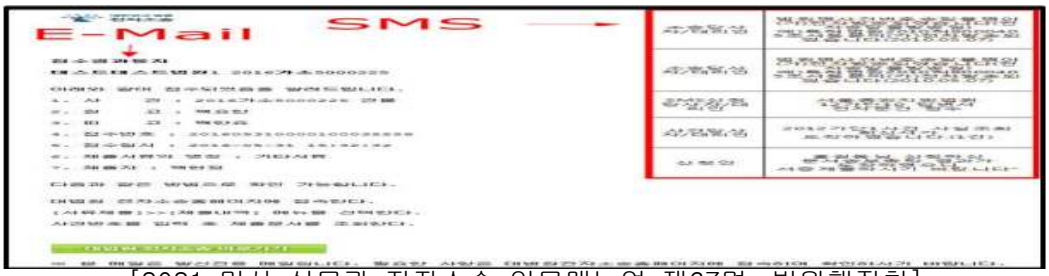

[2021 민사 실무관 전자소송 업무매뉴얼 제67면, 법원행정처]

3) 전자송달부

전자송달 시 송달물 생성과 동시에 송달자에게 송달 처리되는 전자송달물의 착오송달을 줄이기 위해 전자송달부를 도입하고 사용자별로 전자송달부 사용 여부를 관리할 수 있다.

전자송달부를 적용하면 로그인한 사용자가 전자송달물을 생성하고 발송하는 모든 화면에서 전자송달물을 생성하면 그 송달물이 즉시 발송되지 않고 [SD313 전자송달부] 화면을 통해 전송 처리할 때 전자송달물이 발송된다.

전자송달부 화면을 통해 전송처리 하지 않더라도 전자송달물의 생성시간 또는 [SD112 조서명령결정등 송달]에서의 처리시간에 따라 최소 60분에서 최대 119분 이후 배치가 실행되어 자동으로 발송 처리된다. 다만 [송달등록+출력[F9]] 버튼을 클릭해두어야 자동적으로 발송 처리된다.

4) e-Post 연계 송달

전자소송 사건이면서 우편송달 대상자에게 우편물에 대한 송달을 실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확인 메시지가 나타난다.

[2021 민사 실무관 전자소송 업무매뉴얼 제90면, 법원행정처]

[e-Post 연계]를 클릭하면 종이서류의 출력 없이 송달정보가 저장되고, [기존송달처리]를 클릭하여 우편송달방식으로 송달할 수 있다.

[SD302 우편송달부출력]에서 [미리보기처리]를 클릭하여 송달대상문서를 확인하고, [전송+출력]을 클릭하고, [확인]을 클릭하면 해당문서에 대한 정보가 한국우편사업진흥원에 통보된다.

[2021 민사 실무관 전자소송 업무매뉴얼 제91면, 법원행정처]

5) 기일 입력

전자소송 사건에서도 기일지정은 재판장의 지시를 받아 변론기일 등 기일을 입력하고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송달한다.

6) 무변론판결 선고기일

[CV212 무변론판결선고기일 미지정사건의 선고기일지정]에서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통지서를 출력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한다.

무변론판결 선고기일 이전에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 [CV503 기일결과입력]에서 기일결과를 '무변론판결취소', '다음 기일', '변론기일통지서', '생성및출력'을 각 선택하여 원고와 피고에게 변론기일 통지서를 송달한다.

7) 기일 통지서 송달

우편송달 대상자의 경우에는 e-Post 연계나 기존 송달처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송달을 실시할 수 있고, 전자송달 대상자인 경우 [저장 및 출력]을 클릭하면 일정 시간 내에 전자송달물이 자동으로 발송 처리되고 SMS와 e-mail이 전송된다.

8) 진행단계별 사건 관리

민사 사건의 진행단계별 통계와 해당 단계의 사건을 조회하고, 진

행단계의 사건 수를 클릭하면 해당 단계 사건 목록이 조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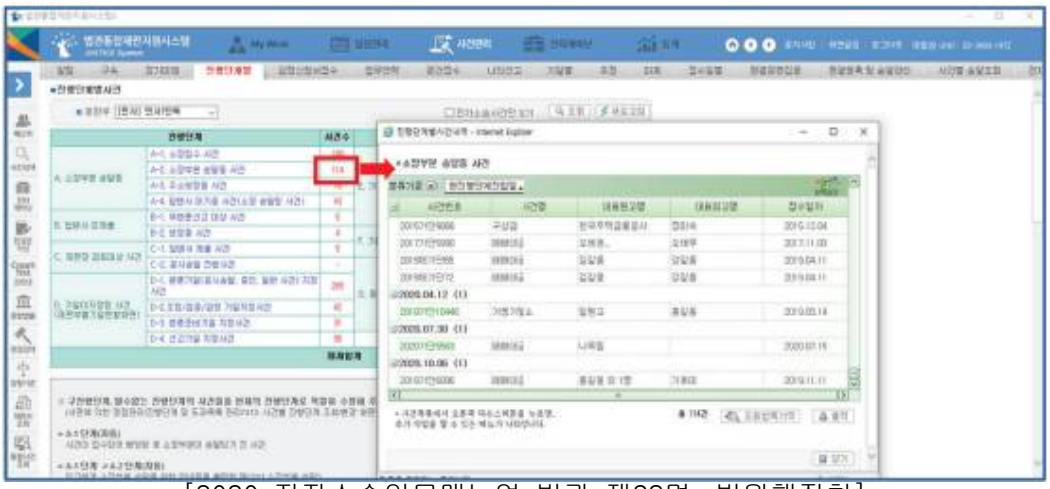

[2020 전자소송업무매뉴얼 법관 제28면, 법원행정처]

라. 전자소송 기록뷰어

민사사건에 대한 기록 및 서증정보를 조회하여 목록에서 선택한 특정 문서의 내용을 보여주는 화면이다. 사건의 기본정보, 사건관련 호출(기록정보, 기록관리), 문서 뷰어(viewer), 서증, 증인 등, 첨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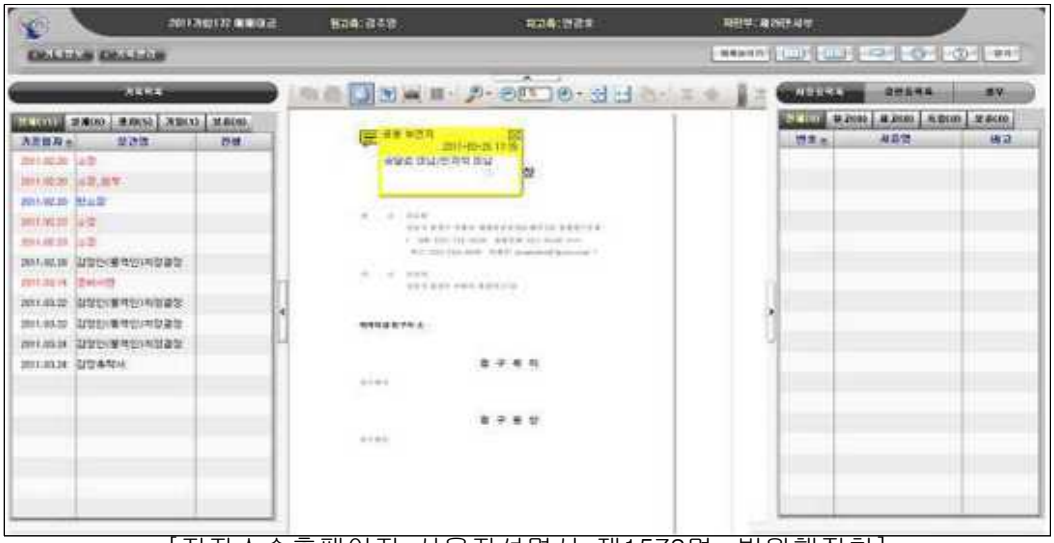

[전자소송홈페이지 사용자설명서 제1573면, 법원행정처]

마. 전자기록 목록 창 - 찾기(문자열 검색)

텍스트 파일이 원본으로 등록된 서류(PDF 파일 또는 스캔 문서 제외)의 특정 단어나 어구 등 문자열을 검색하면 해당 검색어를 포

함하는 서류 및 해당 페이지를 보여주고, 결과 목록에서 해당 문서를 클릭하면 바로 문서창으로 열람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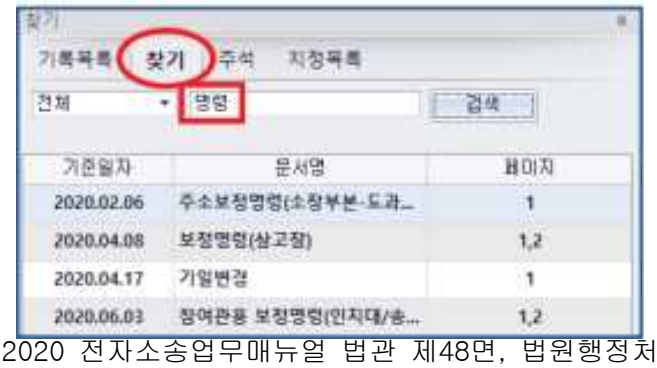

[2020 전자소송업무매뉴얼 법관 제48면, 법원행정처]

바. 판결문작성관리시스템

판결문작성관리시스템의 환경설정을 전자소송홈페이지에 빈간 채우기 방식으로 입력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내용을 적용하여 판결서에 주문과 이유를 생성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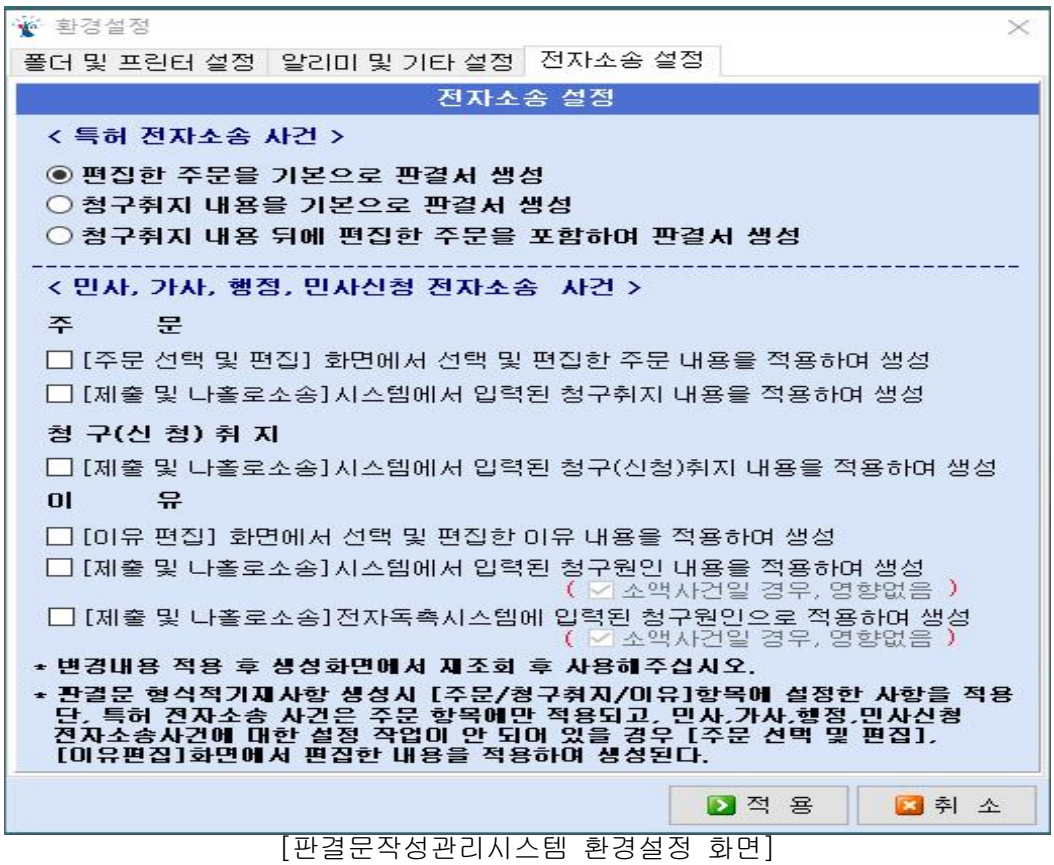

[판결문작성관리시스템 환경설정 화면]

2. 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 구축사업

가. 법무부 2022. 3. 8. 입법 예고

당사자는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소송절차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발행하는 행정·공공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여 서류를 발급받아 직접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2020년 주요 전자소송 서류 신청·제출 현황	
주민등록등·초본	약 250만 건
건축물대장	약 3만 건
법인등기사항증명	약 5.5만 건

법무부는 2022. 3. 8. 당사자가 행정·공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바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를 신설하는 개정안 입법을 예고하였다.[180][181]

나. 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

180) 법무부 2022. 3. 8. 보도자료 “소송서류 제출 절차가 간편해집니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181)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8조의2(등록사용자의 요구에 의한 본인 전자문서 공동이용)

① 등록사용자는 전자정부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민사소송등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인에 관한 전자문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 보유기관의 장에게 그 전자문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43조의2 제4항 각 호의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해당 전자문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에 따른 제한 또는 거절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인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자문서의 요구방법 및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사업 추진 배경 및 목표

1. 추진 배경 및 목표

Ⅱ 차세대전자소송 사업 현황

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구축 사업 추진 배경

1 종이기반 절차를 그대로 전자화한 복잡하고 노후화된 시스템 전면 개편 필요

- ✓ 현재의 사법업무시스템은 1999년 이후 부분적, 단계별 개발로 시스템 복잡도가 심각하고, 노후화와 비 표준으로 신기술을 수용할 수 없는 구조로 운영 한계에 직면
- ✓ 종이 기반 업무절차 및 시스템 구성으로 재판 사무의 비효율성 증가
- ✓ 최신 솔루션 적용 불가로 인한 사용자 불만 해결 필요

2 어렵고 까다로운 재판절차를 개선하고, 재판 접근성을 혁신

- ✓ 국민의 재판절차 및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과제들을 추진하기 위해 재판절차 및 환경에 대한 재검토 필요
- ✓ 소통하는 법원, 사법절차 투명성 확대를 위한 시스템적 기반 마련

3 전자소송시스템의 주요 문제점 해결 어려움에 직면

- ✓ 현 전자소송 시스템은 산발적 개발로 시스템간 수백 개 호출 관계가 존재하여 빈번한 장애 발생
- ✓ 전자 제출 시 서버 과부하 방지를 위해 제출 파일 용량을 10Mbyte(멀티미디어 50Mbyte)로 제한
- ✓ 오래된 한글 체계로 외국인 소송당사자명 등록 불가

4 급격한 사회변화와 기술진보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 마련

- ✓ 급속한 사회·경제적 변화와 기술발전의 추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업무절차 및 시스템의 근본적인 재검토 필요

대법원 - 10 - 차세대전자소송 추진단

[유아람, 앞의 글 10]

1. 추진 배경 및 목표

Ⅱ 차세대전자소송 사업 현황

	문제점 및 필요성	차세대 시스템 추진 방향
표준화	▪ 유사 중복 기능 다수 존재 – 사건유형별 작업 방법이 달라 직원들은 전입 후 혼란스럽고, 적응에 시간 소요 – 하나의 기능 개선을 위해 파편화되어 있는 여러 사건유형의 프로그램을 개별적으로 작업하여 기간 소요, 비효율	▪ 표준화에 기초하여 근본적인 문제 해결 – 사용자 입장에서 사건유형이 다르더라도 혼란과 혼선이 없도록 유사한 기능은 유사한 인터페이스로 처리 – 매우 유사한 기능이라면 유사한 인터페이스를 넘어 동일 프로그램으로 처리 – 사용자 혼란과 혼선이 없도록 통일감 있는 사용자 UI 제공 – 다양한 유사 중복 서식의 표준화, 체계적 관리 … 등
자동화	▪ 정보기술 발전과 전자소송 도입에도 불구하고 자동화 처리 가능한 절차의 근본적 개선 부족	▪ 전자소송 고유의 장점 극대화 ▪ 자동화 가능한 업무절차 적극 발굴 ▪ 규칙이 명확한 업무는 시스템으로 규칙을 설정하여 종래의 수작업을 자동화 추진

대법원 - 12 - 차세대전자소송 추진단

[유아람, 앞의 글 12]

[유아람, 앞의 글 13]

2) 민사소송 절차 자동화 관련 개선 예정 사항

[유아람, 앞의 글 16]

[유아람, 앞의 글 18]

[유아람, 앞의 글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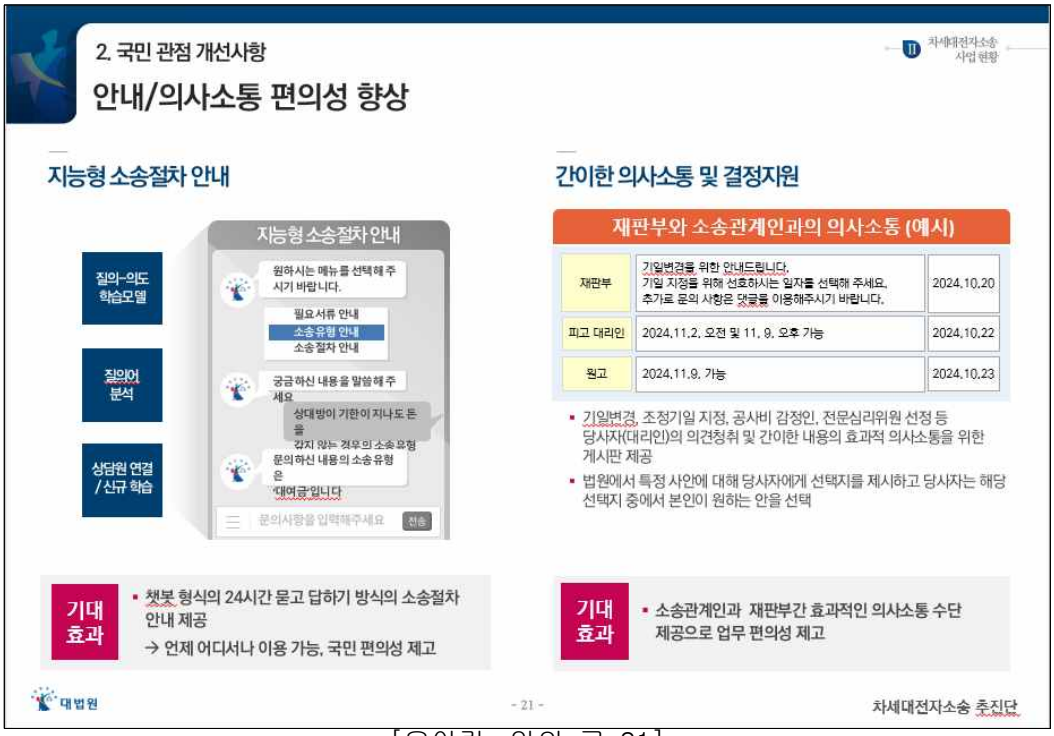

[유아람, 앞의 글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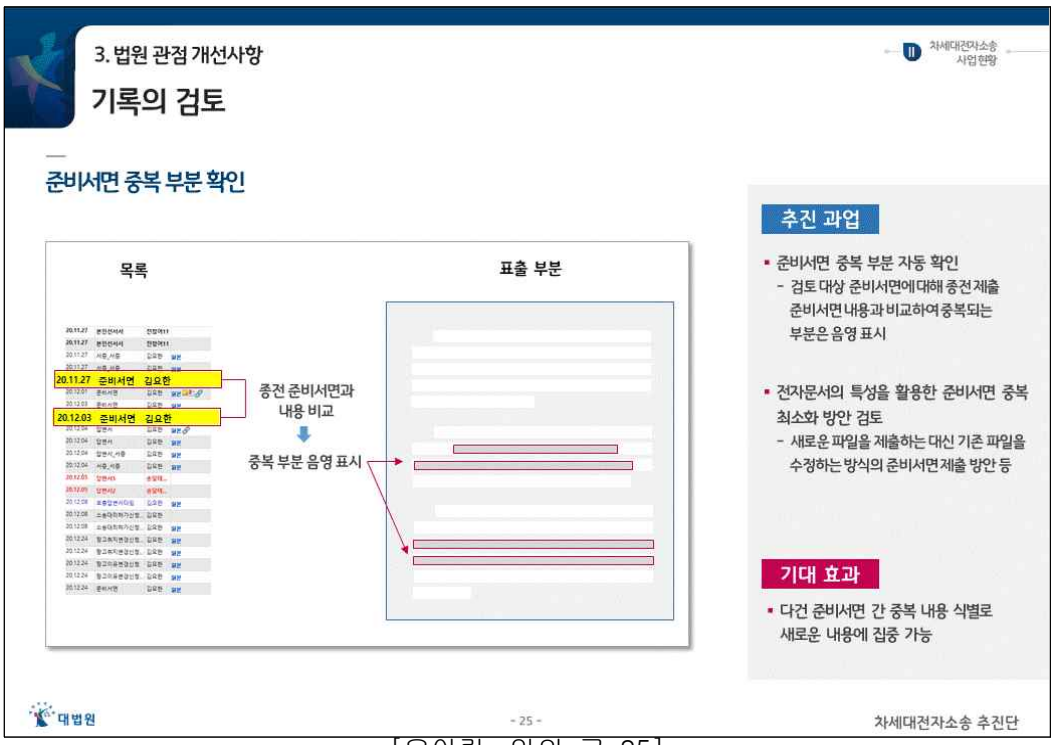

[유아람, 앞의 글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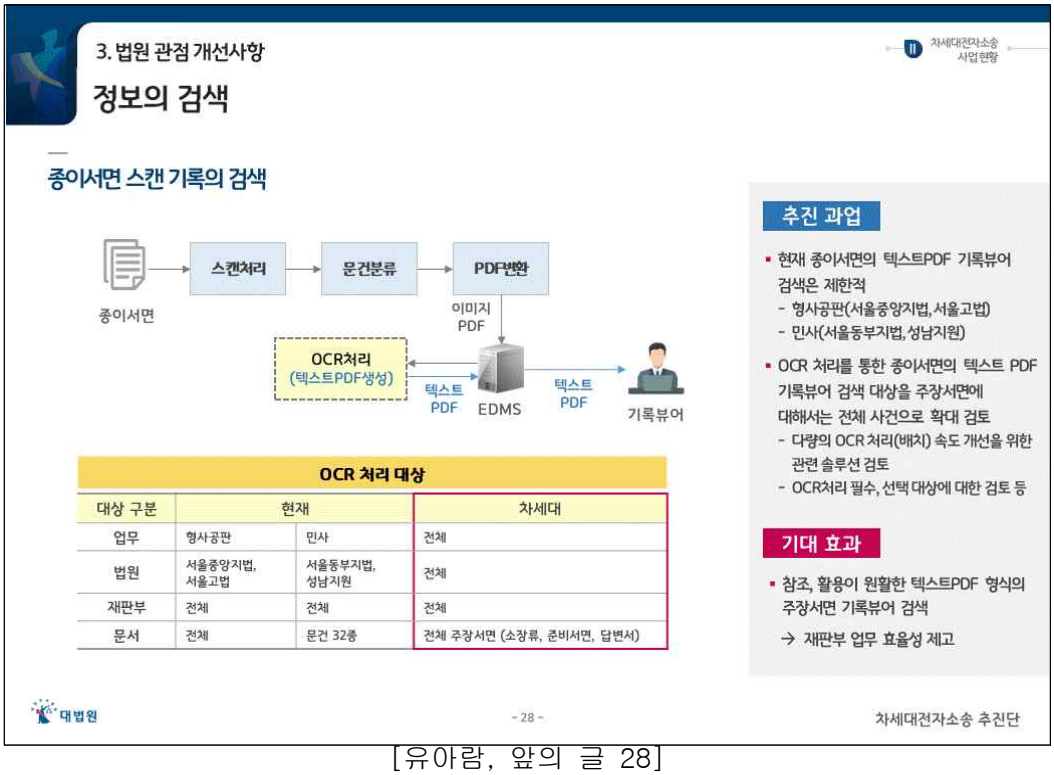

[유아람, 앞의 글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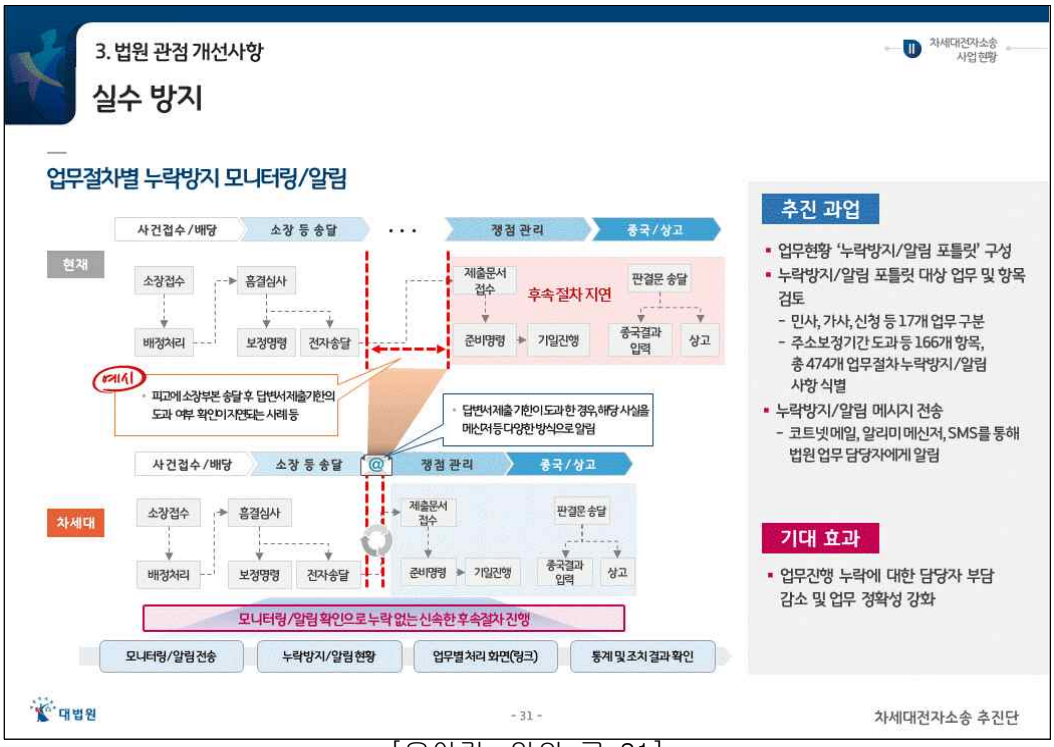

[유아람, 앞의 글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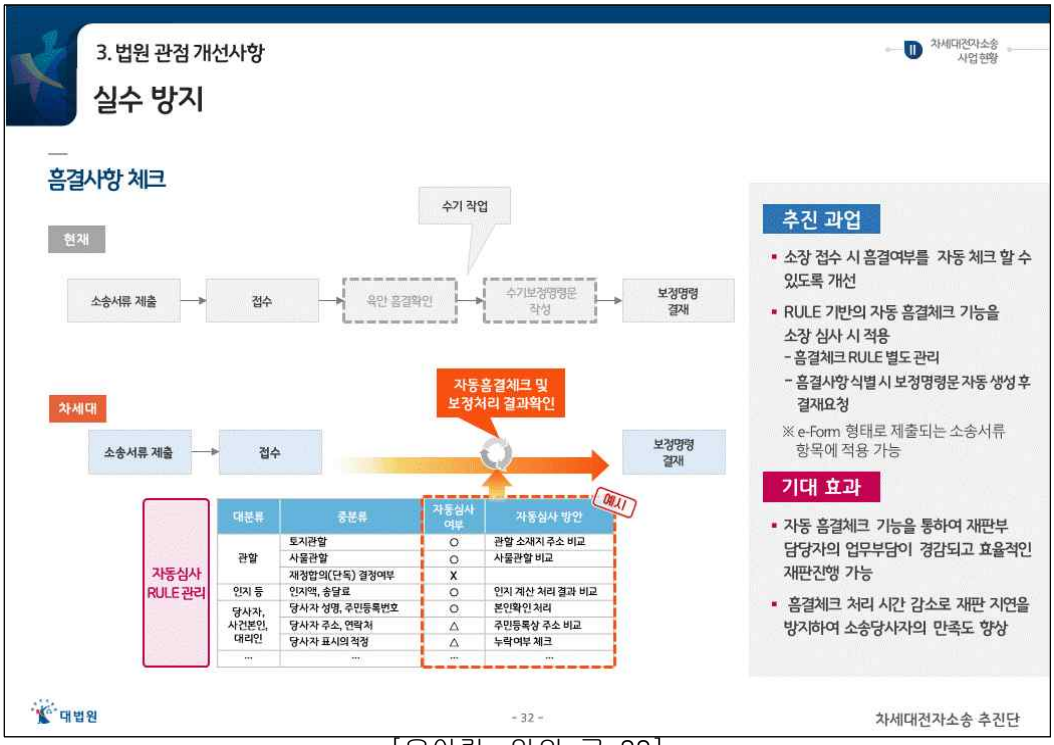

[유아람, 앞의 글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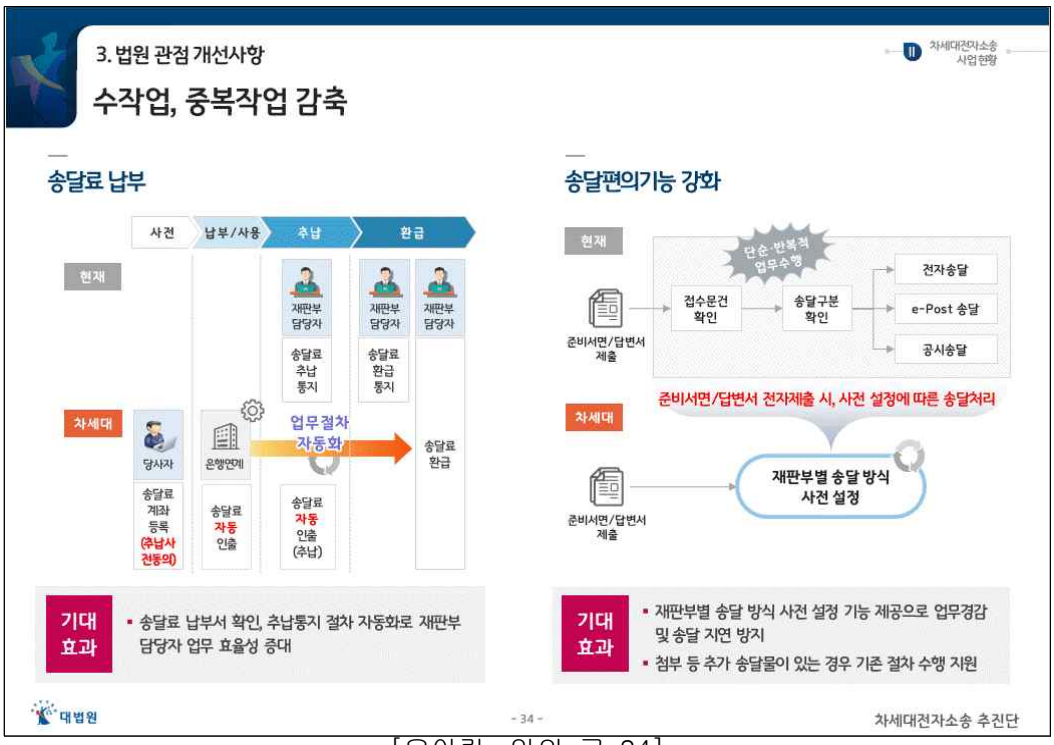

[유아람, 앞의 글 34]

[유아람, 앞의 글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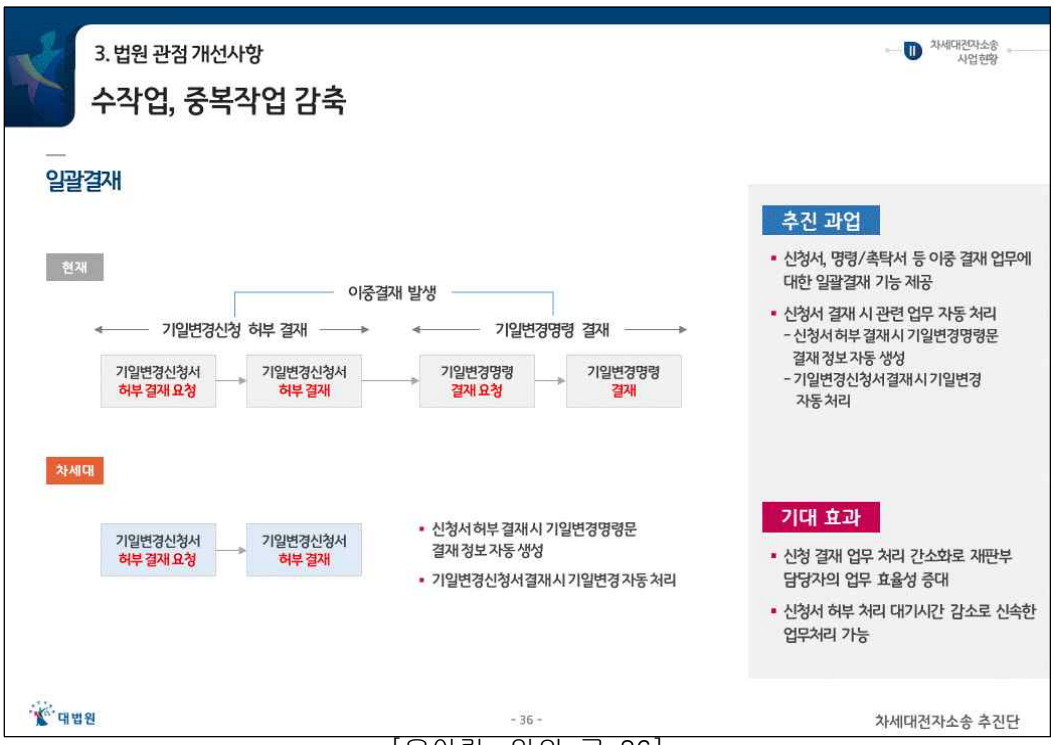

[유아람, 앞의 글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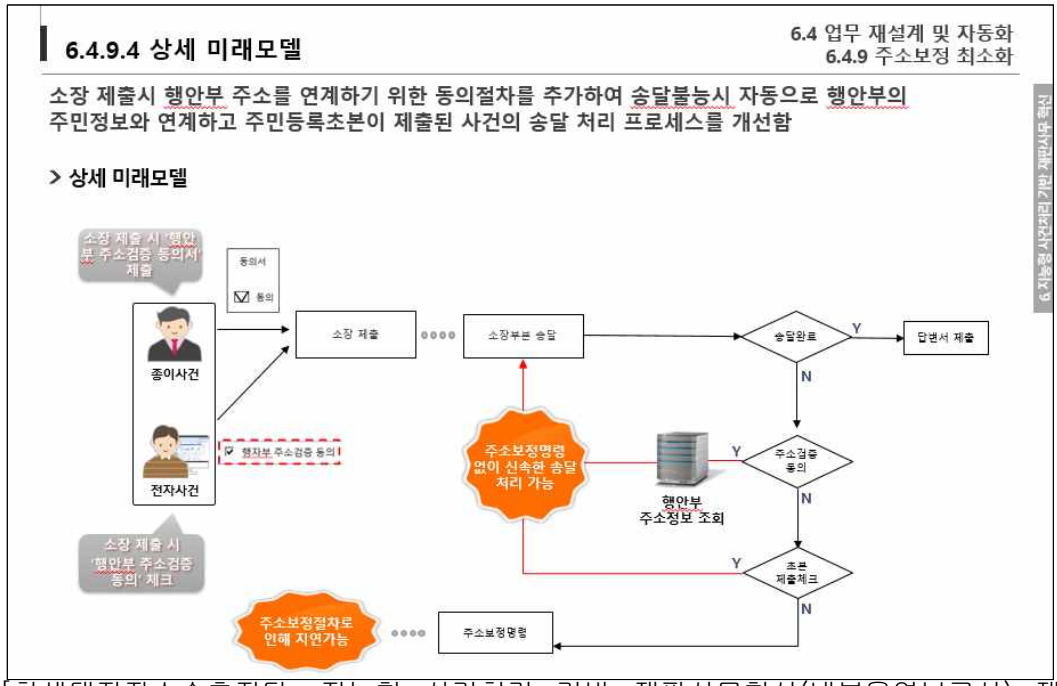

[차세대전자소송추진단, 지능형 사건처리 기반 재판사무혁신(내부용역보고서) 제V-750면, 법원행정처][182]

V. 민사소송 절차 중 자동화 가능 절차

1. 민사소송 절차의 자동화 전제

전자소송시스템 및 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에 따른 민사소송 절차의 자동화 기반에서 행정소송법 제20조의 자동적 처분을 응용하여 민사소송 절차를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진행함에 있어서는 자동화된 그 절차가 민사소송의 이상인 적정, 공정, 신속 및 경제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는 영역이어야 한다.

182) 전자소송에서 반드시 주소보정명령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이 가능한 행정안전부 주민정보 연계방식의 주소보정서 제출 기능을 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 구축사업에서는 소장 제출시 행정안전부 주소검증 동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송달불능 사유 중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이사불명의 경우에 주소보정명령 없이 행정안전부 주민정보 연계 방식으로 최신 주민등록지로 다시 송달을 시도하는 기능임.

2. 행정소송법 제20조 자동적 처분 요건 응용

행정청은 ① 처분에 행정청의 재량이 없어야 하고, ② 처분이 구조화가 잘된 문제에 해당하여야 하며, ③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의 알고리즘이 설계 단계에서 정교하게 구조화되어야 행정기본법 제20조에 의하여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처분을 할 수 있다.

행정기본법 제20조 자동적 처분을 법원이 수행하는 민사소송 절차 영역에 응용하려면 중 ① 자동화 대상에 법원이 재량이 없어야 하고, ② 자동화 대상이 구조화가 잘된 문제에 해당하여야 하며, ③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의 알고리즘이 설계 단계에서 정교하게 구조화되어야 법원이 그 민사소송 절차 영역을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이하 '소송절차자동화시스템')으로 진행할 수 있다.

3. 법원의 재량과 관련된 민사소송 절차

가. 법원에 재량이 없는 절차

법원은 소장이 접수되면, ①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부여하여야 하고, ② 사건을 배당하여야 하며, ③ 소장을 심사하여야 하고, ④ 소장심사를 마친 다음 ㉠ 소장에 소장각하명령 대상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보정명령을 하여야 하고, ㉡ 소장에 소장각하명령 대상이 없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소장부본을 송달하여야 하며, ⑤ ④-㉠의 경우에 원고가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원고에게 소장각하명령을 하여야 하고, ④-㉡의 경우에 ⓐ 피고에게 소장부본이 송달된 경우 원칙적으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원고와 피고에게 변론기일 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하며, ⓑ 피고에게 소장부본이 송달불능된 경우 원고에게 주소보정명령을 하여야 하고, ⑥ ④-㉡-ⓑ의 경우에 원고가 주소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원고에게 소장각하명령을 하여야 한다.

법원이 수행하는 이러한 민사소송 절차 자체에는 법원에 재량이

없어 이러한 민사소송 절차는 행정기본법 제20조 자동적 처분의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나.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를 위한 법원 재량권 행사

헌법 제27조 제1항 재판청구권에 의하여 당사자가 자기 의견을 표명하고 상대방 의견을 들을 기회를 보장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절차적 권리인 심문청구권(Anspruch auf rechtliches Gehör)[183] 도 보장된다.

민사소송법은 당사자의 심문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일지정 신청권, 기일의 통지를 받을 권리, 소장·판결의 송달을 받을 권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① 피고가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 무변론판결 선고기일 절차, ㉡ 변론기일 절차, ㉢ 조정기일 절차를 선택할 수 있고, ②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는 경우 ㉠ 변론준비기일 절차, ㉡ 변론기일 절차, ㉢ 조정기일 절차를 선택할 수 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인 원고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 상대방 당사자인 피고와 많은 갈등을 겪어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명백한 증거가 있는지 여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지 여부 또는 피고와 조정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법원에 소장을 접수한다.

따라서 소장 접수 단계에서 원고의 심문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① 무변론판결 선고기일 절차를 원하는지 여부 ② 답변서가 제출되었을 경우 조정기일 절차를 원하는지 여부 등 기일지정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고, 법원이 기일지정에 관한 재량권을 행사하여 원고의 기일지정에 관한 의사대로 기일을 지정하면 원고의

183)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Art 103 (2) Vor Gericht hat jedermann Anspruch auf rechtliches Gehör.

의사가 반영된 법원의 기일지정 절차는 법원에 재량이 없는 절차로 진행할 수 있다.[184]

4. 변론의 집중과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자동화 절차

민사소송 절차의 당사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민사소송을 수행하여야 하고,[185] 민사소송의 변론은 집중되어야 하며,[186] 법원은 판결서 이유에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여야 한다.

소장, 답변서 및 준비서면에서 당사자의 주장이 중복되거나 주장이 모순되거나 복잡한 경우에는 요약준비서면의 제출만으로는 산재되어 있는 주장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없고,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된 증거 내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어,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누락할 우려가 있다.

당사자의 중복된 주장을 당사자와 법원이 변론기일 등에서 자동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① 당사자는 ㉠ 중복된 주장을 다시 반복하지 않을 수 있고, ㉡ 자신의 주장과 상대방 주장을 비교하여 부각되는 쟁점을 스스로 파악할 수 있으며, ㉢ 자신의 주장과 증거를 대조하여 입증이 부족한 부분을 스스로 파악할 수 있고, ② 법원은 ㉠ 당사자에게 중복된 주장을 다시 반복하지 않게 할 수 있고, ㉡ 쌍방 주장과 증거를 쉽게 비교할 수 있어 쟁점을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 주장의 모순 또는 입증 부족 등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석명준비명령 등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 주장 중복 확인의 자동화로

---

184) 일본 민사소송법 제381조의2 내지 제381조의8이 규정하고 있는 법정심리기간 소송절차 제도를 참고하여 당사자의 기일지정에 관한 의견이 제도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185) 민사소송법 제1조(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②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

186) 민사소송법 제272조(변론의 집중과 준비)
① 변론은 집중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변론을 서면으로 준비하여야 한다.

당사자와 법원이 사건의 변론에 더욱 집중할 수 있다.

전자기록의 주장과 쟁점을 자동적으로 정리하여 판결문에 그대로 연동되어 법관이 편집할 수 있다면, 법관은 당사자의 주장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고, 판단에 누락된 주장이 없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전자기록의 주장과 판결서의 연동 자동화로 법관은 판결서에 주장과 판단을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작성하면서도 판결에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않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를 더욱 줄일 수 있다.

5. 자동화가 가능한 민사소송 절차

가. 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의 자동화 절차

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이 구축되면 법원은 ① 사건번호와 사건명, 사건배당 및 소장심사[규칙(rule)기반 심사]를 자동적으로 할 수 있고, ② 전자문건을 송달대상(답변서, 준비서면, 서증 등), 보정대상 등으로 자동분류할 수 있으며, ③ 소장부본 송달불능을 전제로 소장접수 단계 동의 및 행정안전부 주소 연계를 통하여 주소보정명령 없이 소장부본을 자동적으로 송달할 수 있고, ④ 답변서 및 준비서면을 자동적으로 송달할 수 있으며, ⑤ 재판부와 당사자가 기일지정 등에 관하여 간이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고, ⑥ 광학식 문자인식(OCR, Optical Character Reader) 기술을 이용한 기계 판독(machine readable)으로[187][188] 당사자의 중복된 주장을 확인할 수

---

187)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 제16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2.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란 소프트웨어로 데이터의 개별내용 또는 내부구

있다.

나. 전자소송홈페이지 - 의견반영배너

전자소송홈페이지에 원고 등 당사자의 기일지정에 관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반영배너를 소장접수 단계(① 무변론판결 선고, ② 조정기일, ③ 변론기일)와 변론기일 지정 단계(조정기일)로 구분하여 구축한다.

조정·화해 의견을 묻는 답변서요약표를 참고하여, 소장 접수 단계에서 조정기일 지정을 선택하지 아니한 원고에게 변론기일 등을 통지할 때에 '조정기일 지정에 관한 원고의 의견을 의견반영배너(변론기일 지정 단계)로 제출해 달라'는 내용의 서면(이하 '조정의사확인서')을 송달한다.

다. 소송절차자동화시스템 구축

조를 확인하거나 수정, 변환, 추출 등 가공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4. "제공"이란 공공기관이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188) 공공데이터 관리지침(2021. 10. 26. 행정안전부고시 제2021-70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란 소프트웨어로 데이터의 개별내용 또는 내부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 변환, 추출 등 가공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4. "오픈포맷"이란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서 비용 또는 그 밖의 사용에 제약 없이 최소 하나 이상의 소프트웨어로 처리할 수 있는 파일 포맷을 말한다.
5. "제공"이란 공공기관이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7. "오픈API"란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외부에 개방된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로서, 갱신되는 공공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이용자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표준화된 방식을 말한다.
8. "데이터베이스(DB)"란 정보가 체계적으로 구조화되어 저장된 전자적 집합물을 말한다.
9. "개방DB"란 이용자에게 공공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원천DB로부터 제공대상 공공데이터를 수집·가공하여 구축한 DB를 말한다.
10. "메타데이터"란 공공데이터베이스 내 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편리한 검색 및 활용을 위해 데이터의 구조, 속성, 특성, 이력 등이 표현된 자료를 말한다.

1) 재판부의 선택 가능 및 재판사무시스템 연동

재판부는 협의를 거쳐 소송절차자동화시스템의 사용 여부를 결정하여, 소송절차자동화시스템의 사용 여부 및 당사자의 의견 반영 단계를 선택할 수 있고, 개별 사건에 관하여 소송절차자동화시스템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재판사무시스템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소송절차자동화시스템과 재판사무시스템은 상호 연동된다.

2) 사법전자서명 기능

법관 또는 법원사무관등이 재판서, 조서 등의 전자문서를 작성하거나 전자문서로 변환하는 경우에 사법전자서명을 하여야 하는데,[189] 재판부가 소송절차자동화시스템의 사용을 선택하면 소송절차자동화시스템이 생성하는 재판서 등에 자동적으로 사법전자서명이 된다.

3) 소장부본 자동 송달실시 및 송달결과 자동 통지

소송절차자동화시스템은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면 피고에게 소장부본과 소장부본에 첨부하여 보내는 소송절차안내서, 답변서요약표등(이하 '답변서요약표등')에 관하여 자동적으로 송달을 실시한다.

소송절차자동화시스템은 원고에게 우정사업본부의 주전산기를 통하여 자동적으로 법원의 재판사무시스템에 등록되는 우편집배원의 소장부본의 송달결과를 자동적으로 통지한다.

원고가 전자소송홈페이지로 주소보정서를 제출하면 소송절차자동화시스템은 보정된 피고의 주소로 소장부본 등에 관하여 자동적으

---

189)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전자서명)
② 법관ㆍ사법보좌관 또는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서, 조서 등을 전자문서로 작성하거나 그 서류를 전자문서로 변환하는 경우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전자서명과 제2항의 사법전자서명은 민사소송등에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법령에서 정한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 본다.

로 송달을 실시한다.

4) 자동 기일지정 및 통지

소송절차자동화시스템에 재판부가 정한 판결선고기일, 조정기일 및 변론기일의 지정 기준(이하 '기일지정기준')을 설정할 수 있게 하고, 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되면 전자소송홈페이지의 의견반영배너에 클릭된 기일의견을 자동적으로 반영하여, 그 기일을 기일지정기준에 따라 자동적으로 지정하고, 당사자에게 기일통지서를 자동적으로 송달한다.

소송절차자동화시스템에서 소장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소장이 보정명령 이행 등으로 소장심사를 통과하였거나, 송달불능된 소장부본 등이 보정된 주소로 송달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 관하여 자동적으로 소송절차자동화시스템이 사용된다.

5) 변론절차 및 판결서 작성 절차

소송절차자동화시스템은 전자기록뷰어에 중복된 주장을 자동적으로 정리하고 정리된 주장을 판결문작성관리시스템에 연동한다.

6) 소송절차자동화시스템 캐비넷에 의한 관리

소송절차자동화시스템이 수행한 절차에 관하여 소장심사결과 내역과 소장부본 등 송달내역 및 기일지정내역 등 소송절차자동화시스템 캐비넷을 구축하고, 재판부의 설정에 따라 소장심사결과 내역과 소장부본 등 송달내역 및 기일지정내역 등을 일정기한(예: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단위로 재판부에 통지한다. 재판부는 소송절차자동화시스템이 진행한 사건에 관하여 법원의 사건관리방식 업무 중 나머지 사건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원고 또는 피고가 의견반영배너의 조정기일을 선택하면 바로 소송절차자동화시스템 캐비넷의 색깔 또는 아이콘으로 조정의사를 활성화한다.

6. 소송절차자동화시스템 활용 영역

가. 주소보정명령 절차

당사자가 증거조사로 증인신문을 신청하여 채택된 증인에게 출석요구서를 송달함에 있어서도,[190][191][192][193] 증인에 대한 출석요구서에 대한 송달결과를 자동적으로 증인신청을 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법원으로부터 증인에 대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기 전에라도 송달불능된 사유를 보정할 수 있고,[194] 주소보정서가 제출되면 자동적으로 출석요구서를 송달할 수 있다.

나. 항소심 절차

당사자에 대한 송달불능이 극히 드물고 무변론판결 선고 대상 사건이 없는 항소심에서는 항소장 접수 단계에서 자동적으로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항소장 부본 송달 단계에서 자동적으로 변론기일 및 조정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다. 행정소송 절차

행청청이 피고인 행정사건은 무변론판결 선고 제도와 조정제도가

---

190) 민사소송법 제308조(증인신문의 신청)
당사자가 증인신문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증인을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91) 민사소송규칙 제75조(증인신문과 당사자신문의 신청)
② 증인신문을 신청하는 때에는 증인의 이름、주소、연락처、직업, 증인과 당사자의 관계, 증인이 사건에 관여하거나 내용을 알게 된 경위, 증인신문에 필요한 시간 및 증인의 출석을 확보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밝혀야 한다.

192) 민사소송법 제309조(출석요구서의 기재사항)
증인에 대한 출석요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당사자의 표시
2. 신문 사항의 요지
3.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률상 제재

193) 민사소송규칙 제81조(증인 출석요구서의 기재사항 등)
② 증인에 대한 출석요구서는 출석할 날보다 2일 전에 송달되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4) 민사소송규칙 제82조(증인의 출석 확보)
증인이 채택된 때에는 증인신청을 한 당사자는 증인이 기일에 출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없고, 피고에 대한 송달불능과 답변서 미제출을 예정하기 어려우므로 행정사건의 소장 접수 단계에서 자동적으로 변론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라. 판결 등에 대한 송달 절차

상소기간[195] 또는 이의기간[196]이 있는 판결, 결정에 대한 사법전자서명이 완료되면 즉시 송달이 실시되도록 하여, 당사자가 바로 판결정본 등을 송달받을 수 있고, 개별 당사자에 대한 판결정본 등의 송달실시 시기에 따른 상소기간 등이 달라지지 않도록 하여 상소권 등을 실질적으로 평등하게 보장할 수 있다.

마. 빅데이터 분석

소송절차자동화시스템이 수행한 민사소송 절차 자료를 빅데이터로 분석하면 ① 당사자의 의사와 조정, 판결 등 사건 종결과의 관계, 무변론판결 대상 사건의 구분 등으로 법원이 사건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관리할 수 있고, ② 주장과 판단을 분류하여 주장에 적용되는 적용되는 법률과 법리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7. 자동화 대상 민사소송 절차 구조화

가. 자동화 대상 민사소송 절차 구조화 모형

1) 소장부본 송달 및 기일지정 절차

전자소송시스템 및 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이하 '차세대전자소송

---

195) 민사소송법 제396조(항소기간)
①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판결서 송달 전에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196) 민사조정법 제34조(이의신청)
① 제30조 또는 제32조의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는 그 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조서의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소장심사를 하고,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부여하며, 사건을 배당한다.

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의 ① 전자제출 접수 문건 분류 기능, ② 답변서/준비서면 자동 송달 기능, ③ 간이한 의사소통 및 결정지원 기능, ④ 소장 제출시 행정안전부 주소 연계를 위한 동의 기능, ⑤ 소장 심사 완료 후 '소장' 색 변경 기능, ⑥ 전자소송홈페이지와 재판사무시스템 또는 대법원 사건검색 시스템 연동 기능 등을 이용하여 소장부본 송달 및 기일지정 절차를 자동화하는 소송절차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한다.

소송절차자동화시스템은 자동적으로 소장부본, 답변서요약표등에 대하여 송달을 실시하고, 소장부본 송달 여부 및 원고의 기일지정에 관한 의견에 따라, 피고의 답변서 제출 여부에 따라 자동적으로 민사소송법이 정한 다음 절차를 진행한다.

2) 주장 중복 확인 및 판결문 연동

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의 ① 준비서면 중복 확인 기능 중 음영표시 기능, ② 준비서면 중복 확인 기능 중 기존 파일을 수정하는 방식의 준비서면 제출 기능, ③ 정보 기계판독 및 검색 기능(OCR) ④ 규칙(rule)기반 흠결사항체크 기능, ⑤ 기록뷰어의 검색 및 분류 기능, ⑥ 전자소송홈페이지와 판결문작성관리시스템 연계 기능 등을 활용하여 주장 중복 확인 및 판결문 연동을 자동화하는 소송절차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한다.

소송절차자동화시스템은 전자기록뷰어의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증거 등을 비교 대조하여 중복된 주장을 확인하여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에 중복된 주장이 나타나게 하고, 주장정리배너에 중복된 준비서면을 정리하며, 법관이 주장정리배너에 설치된 아이콘을 클릭하는 경우 주장정리배너에 정리된 주장을 판결문작성관리시스템으로 연동시킨다.

나. 자동화 소송절차 모형의 구조화 정도

민사소송 절차는 민사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적 단계, 즉 민사소송 절차라는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을 정의하는 단계들의 집합인 알고리즘에 해당하고, ① 소장 심사, ② 소장부본 송달, ③ 답변서 제출, ④ 법원의 기일지정에 따라 다음 절차의 진행이 구분되는 단계적인 절차이므로 기본적으로 소장 접수 단계에서 판결 선고 단계까지 구조화된 절차이다.

소송절차자동화시스템이 자동적으로 수행하는 소송절차에는 ① 개별 사건의 당사자와 재판부만 사용하여 사용자가 한정되어 있고, ② 해당 각 자동화 대상 소송절차에 관하여 수집할 정보의 범위가 확정적이거나 안정적이며, ③ 데이터의 생산자와 사용자가 동일하여 자기 완결적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개발된 알고리즘은 해당 재판부의 내부에서 활용되므로, 자기 완결적 세계 내에서 최적화를 통하여 편리를 도모할 수 있고, ④ 자동화 대상 소송절차의 상황이 변화할 수 없어 구조적으로 안정되어 있어 알고리즘이 변용될 가능성이 낮은, 즉 구조화가 잘된 문제의 특징이 나타난다.

Ⅵ. 소송절차자동화시스템 알고리즘 구현 사례

1. 원고 의사 반영

가. 소장 접수 단계

재판부가 소송절차자동화시스템을 소장 접수 단계에서 당사자 의견 반영으로 설정한 경우, 소송절차자동화시스템은 조정기일을 자동적으로 지정할 때에 조정회부결정도 자동적으로 생성하여 전자서명하여 재판부로 조정회부결정을 자동적으로 인계한다.

1) 원고 무변론판결 및 조정기일 선택

원고가 소장을 접수하면서 무변론판결과 조정기일을 선택한 경우, 소송절차자동적스템은 ① 자동적으로 소장심사, 사건배당을 하고, ② 자동적으로 무변론판결 선고기일을 지정하며, ③ 자동적으로 ㉠ 원고에게 무변론판결 선고기일 통지서를 송달하고, ㉡ 피고에게 소장, 무변론판결 선고기일통지서 및 답변서요약표등을 송달한다.

<table>
<tr><td rowspan="2">원고 선택</td><td colspan="3" rowspan="2">소송절차자동화시스템</td><td colspan="2">소송절차자동화시스템</td></tr>
<tr><td>원고 송달</td><td>피고 송달</td></tr>
<tr><td>소장</td><td rowspan="3">소장
심사</td><td rowspan="3">사건
배당</td><td rowspan="3">무변론판결
선고기일
지정</td><td rowspan="3">무변론판결
선고기일
통지서</td><td>소장</td></tr>
<tr><td>무변론판결</td><td>무변론판결선고기일통지서</td></tr>
<tr><td>조정기일</td><td>답변서요약표등</td></tr>
</table>

가) 피고 답변서 미제출

피고가 소장 등을 송달받고도 그로부터 30일이 지난 무변론판결 선고기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은 선고기일에 무변론판결을 선고한다.

나) 피고 답변서 제출

피고가 무변론판결 선고기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는 경우 소송절차자동화시스템은 ① 자동적으로 ㉠ 무변론판결 선고기일 지정을 취소하고, ㉡ 조정기일을 지정하며, ② 자동적으로 ㉠ 원고에게 무변론판결 선고기일지정 취소 통지서, 조정기일 통지서 및 답변서를 송달하고, ㉡ 피고에게 무변론판결 선고기일지정취소 통지서, 조정기일 통지서를 송달한다.

<table>
<tr><td rowspan="2">피고
제출</td><td rowspan="2">소송절차자동화
시스템</td><td colspan="2">소송절차자동화시스템</td></tr>
<tr><td>원고 송달</td><td>피고 송달</td></tr>
<tr><td rowspan="3">답변서</td><td rowspan="2">무변론판결선고
기일지정취소</td><td>무변론판결선고기일 지정취소 통지서</td><td rowspan="2">무변론판결선고기일
지정취소통지서</td></tr>
<tr><td>조정기일 통지서</td></tr>
<tr><td>조정기일 지정</td><td>답변서</td><td>조정기일 통지서</td></tr>
</table>

법원은 지정(취소)된 무변론판결 선고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한 경우 당사자에게 무변론판결 선고기일 지정이 취소되고, 조정기일이 지정되었음을 안내한다.

2) 원고 무변론판결 및 변론기일 선택

원고가 무변론판결 및 변론기일을 선택한 경우, 소송절차자동화시스템은 ① 자동적으로 소장심사, 사건배당을 하고, ② 자동적으로 무변론판결 선고기일을 지정하며, ③ 자동적으로 ㉠ 원고에게 무변론판결 선고기일을 통지하고, ㉡ 피고에게 소장, 무변론판결 선고기일통지서 및 답변서요약표등을 송달한다.

<table>
<tr><td rowspan="2">원고 선택</td><td colspan="3" rowspan="2">소송절차자동화시스템</td><td colspan="2">소송절차자동화시스템</td></tr>
<tr><td>원고 송달</td><td>피고 송달</td></tr>
<tr><td>소장</td><td rowspan="3">소장
심사</td><td rowspan="3">사건
배당</td><td rowspan="3">무변론판결
선고기일
지정</td><td rowspan="3">무변론판결
선고기일
통지서</td><td>소장</td></tr>
<tr><td>무변론판결</td><td>무변론판결선고기일통지서</td></tr>
<tr><td>변론기일</td><td>답변서요약표등</td></tr>
</table>

가) 피고 답변서 미제출

피고가 소장 등을 송달받고도 그로부터 30일이 지난 무변론판결 선고기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은 선고기일에 무변론 판결을 선고한다.

나) 피고 답변서 제출

피고가 무변론판결 선고기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는 경우 소송절차자동화시스템은 ① 자동적으로 ㉠ 무변론판결 선고기일 지정을 취소하고, ㉡ 변론기일을 지정하며, ② 자동적으로 ㉠ 원고에게 무변론판결 선고기일지정취소 통지서, 변론기일 통지서 및 답변서를 송달하고, ㉡ 피고에게 무변론판결 선고기일지정취소 통지서, 변론기일 통지서를 송달한다.

<table>
<tr><td rowspan="2">피고
제출</td><td rowspan="2">소송절차자동화
시스템</td><td colspan="2">소송절차자동화시스템</td></tr>
<tr><td>원고 송달</td><td>피고 송달</td></tr>
<tr><td rowspan="3">답변서</td><td rowspan="2">무변론판결선고
기일지정취소</td><td>무변론판결선고기일 지정취소 통지서</td><td rowspan="2">무변론판결선고기일
지정취소통지서</td></tr>
<tr><td>변론기일 통지서</td></tr>
<tr><td>변론기일 지정</td><td>답변서</td><td>변론기일 통지서</td></tr>
</table>

법원은 지정(취소)된 무변론판결 선고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한 경우 당사자에게 무변론판결 선고기일 지정이 취소되고, 변론기일이 지정되었음을 안내한다.

3) 원고 무변론판결 선고 미선택

가) 원칙 - 변론기일 지정

원고가 소장을 접수하면서 무변론판결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소송절차자동화시스템은 ① 자동적으로 소장심사, 사건배당을 하고, ② 자동적으로 변론기일을 지정하며, ③ 자동적으로 ㉠ 원고에게 변론기일 통지서와 조정의사확인서를 송달하고, ㉡ 피고에게 소장, 변론기일 통지서 및 답변서요약표등을 송달한다.

<table>
<tr><td rowspan="2">원고 선택</td><td colspan="3" rowspan="2">소송절차자동화시스템</td><td colspan="2">소송절차자동화시스템</td></tr>
<tr><td>원고 송달</td><td>피고 송달</td></tr>
<tr><td rowspan="3">소장</td><td rowspan="3">소장심사</td><td rowspan="3">사건배당</td><td rowspan="3">변론기일 지정</td><td>변론기일 통지서</td><td>소장</td></tr>
<tr><td rowspan="2">조정의사확인서</td><td>변론기일 통지서</td></tr>
<tr><td>답변서요약표등</td></tr>
</table>

나) 원고 조정기일 선택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면서 조정기일을 선택한 경우에는, 소송절차자동화시스템은 자동적으로 ① 소장심사, 사건배당을 하고, ② 조정기일을 지정하고, ③ 원고에게 조정기일 통지서를 송달하고, ④ 피고에게 소장, 조정기일 통지서 및 답변서요약표등을 송달한다.

<table>
<tr><td rowspan="2">원고 선택</td><td colspan="3" rowspan="2">소송절차자동화시스템</td><td colspan="2">소송절차자동화시스템</td></tr>
<tr><td>원고 송달</td><td>피고 송달</td></tr>
<tr><td>소장</td><td rowspan="3">소장심사</td><td rowspan="3">사건배당</td><td rowspan="3">조정기일 지정</td><td rowspan="2">조정기일 통지서</td><td>소장</td></tr>
<tr><td>조정기일</td><td>조정기일 통지서</td></tr>
<tr><td></td><td></td><td>답변서요약표등</td></tr>
</table>

피고가 답변서를 변론기일 전에 제출하면 소송절차자동화시스템은 원고에게 자동적으로 답변서를 송달한다.

나. 피고 답변서 제출 단계

재판부가 답변서 제출 단계에서 소송절차자동화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설정되어 있다면, 소송절차자동화시스템은 조정기일을 자동적으로 지정할 때에 조정회부결정도 자동적으로 생성하여 전자서명하여 재판부로 조정회부결정을 자동적으로 인계한다.[197]

197) 원고가 소장 접수 단계에서 무변론판결 선고를 선택하였다 하더라도 재판부는

1) 원고 조정기일 선택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면서 조정기일을 선택한 경우에는, 소송절차자동화시스템은 ① 자동적으로 ㉠ 소장심사, 사건배당을 하고, ㉡ 피고에게 소장, 답변서요약표등을 송달하며, ②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자동적으로 ㉠ 조정기일을 지정하고, ㉡ 원고에게 답변서 및 조정기일 통지서를 송달하고, ㉢ 피고에게 조정기일 통지서를 송달한다.

<table>
<tr><td rowspan="2">원고 선택</td><td colspan="3">소송절차자동화시스템</td><td rowspan="2">피고 제출</td><td colspan="3">소송절차자동화시스템</td></tr>
<tr><td rowspan="3">소장 심사</td><td rowspan="3">사건 배당</td><td>피고 송달</td><td rowspan="2">조정기일 지정</td><td>원고 송달</td><td>피고 송달</td></tr>
<tr><td>소장</td><td rowspan="2">답변서</td><td>조정기일 통지서</td><td rowspan="2">조정기일 통지서</td></tr>
<tr><td>소장</td><td>답변서요약표등</td><td>답변서</td></tr>
<tr><td>조정기일</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2) 원고 조정기일 미선택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면서 조정기일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송절차자동화시스템은 ① 자동적으로 ㉠ 소장심사, 사건배당을 하고, ㉡ 피고에게 소장, 답변서요약표등을 송달하며, ②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자동적으로 ㉠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 원고에게 답변서, 변론기일 통지서 및 조정의사확인서를 송달하고, ㉢ 피고에게 변론기일 통지서를 송달한다.

<table>
<tr><td rowspan="2">원고 선택</td><td colspan="3">소송절차자동화시스템</td><td rowspan="2">피고 제출</td><td colspan="3">소송절차자동화시스템</td></tr>
<tr><td rowspan="3">소장 심사</td><td rowspan="3">사건 배당</td><td>피고 송달</td><td rowspan="2">변론기일 지정</td><td>원고 송달</td><td>피고 송달</td></tr>
<tr><td rowspan="2">소장</td><td rowspan="2">답변서</td><td>변론기일 통지서</td><td rowspan="3">변론기일 통지서</td></tr>
<tr><td rowspan="2">소장</td><td>답변서요약표등</td><td>답변서</td></tr>
<tr><td></td><td></td><td></td><td></td><td>조정의사확인서</td><td></td></tr>
</table>

2. 소송절차자동화시스템 기일 지정 예시

가. 기일지정기준

재판부가 기일지정기준을 ① 매월 2주 내지 4주 수요일 ㉠ 오전

답변서 제출 단계 전까지 원고의 기일에 관한 의사를 반영하지 아니하므로 무변론판결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아니한다.

10시부터 오전 11시 30분까지를 매 10분 당 신건 변론기일, ㉡ 오후 2시 선고기일, ㉢ 오후 2시 10분부터 오후 5시까지를 속행 변론기일로 정하고, ② 매월 2주 내지 4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를 매 30분 당 조정기일로 정하였다.

나. 원고 의사 소장 접수 단계 반영 설정

1) 원고가 무변론판결을 선택한 경우

무변론판결 선고기일은 소장부본 등 송달 및 답변서 제출기한 30일을 감안하여 소장심사일로부터 40일 이후의 선고기일을 자동적으로 사건번호 순서대로 지정하도록 설정한다.

답변서가 제출된 경우 및 원고가 조정기일을 선택한 경우, 답변서 등 송달 기간을 감안하여 답변서 제출일로부터 20일 이후의 조정기일을 자동적으로 30분 단위로 사건번호 순서대로 지정되도록 설정한다.

답변서가 제출된 경우 및 원고가 변론기일을 선택한 경우, 답변서 등 송달 기간을 감안하여 답변서 제출일로부터 20일 이후의 오전 변론기일을 자동적으로 10시 00분부터 10분 단위로 11시 30분까지 사건번호 순서대로 지정되도록 설정한다.

2) 원고가 무변론판결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답변서 제출 및 송달 기간을 감안하여 소장심사일로터 50일 이후의 오전 변론기일을 자동적으로 10시 00분부터 10분 단위로 11시 30분까지 사건번호 순서대로 지정되도록 설정한다.

원고가 소장 접수 단계에서 조정기일을 선택한 경우, 소장심사일로부터 50일 이후의 조정기일을 자동적으로 30분 단위로 사건번호 순서대로 지정되도록 설정한다.

다. 원고 의사 답변서 제출 단계 반영 설정

원고가 소장 접수 단계에서 조정기일을 선택하였다면, 답변서 제

출일로부터 20일 이후의 조정기일을 자동적으로 30분 단위로 사건번호 순서대로 지정되도록 설정한다.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면서 조정기일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답변서 제출일로부터 20일 이후의 오전 변론기일을 자동적으로 10시 00분부터 10분 단위로 11시 30분까지 사건번호 순서대로 지정되도록 설정한다.

3. 소송절차자동화시스템 캐비넷

가. 소송절차자동화시스템 실시간 상황 반영

원고	피고	사건번호	소장접수일	소장심사일		소장부본 등 송달실시일		소장부본 등 송달일		무변론판결 선고기일 지정		답변서제출일		답변서 전자기록화일	제1회 변론기일 지정		조정기일 지정		조정의사	
																			원고	피고
				자동	점검일	자동	점검일	자동	점검일	자동	점검일		점검일		자동	점검일	자동	점검일	소장	자동
				수동		수동		수동		수동					수동		수동		변론	수동

나. 소장심사 자동적 통과 여부 및 수동 심사 반영

자동 심사 통과 사건 목록			자동 심사 탈락 사건 목록			
사건번호	소장접수일	통과일	사건번호	소장접수일	탈락일	수동심사일

다. 수동 소장심사 후 보정명령 반영

사건번호	수동 심사일	보정명령일	보정명령 송달일	보정 문건 접수일	보정 문건 심사일	소장등 송달실시일

라. 원고의 선택 사항 및 반영 내역

사건번호	원고	소장 접수일	조정의사 접수일	무변론판결 선고기일	조정기일	변론기일
	무변론판결		소장단계			
	조정기일					
	변론기일		변론단계			

마. 기일지정 내역

무변론판결 선고기일		조정기일		변론기일	
선고기일	사건번호	조정기일	사건번호	변론기일	사건번호

4. 소장부본 등이 송달불능된 경우

가. 원고에 대한 자동 통지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등이 송달불능된 경우 ① 소송절차자동화시스템은 자동적으로 ㉠ 기일지정을 취소하고, ㉡ 원고에게 지정(통지)한 기일지정취소 통지서와 송달사유를 통지하고, ② 전자소송홈페이지에 원고가 주소보정서를 제출하면, ③ 소송절차자동화시스템은 자동적으로 보정된 주소로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의사가 반영된 소장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소송절차자동화시스템	전자소송홈페이지	소송절차자동화시스템
원고 통지	원고 접수	피고 송달
송달사유	주소보정서 제출	보정 주소로 자동 송달
기일지정 취소서		

나. 주소보정명령 이행 상황

사건번호	송달불능 통지일		보정명령일	보정명령 송달일	보정 문건 접수일	보정 문건 심사일	소장등 송달실시일
	원고	법원					

5. 주장의 중복 확인 및 판단 누락 방지 자동화

가. 주장의 중복 확인

1) 준비서면 중복 활용 방안

법관은 소송절차자동화시스템을 ① 소장, 준비서면, 참고서면의 중복 대상을 문장과 문단으로 선택할 수 있고, ② 중복 정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설정하고, 소송절차자동화시스템은 각 서면의 각 해당 부분을 자동으로 목록화하여 나타낸다.

2) 키워드 검색 기능 활용 방안

소송절차자동화시스템은 당사자 등이 제출한 모든 형태의 파일을 검색할 수 있고, 검색 기능에 검색 결과를 저장할 수 있으며, 저장의 방법을 문장과 문단을 구분하고, 해당 준비서면 및 증거서면의 위치(날짜, 증거번호 및 페이지)를 나타낸다.

3) 당사자 의사 활용 방안-카테고리

법원은 당사자로 하여금 법원에 주장을 적은 서면을 제출할 때에 판단을 원하는 주장 부분을 빈칸 채우기 방식의 문단 단위의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고, 소송절차자동화시스템은 빈칸 채우기 방식으로 제출된 서면의 중복 정도를 자동적으로 검사하고, 법관이 설정한 중복 정도 이상의 주장이 중복되는 준비서면은 카테고리 방식에 따라 하위 준비서면으로 자동적으로 분류한다.

4) 전자기록뷰어의 주장의 중복 표시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을 색깔(현재 관행적으로 원고 제출 서면은 빨강색으로, 피고 제출 서면은 파랑색으로 구분한다)로 구분하여(원고 제출 서면에 사용하는 색깔과 피고 제출 서면에 사용하는 색깔을 구분한다),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의 글자는 검정색으로 하고 중복되는 글자 밑에 각 서면을 특정하는 색깔의 줄이 나타나게 한다.

나. 판단누락 방지

주장정리배너에 확인 아이콘과 판결문 입력 아이콘을 만들고, 법관이 주장정리배너의 각 해당 부분을 확인한 경우에는 확인 아이콘 클릭하고(법관은 확인 아이콘이 클릭되어 있으면 각 해당 부분을 확인하였음을 알 수 있다), 법관이 판결문 입력 아이콘을 클릭하면 판결문작성관리시스템의 판결서에 자동적으로 주장 내용과 해당 서면 및 페이지가 자동적으로 나타나고, 전자기록뷰어의 해당 서면에 판

결서에 입력된 부분 블록형식으로 나타난다.

다. 주장정리배너 예시

1) 준비서면 중복 활용 방안

가) 중복 정도 30% 문단 주장정리배너

중복 내용	서면	페이지	확인 아이콘	판결서 입력 아이콘
내용	2022. 11. 30.	5	확인 클릭	입력 클릭
내용	2022. 12. 1.	4	확인 클릭	입력 클릭

나) 중복정도 30% 미만 문단 주장정리배너

중복 내용	서면	페이지	확인 아이콘	판결서 입력 아이콘
내용	2022. 11. 30.	6	확인 클릭	입력 클릭
내용	2022. 12. 1.	7	확인 클릭	입력 클릭

2) 키워드 검색 기능 활용 주장정리배너

키워드	서면	페이지	확인 아이콘	판결서 입력 아이콘
내용	2022. 11. 30.	5	확인 클릭	입력 클릭
내용	2022. 12. 1.	4	확인 클릭	입력 클릭

3) 당사자 의사 활용 주장정리배너

서면	제출일	e-form 내용	확인 아이콘	판결서 입력 아이콘
준비서면	2022. 11. 30.		확인 클릭	입력 클릭
30% 중복 서면	2022. 12. 1.		확인 클릭	입력 클릭

Ⅶ. 소송절차자동화시스템 오작동 통제

1. 오작동에 대한 기술적 통제

가. 정적 분석

알란 튜링은 ‘참인 명제를 모두 만들어 낼 수 있는 튜링기계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증명함로써 ‘튜링기계가 멈출지 또는 멈출지 않을지, 즉 멈춤문제(halting problem)를 푸는 튜링기계는 존재할 수 없다’고 증명하여 쿠르트 괴델(Kurt Gödel)이 1931년에 증명한 “기계적인 방식만으론 수학의 모든 사실들을 만들어 낼 수 없다.”는 괴델

의 불완전성 정리(Gödel's incompleteness theorems[198])를 증명하였다.[199] 컴퓨터 프로그램(알고리즘)이 그 의도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고, 그 의도대로 작동하는지 여부는 컴퓨터를 실행시켜 보아야 알 수 있다.

컴퓨터 프로그램(알고리즘)이 의도대로 작동하는지를 검사하는 프로그램 분석은 프로그램 의미(semantics)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거나 도움이 되는 모든 곳에 적용될 수 있고,[200] 프로그램 분석 방법 중 정적 프로그램 분석(static program analysis)은 컴퓨터의 실행 없이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결함을 분석하는 방법이다.[201][202]

---

198) Gödel's first incompleteness theorem states that all consistent axiomatic formulations of number theory which include Peano arithmetic include undecidable propositions. This answers in the negative Hilbert's problem asking whether mathematics is "complete" (in the sense that every statement in the language of number theory can be either proved or disproved). Gödel's second incompleteness theorem states no consistent axiomatic system which includes Peano arithmetic can prove its own consistency. Stated more colloquially, any formal system that is interesting enough to formulate its own consistency can prove its own consistency if it is inconsistent. [https://mathworld.wolfram.com] (2022. 12. 25. 확인)

199) 이광근, 전게서, 25-40.

200) We call a formal definition of a software's runtime behavior, which is determined by its source language's meaning, semantics.
Checking if a software will run as intended is equivalent to checking if this software satisfies a semantic property of interest.
In the following, we call a technique to check that a program satisfies a sematic property program analysis, and we refer to an implementation of program analysis as a program analysis tool.
Program analysis can be applied wherever understanding program semantics is important or beneficial. First, software developers(both humans and machines) may be the biggest beneficiaries. Software developers can use program analysis to understand legacy software that they maintain. System security gatekeepers can use program analysis to proactively screen out programs whose semantics can be malicious.[Xavier Rival and Kwangkeun Yi, Introduction to Static Analysis: an Abstract Interpretation Perspective, MIT Press(February 2020.), 2.]

201) 소프트웨어 검증기술: 소프트웨어를 실제로 실행해보지 않고도 어떠한 형태로 실행되고 어떤 오류가 발생하는지 검증해내는 기술(이광근, SNUON 컴퓨터과학

컴퓨터 프로그램의 ① 메모리 결함은 프로세스 내부의 메모리 할당, 해제 및 접근 과정에서 발생하는 결함이고, ② 병행성 결함은 멀티스레드 혹은 멀티프로세스 환경에서 스레드나 프로세스 간 자원 공유 및 동기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결함이며, ③ 예외처리 결함은 예외가 발생하였으나 예외처리 루틴이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는 결함으로서 일단 발생하게 되면 시스템 다운과 같은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결함이다.[203]

소송절차자동화시스템은 민사소송 절차 중 일부 소송절차에 한정되므로, 소송절차자동화시스템이 그 의도대로 작동하는지 여부 및 소송절차자동화시스템이 그 의도대로 작동하기 위하여 확보하여야 할 기술 등에 대하여는 전문가에 의한 정적 프로그램 분석이 적합하다.[204]

나. 보안과 윤리

전자소송홈페이지는 다수가 사용하고 있어 소송절차자동화시스템

이 여는 세계_13.4 소프트웨어검증기술의 필요성_)
[https://www.youtube.com] (2022. 12. 25. 확인)

202) 정적분석에 대하여는 Xavier Rival and Kwangkeun Yi, 전게서 참조.

203) 박지현·최병주,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신뢰성 시험 개선점 도출을 위한 소프트웨어 정적/동적 검증 분석 사례연구,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 공학 제8권 제7호, 한국정보처리학회 (2019. 7.), 266.

204) 전자정부법 제57조(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 감리)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특성 및 사업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제58조 제1항에 따른 감리법인으로 하여금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64조의2에 따라 전자정부사업관리를 위탁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정부사업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감리를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해당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감리결과를 반영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감리를 하는 법인 또는 기관은 해당 정보시스템이 적절하게 개발ㆍ구축되고 있는지를 감리기준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감리를 하는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범위 및 감리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등 관련 전자소송 관련 시스템에 내재된 보안 취약성을 설계단계에서부터 제거하여야 하고, 전자소송 관련 시스템에서 버그(프로그램 상의 결함에 의해 컴퓨터 오류나 오작동이 일어나는 현상)를 찾아내는 기술 등도 필요하며,[205][206] 보안이 적용된 플랫폼도 필요하다.[207]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 소속「사법의 효율성을 위한 유럽위원회」(CEPEJ, European Commission for the Efficiency of Justice)가 2018. 12. 3. 「사법체계 및 사법환경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유럽윤리헌장」[European Ethical Charter on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in judicial systems and their environment]을 제정하여 AI가 존중해야 할 핵심원칙으로 ① 기본권 존중의 원칙(인공 지능 도구 및 서비스의 설계 및 구현이 기본권과 양립할 수 있도록 보장함), ② 차별 금지 원칙(특히 개인 또는 개인 집단 간의 차별이 발전하거나 강화되는 것을 방지함), ③ 품질 및 보안 원칙(사법 결정 및 데이터 처리와 관련하여 안전한 기술 환경에서 다분야 방식으로 고안된 모델과 함께 인증된 출처 및 무형 데이터를 사용함), ④ 투명성, 공정성 및 공정성의 원칙(데이터 처리 방법을 접근 가능하고 이해하기 쉽게 만들고 외부 감사를 승인함), ⑤ 사용자 통제의 원칙(규범적 접근 방식을 배제하고 사용자가 행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자신의 선택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함)을 채택하였다.[208] 전자소송 제도의 효율성과 기능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

---

205) 이광무·이병영, 퍼즈 테스팅을 통한 소프트웨어 희귀 버그 탐색 기법의 동향과 전망, 정보보호학회논문지 제31집 제5호, 한국정보보호학회 (2021. 10.)

206) 김선우·이병영, Copy & UIXX 취약점 탐지를 위한 퍼저 설계,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한국정보과학회 (2021. 12. 20.)

207) 구름플랫폼 (Gooroom Platform)은 클라우드 업무환경 전환에 대비하기 위해 오픈소스를 활용하여 개발하고 보안성을 강화한 단말 운용 소프트웨어 플랫폼이다.
[https://www.gooroom.kr/content/intro/] (2023. 1. 25. 확인)

208) The CEPEJ has identified the following core principles to be respected in the field of AI and justice:
Principle of respect of fundamental rights: ensuring that the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tools and services are

고, 당사자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하여 소송절차자동화시스템에 대하여「사법체계 및 사법환경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유럽윤리헌장」의 핵심원칙을 적용함이 바람직하다.

2. 오작동으로 진행된 소송절차에 대한 통제

가. 재판부의 오작동 점검과 통제

법원사무관등은 배당된 사건에 관하여 소송절차자동화시스템 캐비넷으로 소송절차자동화시스템이 자동화 대상 절차를 제대로 수행하였는지를 미리 확인하여 소송절차자동화시스템 오작동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재판부는 소송절차자동화시스템 캐비넷으로 배당된 사건의 절차 진행 단계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고, 무변론판결 선고기일, 변론기일 및 조정기일을 진행하기 전에 소장 심사, 당사자의 절차적 의견 확인 및 답변서 제출 등을 확인하여 소송절차자동화시스템이 자동화 대상 절차를 제대로 수행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소송절차자동화시스템의 오작동으로 진행된 소송절차를 취소할 수 있다.[209]

---

compatible with fundamental rights;
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 specifically preventing the development or intensification of any discrimination between individuals or groups of individuals;
Principle of quality and security: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judicial decisions and data, using certified sources and intangible data with models conceived in a multi-disciplinary manner, in a secure technological environment;
Principle of transparency, impartiality and fairness: making data processing methods accessible and understandable, authorising external audits;
Principle "under user control": precluding a prescriptive approach and ensuring that users are informed actors and in control of their choices.
[https://www.coe.int/en/web/cepej/cepej-european-ethical-charter-on-the-use-of-artificial-intelligence-ai-in-judicial-systems-and-their-environment] (2023. 1. 21. 확인)

209) 민사소송법 제222조(소송지휘에 관한 재판의 취소)

나. 당사자에 의한 통제

소송절차자동화시스템에 따른 소송절차가 소장부본 송달누락,[210] 변론기일 통지 누락[211] 등 당사자의 소송수행에 있어 편의와 이익을 보호하는 효력규정에 어긋난 경우 바로 재판부에 이의권(책문권)을 행사하여 재판부에게 오작동된 절차의 취소를 촉구할 수 있다.[212]

다. 상소심에 의한 통제

소송절차자동화시스템의 오작동으로 자동화 대상이 되는 소장심사, 송달, 기일의 지정 등의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재판부가 소송절차자동화시스템의 오작동으로 진행된 소송절차를 간과하고 판결을 선고한 경우에 상소심에서 소송절차자동화시스템의 오작동으로 진행된 소송절차를 통제할 수 있다. 즉 행정기본법 제20조의 자동적 처분에 대한 법적 평가와 같이 소송절차자동화시스템이 수행한 절차는 법원 소속 구성자가 수행한 해당 절차와 동일한 법적 평가를 받는다.

당사자는 ① 항소심에서 제1심법원의 전속관할 위반을 주장할 수 있고,[213] ② 판결에 ㉠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때, ㉡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거나 모순이 있는 때에는 상고할 수 있으며,[214] ③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소송의 지휘에 관한 결정과 명령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210) 원 법원이 소장을 송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구술변론기일의 소환을 받고 그에 대한 주장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의 위배를 지실하고 지체없이 그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여 책문권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다(대법원 1947. 2. 25. 선고 4280민상8 판결).

211) 당사자가 변론기일 소환장의 송달을 받은 바 없다 하더라도 변론기일에 임의출석하여 변론을 하면서 그 변론기일의 불소환을 책문하지 아니하면 책문권의 상실로 그 하자는 치유된다(대법원 1984. 4. 24. 선고 82므14 판결).

212) 민사소송법 제151조(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
당사자는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것임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바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 다만, 그 권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13) 민사소송법 제411조(관할위반 주장의 금지)
당사자는 항소심에서 제1심 법원의 관할위반을 주장하지 못한다. 다만, 전속관할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때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215]

법원이 인지의 미첩 또는 부족을 간과하여 재판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재판이 무효는 아니고, 상급심에서 인지의 미첩 또는 부족을 발견한 경우 상급심이 보정을 명할 수 있다.[216][217]

제1심법원이 피고의 답변서 제출을 간과한 채 무변론판결을 선고하였다면, 항소법원은 제1심판결의 절차가 법률에 어긋날 때에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판결할 수 있다.[218]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당사자를 소환하여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그러한 절차 없이 변론기일에 선고된 판결은 위법하다.[219]

---

214) 민사소송법 제424조(절대적 상고이유)
① 판결에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한다.
3.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때
6.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

215) 민사소송법 제451조(재심사유)
①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216) 인지의 미첩 또는 부족을 간과하여 신청에 응한 재판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재판의 효력까지 무효로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원심이 간과한 인지의 미첩 또는 부족을 상급심에서 발견한 경우 상급심이 보정을 명할 수 있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8719 판결).

217)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된 후에는 소송계속이 이루어져 당사자 쌍방에 대립관계의 절차가 개시되기 때문에 의하여 명령에 의한 소장각하를 할 수 없고 법원은 종국판결로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218) 제1심법원이 피고의 답변서 제출을 간과한 채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무변론판결을 선고하였다면, 이러한 제1심판결의 절차는 법률에 어긋난 경우에 해당한다. 항소법원은 제1심판결의 절차가 법률에 어긋날 때에 제1심판결을 취소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417조). 따라서 제1심법원이 피고의 답변서 제출을 간과한 채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무변론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제1심판결 절차가 법률에 어긋난 경우 항소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17조에 의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항소법원이 제1심판결을 취소하는 경우 반드시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건을 환송하지 않고 직접 다시 판결할 수 있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55085 판결).

219)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일반 민사사건에 있어서 판결로 소를 각하하기 위하여는, 법원이 변론을 연 경우에는 물론이며, 변론 없이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선고기일을 지정하여(변론을 연 경우에는 변론을 종결하고) 당사자

피고가 항소이유서와 준비서면을 통해 소장 부본이 자신에게 송달되지 않았음을 명시적으로 지적하였다면 항소심은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다시 송달하고 변론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220]

제1심법원이 변론기일통지서를 피고에게 제대로 송달하지 않고 피고가 출석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진행한 변론기일은 부적법하고, 부적법하게 진행된 변론기일에 한 판결선고기일의 지정·고지의 효력이 피고에게 미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항소심은 제1심판결 전부를 일단 취소하고 소장의 진술 등 모든 변론절차를 새로 진행하여야 한다.[221]

Ⅷ. 전자독촉절차 중 자동화 대상 절차

를 소환하고 그 지정된 선고기일에 소각하의 종국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침이 없이 변론기일에 선고된 판결은 위법하다(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누2699 판결).

220) 제1심법원이 당초 소장 부본 송달이 부적법함을 깨닫고 피고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하였으면서도 정작 소장 부본에 대한 공시송달을 누락한 채 변론기일을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가 추완항소를 하면서 항소이유서와 준비서면을 통해 소장 부본이 자신에게 송달되지 않았음을 명시적으로 지적하였음에도, 원심법원이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다시 송달하지 않은 채 변론절차를 진행하여 항소를 기각한 사안에서, 소장 부본을 다시 송달하지 않은 채 항소를 기각한 원심의 조치는 소송절차를 중대하게 위반하였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8388 판결 참조).

221) 제1심법원은 피고에게 소장 부본만을 제대로 송달하였을 뿐 최초의 변론기일소환장은 물론 제8차에 걸친 변론기일소환장 전부를 전혀 적법하게 송달하지 아니한 셈이 되는데, 변론기일소환장을 피고에게 제대로 송달하지 않고 피고가 출석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변론기일을 진행하였으므로 적법하게 변론을 진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부적법하게 진행된 변론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선고기일을 지정·고지한 만큼 그 지정·고지의 효력이 피고에게 미친다고 할 수도 없으며, 판결선고기일소환장은 아예 송달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제1심의 중대한 소송절차가 법률에 어긋난 경우에 해당하여 제1심판결은 부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고, 제1심의 판결절차(판결의 선고절차) 역시 법률에 어긋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은 민사소송법 제416조, 제417조에 의하여 제1심판결 전부를 일단 취소하고 소장의 진술을 비롯하여 소송서류의 송달과 증거의 제출 등 모든 변론절차를 새로 진행한 다음 본안에 대하여 다시 판단하였어야 한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11988 판결).

1. 독촉절차의 개요

가. 독촉절차의 의의

독촉절차는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는 절차이다.[222]

상대방인 채무자가 채권의 존부를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자의 청구에 대하여 채권자가 간단한 절차와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집행권원[223]을 취득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이다.

독촉절차에 있어서 법원의 사무는 관할[224]과 인지를 심사하고 송달을 확인하는 등의 정형적인 사무이고, 채무자의 이의신청[225] 등에 의하여 쟁송적 성격을 가지게 된다.

나. 지급명령

법원은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및 양수금 사건에 관한 지급명령 신청서 표준양식(전산양식 A2342, A2343, A2344, A2345, A2346, A2347)을 민원접수창구에 비치하고 있거나, 그 양식이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 등재되어 있다.[226]

---

222) 민사소송법 제462조(적용의 요건)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223) 민사집행법 제56조(그 밖의 집행권원)
강제집행은 다음 가운데 어느 하나에 기초하여서도 실시할 수 있다.
3. 확정된 지급명령

224) 민사소송법 제463조(관할법원)
독촉절차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제7조 내지 제9조, 제12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225) 민사소송법 제470조(이의신청의 효력)
①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는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226) 독촉절차관련 재판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재판예규 제1661호(재민 2002-4)] 제2조(독촉절차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
① 각급법원에서는 금전 등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

독촉법원은 지급명령신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신속하게 심사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바로 지급명령을 발령하고, 지급명령의 정본을 독촉절차안내서(전산양식 A2332)와 함께 채무자에게 먼저 송달한다.[227]

전자독촉사건의 처리업무를 담당하는 법원사무관등은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하여 지급명령신청서 등이 접수되면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검토한 후 지급명령, 각하명령, 각하결정, 보정명령 등 재판서를 생성하여 전자독촉 담당 사법보좌관의 결재를 요청하여야 한다.[228]

적으로 하는 청구의 경우에는 독촉절차를 이용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간이·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민원접수창구에 비치하거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독촉절차의 이용을 적극 홍보하고, 접수되는 독촉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독촉절차 이용의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각급법원은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및 양수금 사건에 관한 지급명령신청서 표준양식(전산양식 A2342 , A2343 , A2344 , A2345 , A2346 , A2347)을 민원접수창구에 비치하거나, 그 양식이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 등재되어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227) 독촉절차관련 재판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재판예규(재민 2002-4)] 제4조(지급명령의 발령 및 채무자 송달)

① 독촉사건을 담당하는 법원(다음부터 독촉법원 이라 한다)은 지급명령신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신속하게 심사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바로 지급명령을 발령한다.

② 지급명령의 정본은 독촉절차안내서(전산양식 A2332)와 함께 채무자에게 먼저 송달한다.

③ 채무자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불능된 때(다만, 독촉법원이 민사소송법 제46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직권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친 경우 제외)에는 채권자에게 보정명령(전산양식 A2333)을 하고, 송달료가 부족할 경우에는 보정명령과 함께 당사자 수에 따른 1회분의 송달료를 추가로 납부할 것을 명한다.

④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의2 제1항의 채권자가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원인을 소명한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전산양식 A1450-1).

228)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판예규 제1837호(재일 2012-1)] 제19조의2(지급명령신청서 등의 접수 및 처리요령)

① 전자독촉사건의 처리업무를 담당하는 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다음부터 "전자독촉 담당 법원사무관등 "이라 한다)는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하여 지급명령신청서 등이 접수되면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검토한 후 지급명령, 각하명령, 각하결정, 보정명령 등 재판서를 생성하여 전자독촉 담당 사법보좌관의 결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사자가 법인인 사건에서 법인등기부등본이 첨부되지 아

다. 지급명령서가 송달불능된 경우

독촉법원은 채권자에게 주소보정명령을 하고, 채권자가 주소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지급명령신청서를 각하한다.[229]

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주소보정명령을 받은 경우에 법원에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공시송달 등의 사유로 직권으로 지급명령 신청 사건을 소송절차에 회부할 수 있다.[230]

라. 지급명령서가 송달된 경우

1)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게 되고, 지급명령신청

니하거나 발급일로부터 3월이 경과된 법인등기부등본이 첨부된 때에는「사법부 내 등기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업무처리지침」제2조 제1항의 등기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여 당해 법인에 대한 법인등기정보를 열람·확인한다.

③ 전자독촉 담당 사법보좌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재요청된 사항을 심사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바로 지급명령 등을 발하여야 한다.

④ 전자독촉 담당 사법보좌관은 채무자에 대한 지급명령정본의 송달실시 전까지 결정이나 명령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전자독촉 담당 사법보좌관은 당사자가 법인인 사건에서 지급명령신청서와 첨부된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제2항에 따라 열람한 법인등기정보의 내용이 서로 다른 때에는 이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지급명령신청서에 기재된 당해 법인의 표시에 의하여 제2항에 따른 법인등기정보의 열람을 할 수 없는 때에도 같다.

⑥ 전자독촉 담당 사법보좌관은 지급명령 등 신청서에 기재된 채권자의 표시와 첨부된 소송위임장에 기재된 채권자의 표시 또는 채권자에 대한 등록된 회원정보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이를 보정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⑦ 전자독촉 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사법보좌관의 지시에 따라 보정명령 등의 발령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29) 민사소송법 제464조(지급명령의 신청)
지급명령의 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30) 민사소송법 제466조(지급명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 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받은 경우에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지급명령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송달할 수 없거나 외국으로 송달하여야 할 때에는 법원은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231][232]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소제기신청 또는 지급명령신청시에 붙인 인지액을 뺀 액수의 인지를 보정하라고 명하고, 채권자가 인지보정기간 내에 인지를 보정한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에 보내야 한다.[233]

법원으로부터 인지보정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인지보정기간 내에 인지를 보정하는 대신 조정으로의 이행을 신청할 수 있다.[234]

---

231) 민사소송법 제470조(이의신청의 효력)
①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는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232) 민사소송법 제472조(소송으로의 이행)
① 채권자가 제4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제기신청을 한 경우, 또는 법원이 제46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명령신청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②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233) 민사소송법 제473조(소송으로의 이행에 따른 처리)
① 제472조의 규정에 따라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소제기신청 또는 지급명령신청시에 붙인 인지액을 뺀 액수의 인지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인지를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 법원은 결정으로 지급명령신청서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규정된 인지가 보정되면 법원사무관 등은 바로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에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사건이 합의부의 관할에 해당되면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소송기록을 관할법원 합의부에 보내야 한다.
④ 제472조의 경우 독촉절차의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

234) 민사조정법 제5조의2(독촉절차의 조정으로의 이행)
①「민사소송법」제469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가 적법한 이의신청을 하여 같은 법 제473조제1항에 따라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이 인지의 보정을 명한 경우 채권자는 인지를 보정하는 대신 해당 기간 이내에 조정으로의 이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행신청이 부적법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 채권자가 제1항에 따라 적법한 이행신청을 한 경우에는「민사소송법」제472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조정이 신청된 것으로 본다.

2)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는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2. 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 구축사업

독촉절차에 관하여 절차 단계를 워크플로우로 구성하여 단계별로 머물러 있는 사건수 및 다음단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① 법원사무관등이 인지하여 특정 업무를 하여야 하는 시점에 대한 단계를 기준으로 업무 흐름을 제공하도록 구현하고, ② 마우스 오버 또는 마우스 우클릭 시 다음 단계 업무 수행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구현한다.[235]

가. 워크플로우 기본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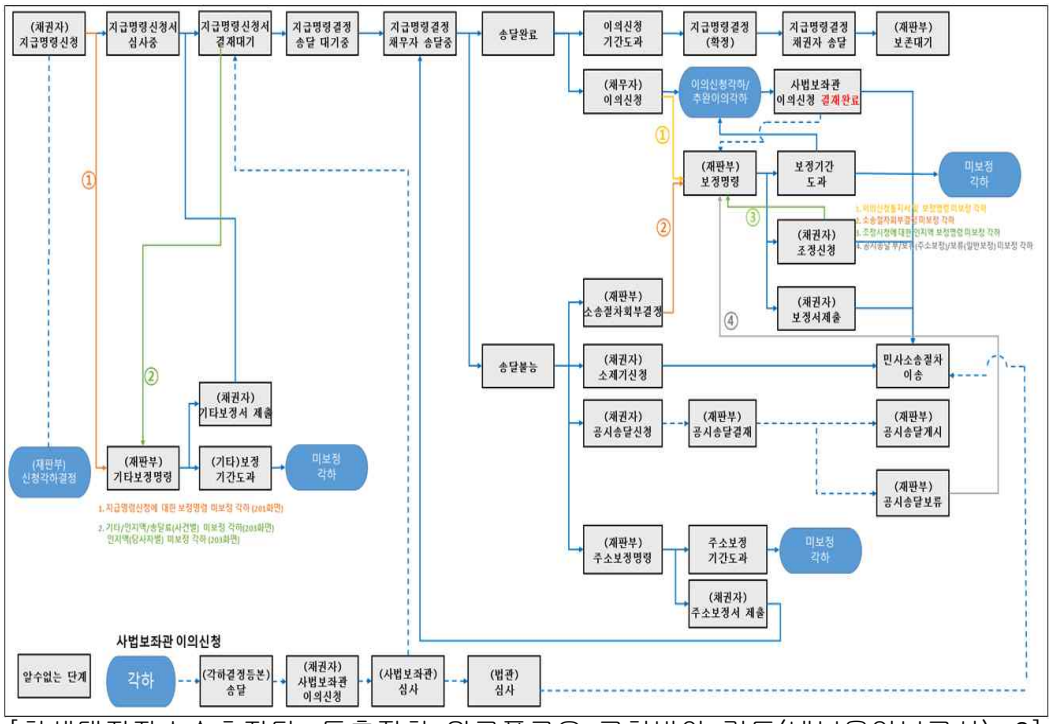

[차세대전자소송추진단, 독촉절차 워크플로우 구현방안 검토(내부용역보고서), 8]

235) 차세대전자소송추진단, 독촉절차 워크플로우 구현방안 검토[내부용역보고서], 법원행정처(2021. 5.), 1, 7.

나. 워크플로우 진행단계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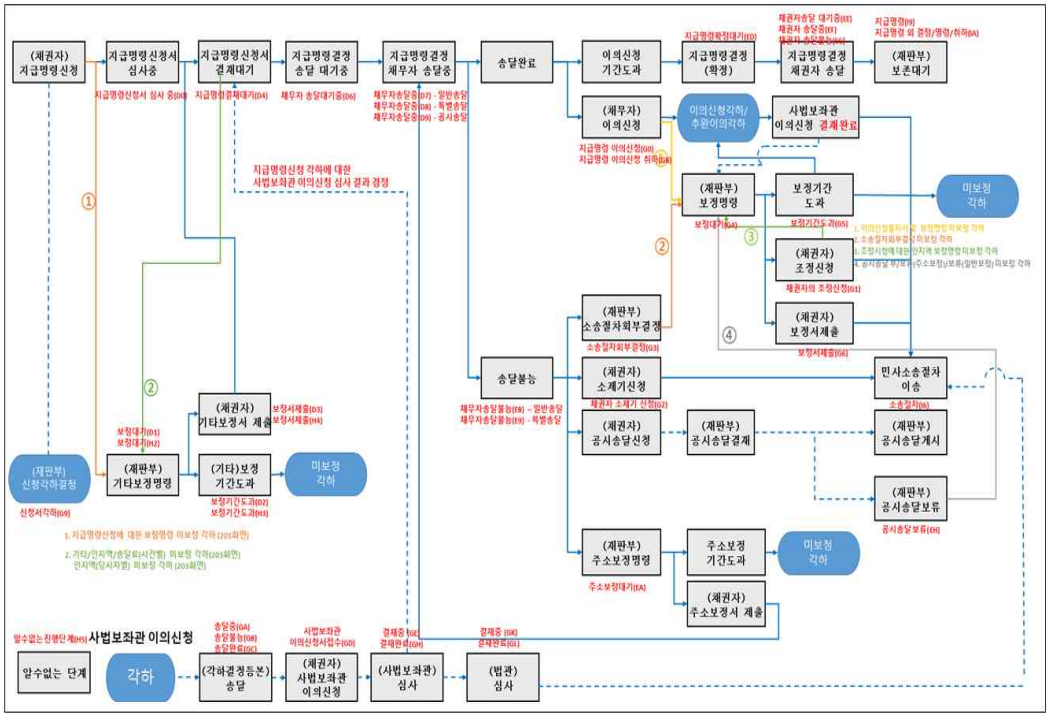

[차세대전자소송추진단, 독촉절차 워크플로우 구현방안 검토(내부용역보고서), 9]

다. 단계 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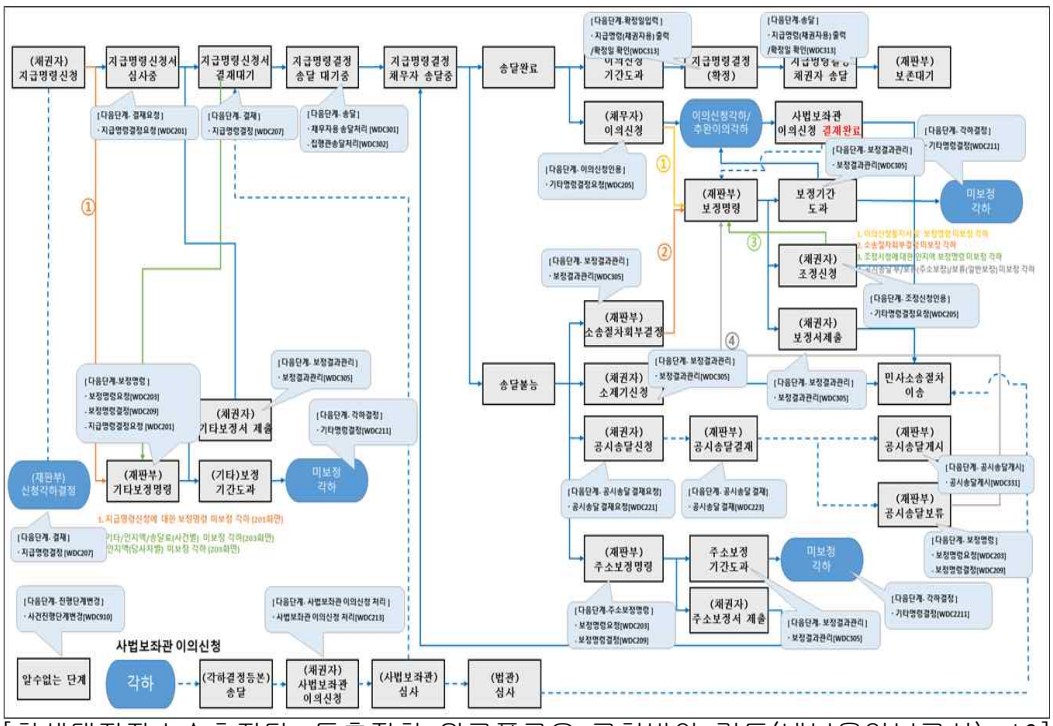

[차세대전자소송추진단, 독촉절차 워크플로우 구현방안 검토(내부용역보고서), 10]

3. 전자독촉절차 자동화 절차 방안

가. 전자독촉절차 중 채권자의 절차적 권리

1) 지급명령서 송달불능 - 채권자 소송이행 선택

채권자는 소제기 신청을 할 때에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과 지급명령신청서에 붙인 인지액의 차액과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채권자가 인지 차액과 송달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독촉법원은 채권자에게 인지 등 보정명령을 하며, ① 채권자가 보정기간 내에 인지를 보정하지 아니하면 독촉법원은 결정으로 지급명령신청서를 각하하여야 하고, ② 채권자가 보정기간 내에 인지를 보정하면 법원사무관등은 사법보좌관의 완결공람을 거쳐 관할 법원에 전자기록을 송부한다.

2) 채무자 이의신청서 제출 - 채권자 조정절차 선택

채무자의 이의신청서 제출에 따라 독촉법원으로부터 인지보정(민사조정 수수료 차액) 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인지를 보정하는 대신 인지보정기간 내에 전자독촉 사건에 대하여 조정으로의 이행을 신청을 한 경우, ① 채권자가 인지보정기간을 도과하여 이행신청을 하면 독촉법원은 결정으로 각하하여야 하고,[236] ② 채권자가 인지보정기간 내에 이행신청을 하면, 독촉법원은 채권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민사조정법 제5조 제4항에 따라 내야 할 조정수수료에서 지급명령

---

236) 민사조정법 제5조의2(독촉절차의 조정으로의 이행)

① 「민사소송법」 제469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가 적법한 이의신청을 하여 같은 법 제473조 제1항에 따라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이 인지의 보정을 명한 경우 채권자는 인지를 보정하는 대신 해당 기간 이내에 조정으로의 이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행신청이 부적법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 채권자가 제1항에 따라 적법한 이행신청을 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472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조정이 신청된 것으로 본다.

신청서에 붙인 인지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채권자가 보정기간 내에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독촉법원은 결정으로 지급명령신청서를 각하하여야 하고, 채권자가 보정기간 내에 수수료를 납부하면 법원사무관등은 민사조정법 제3조에 따른 관할법원에 전자독촉기록을 송부한다.

나. 채권자의 절차적 권리 반영 자동화 모형

전자독촉절차에 채권자의 절차적 권리가 반영될 수 있는 배너(이하 '독촉절차의견반영배너')를 구축한다.

채권자가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독촉절차의견반영배너에 ① ㉠ 소제기, ㉡ 조정이행, ㉢ 소제기 및 조정이행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② 채권자에게 ㉠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와 송달료, ㉡ 수수료, ㉢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와 송달료 및 수수료 중 큰 금액을 미리 납부한다.

전자독촉절차자동화시스템은 ① 채무자에 대한 지급명령서가 송달불능되면, 채권자에게 송달결과를 자동적으로 통지하고, 전자독촉 사건을 자동적으로 독촉법원의 소송절차 단계로 인계하고, ② 채무자에 대한 지급명령서가 송달되어 채무자가 이의신청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이의신청을 자동적으로 통지하고, 전자독촉 사건을 자동적으로 독촉법원의 조정절차 단계로 인계하며, ③ 채권자가 소제기 및 조정이행을 선택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서 송달불능 및 이의신청서 제출 경우에 따라 자동적으로 전자독촉 사건을 소송절차 단계 및 조정절차 단계로 인계한다.

채권자가 미리 독촉절차의견반영배너(소제기와 조정이행)를 클릭하면, 전자독촉절차자동화시스템은 전자독촉 사건을 바로 소송절차 단계 또는 조정절차 단계로 진입하도록 하여, '인지차액 및 송달료 보정명령'과 미보정으로 인한 '지급명령신청서 각하결정' 또는 '이행

신청 각하 결정'과 '수수료 보정명령' 및 수수료 미보정으로 인한 '지급명령신청서 각하 결정' 등의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

전자독촉절차에서 소송비용을 예납하지 아니하면 지급명령신청서가 접수되지 아니하므로 채권자는 소송비용을 예납할 것이고, 만일 독촉법원의 지급명령신청서 심사단계에서 채권자가 지급명령신청서에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와 송달료 또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지급명령신청에 따른 인지와 송달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소제기 또는 조정이행의 선택을 취소한 것으로 간주하여 통상의 전자독촉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채무자에 대한 지급명령서가 송달되어 전자독촉절차의 다음 절차가 완결되었을 때에 독촉법원은 채권자에게 남아있는 인지 및 송달료, 또는 수수료를 반환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다. 전자독촉절차자동화시스템 오작동 점검

독촉법원은 '소송절차 인계 단계(완결공람)' 또는 '조정절차 인계 단계(완결공람)'에서 전자독촉절차자동화시스템의 오작동 여부 등을 확인한다.[237]

Ⅸ. 소송절차 자동화에 대한 비판과 반론

1. 소장심사에 대한 자동흠결체크의 불완전성

전자소송은 접수사무관등과 참여사무관등의 2단계 소장심사를 하

---

237)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판예규 제1837호(재일 2012-1)] 제26조(전자독촉의 소송이행)
① 전자독촉사건에 대하여 채권자의 소제기신청, 법원의 소송절차회부결정 또는 채무자의 지급명령에 대한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고 인지가 보정된 경우, 전자독촉 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전자독촉 담당 사법보좌관의 완결공람을 거쳐 전자독촉기록을 본안의 관할법원에 전자적으로 송부한다. 다만 「민사조정법」 제5조의2 제1항 에 따른 조정으로의 이행을 신청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관할법원에 송부한다.

므로 소장심사가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나 자동흠결체크는 관할, 인지, 송달료만 확인이 가능하고, 전속관할에 관한 안내가 없어 자동흠결체크 기능은 불완전하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소장심사는 재판장의 권한으로서 현재 전자소송이 진행하는 접수사무관등과 참여사무관등의 2단계 소장심사는 재판장 내지 법원을 보조하는 의미에서의 형식적 사항에 대한 심사로서 사실상의 조사에 해당한다. 소장심사 대상 중 인지, 송달료 예납에 대한 보정명령과 주소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소장각하명령 대상이고, 나머지 소장심사 대상 부분은 결정 또는 판결에 의한 이송[238] 또는 소 각하 대상이므로 재판장의 최초 기록 심사시기인 답변서 심사 단계 또는 무변론판결 작성 단계에서 재판장이 실질적인 심사를 하는 방식이 더욱 효율적이다.

2. 소송절차자동화시스템의 비효율성

소장심사의 자동흠결체크에서 걸러지지 아니한 흠결이 있을 수 있고 소장부본 송달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소장부본과 무변론판결 선고기일지정 또는 변론기일지정 내지 조정기일지정 및 이에 대한 송달실시는 송달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무용한 절차를 반복하여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소장심사의 자동흠결체크에서 걸러지지 아니한 흠

---

238) 민사소송법 제34조(관할위반 또는 재량에 따른 이송)
① 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한다.
② 지방법원 단독판사는 소송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는 경우라도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같은 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송할 수 있다.
③ 지방법원 합의부는 소송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는 경우라도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스스로 심리·재판할 수 있다.
④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에 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결에 대하여 판결선고 전까지 원고에게 보정명령을 할 수 있고,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는 피고에 대한 송달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소송을 제기하므로 피고에 대한 송달불능이 되는 경우는 송달이 되는 경우보다는 적은 건수이고,[239] 무엇보다 소송절차자동화시스템에 의한 절차는 송달불능이 되지 아니하는 상대방에 대한 소송 절차를 신속하게 하므로 비효율적이라고 볼 수 없다.

제1심판결의 선고기간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5월 이내인데, 민사소송법 제199조[240]는 제1심법원이 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당사자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훈시규정이나,[241] 제1심법원은 이를 준수하려고 노력하여야 함은 당연하고, 실질적 적법절차가 지배하는 법치주의의 일차적인 수범자는 국가권력이므로[242], 소송절차자동화시스템에 의한 절차를 진행하면 중복된 절차와 기일지정과 결정 또는 송달실시 등에 따라 지체되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소송절차자동화시스템에 의하여 신속하게 당사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변론기일 등을 지정하면 소장 접수일로부터 적어도 2개월[243]

---

239) 2015년 기준 주소보정명령 발생 비중은 민사 단독 16.7%이고, 합의 11.8%이며 [차세대전자소송추진단, 6. 지능형 사건처리 기반 재판사무혁신(내부용역보고서), 법원행정처, V-747.], 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 구축사업의 행정안전부 주소정보 연계에 따른 송달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주소보정명령 발생 비중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40) 민사소송법 제199조(종국판결 선고기간)
판결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 다만,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는 기록을 받은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

241) 당사자는 법원 또는 상대방의 소송행위가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151조에 의하여 그 소송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이 당사자의 이의를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송행위를 무효로 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지만,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 중 단순한 훈시적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199조, 제207조 등은 모두 훈시규정이므로 법원이 종국판결 선고기간 5월을 도과하거나 변론종결일로부터 2주 이내 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9009 판결).

242) 이효원,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 ㈜북이십일21세기북스 (2020. 6. 30.), 148-150.

243) 2022년 1월부터 5월까지 전국 법원 1심 민사본안사건은 접수 후 첫 기일이 잡히기까지 평균 138.1일(4.6개월)이, 민사본안사건 항소심은 접수 후 첫 기일이

이내에 변론기일이 지정될 수 있어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법원으로 하여금 판결선고기간을 단축하게 할 수 있고, 사건의 적체로 변론기일이 2개월 이내에 지정되지 않더라도 당사자에게 미리 변론기일을 통지하여 당사자가 변론기일 전에 변론을 충실히 준비할 수 있어 변론이 집중되어 조기에 변론이 종결될 수 있다.

3. 당사자의 권리 침해 및 재판장의 집중심리 저해

소송절차자동화시스템에 의하면 소장 접수 단계에서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상대방 당사자인 피고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할 수 있고, 재판장의 사건분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모든 사건을 분산·병행심리를 하여 재판장의 집중심리를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소장 접수 단계에서 자동적으로 변론기일을 지정하면 피고에게 답변서 제출을 독려하는 의미가 될 수 있고, 첫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어[244] 상대방 당사자는 소송의 준비를 위하여 첫 변론기일의 변경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소송절차자동화시스템이 피고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재판장의 최초 기록 심사시기는 답변서 심사 단계에 있어 답변서가 제출되기 전까지는 집중심리할 사건을 분류할 수 없고, 답변서 제출 이후에 변론기일을 지정하는 하는 것보다 소장 제출단계에서 변론기일을 지정하는 것이 조기 변론기일 지정제도 취지[245]에

잡히기까지 평균 220.2일(7.34개월)이 소요되었다고 한다[전국 민사1심 장기미제 총 7494건…5년 초과도 490건, 법률신문 (2022. 6. 20.), 3].

244) 민사소송법 제165조(기일의 지정과 변경)

① 기일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판장이 지정한다. 다만,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신문하거나 심문하는 기일은 그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지정한다.

② 첫 변론기일 또는 첫 변론준비기일을 바꾸는 것은 현저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도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이를 허가한다.

도 맞으며, 재판장이 소송절차자동화시스템이 지정한 변론기일 전에 소장과 답변서의 내용을 파악하여 직권으로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하거나 변론기일을 변경하여 효율적으로 사건관리를 함과 동시에 사건의 경중에 상관없이 조기에 모든 사건에 관하여 집중심리를 할 수 있다.

4. 판단누락 위험성 증가

법관이 주장정리배너 기능만 활용하면 오히려 법관이 전자기록에 있는 주장을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주장에 대한 판단누락의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전자기록뷰어의 서면에 판결문 등록 여부가 나타나면 법관은 등록되지 아니한 부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자동적으로 주장의 중복확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가 판단누락의 위험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X. 결론

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의 자동화 기반을 전제로, 행정청에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한 처분을 허용한 행정기본법 제20조의 자동적 처분을 민사소송 절차에 응용하여 자동화할 수 있는 소송절차와 자동화된 소송절차를 구현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송달, 기일지정, 중복된 주장의 정리 등에 대한 민사소송 절차의 자동화는 소장 접수 단계에서 소장 접수 순서에 따라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를 바로 반영할 수 있고, 보다 신속하게 기일을 지정할 수

---

245) 민사소송규칙 제69조(변론기일의 지정 등)
① 재판장은 답변서가 제출되면 바로 사건을 검토하여 가능한 최단기간 안의 날로 제1회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있으며, 보다 효율적으로 주장의 중복과 판단누락을 방지할 수 있어, 민사소송의 이상인 신속, 경제, 공정 및 적정을 달성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

민사소송 절차를 자동화 하려면 사법전자서명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등이 필요할 수도 있고, 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 자동화 기반으로 민사소송 절차의 자동화가 기술적으로 구현 가능한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도 필요할 수 있다.

전자소송 제도는 당사자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분쟁 해결의 효율성을 높이며 전자소송 관련 산업의 발전 등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므로,[246] 민사소송 절차의 자동화에 대하여 적극적인 법적·기술적 분석으로 민사소송 절차의 자동화 제도가 법률적으로 도입되기를 바란다.

특히 법률의 제·개정의 필요가 없는 의견반영배너와 주장정리배너 시스템 알고리즘을 기술적으로 실행에 옮길 수 있고 그 실행에 드는 비용(시간 또는 메모리)이 현실적이라면, 의견반영배너와 주장정리배너 시스템은 변론절차 및 판결서작성절차에서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으므로 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으로 구축되기를 바란다.

---

246) [제정]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이유

전자통신·인터넷 분야 기술의 획기적인 발전, 전자문서 이용의 증가에 따라 형사소송을 제외한 민사소송 등 소송 전반에 있어 소송절차에서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자소송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당사자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분쟁 해결의 효율성을 높이며 종이문서 제출·관리 비용과 부담을 감소시키고 전자소송 관련 산업의 발전 등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참고문헌>

박균성, 행정법강의, ㈜박영사 (2021. 2. 1.)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Ⅱ], (2017년)

2020 전자소송업무매뉴얼 법관

2020 전자소송업무매뉴얼 소송당사자

2021 민사 실무관 전자소송 업무매뉴얼

2021 민사 참여관 전자소송 업무매뉴얼

법제처, 행정기본법 해설서, 한결엠 (2021. 12.)

이광근, 컴퓨터과학이 여는 세계, 인사이트 (2021년)

이효원,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 ㈜북이십일21세기북스 (2020. 6. 30.)

전휴재・김성화・서용성, 민사전자소송 시행 10년, 그 성과와 전망-민사 본안소송을 중심으로, 사법정책연구원 (2022년)

조민호, 그림으로 정리한 알고리즘과 자료구조, 정보문화사 (2018. 8. 10.)

편집대표 민일영・김능환, 주석 민사소송법(1), 한국사법행학회 (2012. 3. 15.)

홍정선, 행정기본법해설, ㈜박영사 (2021. 5. 25.)

하명호, 행정법, ㈜박영사 (2022. 1. 10.)

J.Glenn.Brookshear・Dennis.Brylow(이광수, 윤영기 공역), 컴퓨터 과학 총론(Computer Science An Overview 13th Edition), 휴먼사이언스 (2019. 1. 7.)

Xavier Rival and Kwangkeun Yi(이광근), Introduction to Static Analysis: an Abstract Interpretation Perspective, MIT Press (February 2020.)

권은정, 자동적 처분의 행정법적 제 문제- 처분의 형식·절차 및 구제에 관한 쟁점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제38권 제3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9. 30.)

김도승, 인공지능 기반 자동행정과 법치주의, 미국헌법연구 제30권 제1호, 미국헌법학회 (2019. 4.)

김선우・이병영, Copy & UIXX 취약점 탐지를 위한 퍼저 설계,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한국정보과학회 (2021. 12. 20.)

김재선, 알고리즘 자동행정결정에 대한 행정법적 해석방안에 관한 연구-미국 행정법상 입법방안 논의를 중심으로-, 법학논총 제45권 제3호,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9.)

박가람, 자동적 행정행위의 현황과 전망, 행정법연구 제68호, 사단법인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22. 8.)

박동진・이재신, 문제구조화 지원을 위한 통합적 프레임워크, 경영교육연구 제37집, 한국경영교육학회 (2005. 3.)

박상철, 금융AI의 활용과 금융소비자보호: 차별금지, 설명요구권, 6대 판매규제 준수를 중심으로, BFL(Business Finance Law) 제107호,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21. 5.)

박상철, 정보보안의 법적 규율: 기술적 · 관리적 보호조치를 중심으로, 개인정보 보호의 법과 정책, 박영사 (2016년)

박지현・최병주,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신뢰성 시험 개선점 도출을 위한 소프트웨어 정적/동적 검증 분석 사례연구,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 공학 제8권 제7호, 한국정보처리학회 (2019. 7.)

유동훈, 자동적 재량행위 가능성에 관한 시론적 연구, 법제 통권 제697호, 법제처 (2022년)

유아람, 전자소송의 현황과 과제(전자소송 10년, 회고와 전망), 사법정책연구원 (2021. 9. 3.)

윤상호・정필운・이해원・박소영, 인공지능 기반 자동화행정의 주요 쟁점에 관한 연구, 한국공공관리학보 제34권 제3호, 한국공공관리학회 (2020. 9.)

은종환・황성수, 인공지능을 활용한 정책의사결정에 관한 탐색적 연구: 문제구조화 유형으로 살펴 본 성공과 실패 사례 분석, 정보화정책 제27권 제4호, 한국정보화진흥원 (2020. 12.)

이광무・이병영, 퍼즈 테스팅을 통한 소프트웨어 희귀 버그 탐색 기법의 동향과 전망, 정보보호학회논문지 제31집 제5호, 한국정보보호학회 (2021. 10.)

임성훈, 인공지능 행정이 행정절차·행정소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시론적 고찰, 행정법연구 제62호, 사단법인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20. 8.)

정남철, 행정기본법의 제정 의미와 주요 내용, 법제 통권 제693호 (2021. 6.), 법제처

垣内秀介, 民事訴訟法における手續の簡易化に關する覺書 - 法定審理期間訴訟手續の創設を契機として, 法曹時報(第74卷 第6号, 令和 4年 6月 1日), 法曹會

Rajiv Sabherwal・Varun Grover, Computer Support for Strategic Decision-Making Processes: Review and Analysis, Decision Sciences

Vol. 20 No 1, Decision Sciences Institution(March 1989)

법제사법위원회, 행정기본법안심사보고서 (2021. 2.)
제21대 제384회 법제사법소위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2호 (2021. 2. 24.)
제21대 국회 2022. 12. 5. 제400회국회(정기회) 정무위원회회의록(제15호)

법원행정처, 전자소송홈페이지 사용자설명서
차세대전자소송추진단, 독촉절차 워크플로우 구현방안 검토[내부용역보고서], 법원행정처(2021. 5)
6. 지능형 사건처리 기반 재판사무혁신[내부용역보고서], 법원행정처

법률신문, “법원 요즘 왜 이래요?” 사건적체에 불만・한숨, (2022. 6. 20.)
전국 민사1심 장기미제 총 7494건···5년 초과도 490건, (2022. 6. 20.)
법원, 장기미제사건 적체 해법 찾기 나섰다, (2022. 7. 25.)
재산분할 처분 등 간이·신속해야 할 ‘비송사건’ 10개월 이상 걸리기도, (2022. 12. 15.)

박상철, “알고리듬 투명성의 역설”, 서울대학교 AI 콜로퀴엄, 서울대학교 AI 연구원(2020. 11. 6.)
이광근, SNUON 컴퓨터과학이 여는 세계_13.4 소프트웨어검증기술의 필요성_(https://www.youtube.com)
컴퓨터인터넷IT용어대사전(naver.com)

https://www.coe.int/en/web/cepej/cepej-european-ethical-charter-on-the-use-of-artificial-intelligence-ai-in-judicial-systems-and-their-environment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338&ccfNo=1&cciNo=1&cnpClsNo=1
https://www.gesetze-im-internet.de/vwvfg/__35a.html
https://www.gooroom.kr/content/intro/
https://mathworld.wolfram.com
https://op.europa.eu/en/publication-detail/-/publication/d3988569-0434-11ea-8c1f-01aa75ed71a1
https://stdict.korean.go.kr

Abstract

A Study on the Implementation of Algorithms Applying Automatic Disposition of Article 20 of the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to Proceedings

CHOI Bonghee
Mathematical Information Science
Information Security and Digital Forensic Science
Graduate School of Convergence Science and Techn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Based on the automation foundation built in the next-generation electronic litigation system, this study proposed the cases of algorithms that implement automated litigation procedures by applying Article 20 of the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to civil proceedings.

Automation of civil litigation procedures, such as delivery, designation of a date, arrangement of duplicate claims, etc., can immediately reflect a party's procedural rights in the order of filing a complaint, more quickly specify a date, and more

efficiently prevent duplication of claims and omission of judgment. Therefore it can contribute to achieving the ideals of civil litigation: speed, economy, fairness, and appropriateness.

In order to automate civil litigation procedures, it may be necessary to enact or revise laws related to judicial digital signatures, etc., and a detailed analysis of whether civil litigation process automation is technically feasible based on automation of the next-generation electronic litigation system may be required.

Since the electronic litigation system was introduced to enhance the convenience of the parties, increase the efficiency of dispute resolution, and contribute to economic development such as the development of electronic litigation-related industries, it is hoped that the civil litigation procedure automation system will be legally introduced through active legal and technical analysis.

Key words: ideals of civil litigation, automation of litigation procedures, automatic dispositions, algorithms, implementations, applications

Student Number : 2021-22041